



#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세계지식재산기구-문화체육관광부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세계지식재산기구-문화체육관광부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본 간행물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3.0 정부간국제기구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명시적 허가 없이도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 간행물을 복제, 배포, 개작, 번역 및 공연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콘텐츠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그 출처임을 밝히고 원본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본 간행물은 다음과 같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2021).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for Business-to-Business Digital Copyright- and Content-Related Disputes.  
Geneva: WIPO. DOI: 10.34667/tind.46648

WIPO의 승인 및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작·번역·2차적저작물에 공식 기장 또는 로고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WIPO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십시오.

모든 2차적저작물에는 다음의 면책조항을 넣어 주십시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원본 내용의 변경 또는 번역에 대한 어떤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WIPO에서 발행한 이미지, 그래픽, 상표, 로고 등 콘텐츠가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와 같은 콘텐츠의 사용자는 해당 권리보유자와 권리관계를 정리할 단독 책임이 있습니다.

본 라이선스의 사본은 다음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igo/>

본 간행물에 사용된 명칭 및 제시된 자료에는 국가, 지역 또는 영역, 또는 그 당국의 법적 지위나 그 국경 또는 경계의 한정에 관한 WIPO의 어떠한 견해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간행물에서는 WIPO 사무국 또는 회원국의 견해를 반영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특정 제조사 상품이나 기업이 언급된 것은 WIPO가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유사한 성질의 다른 제조사 상품이나 기업에 우선하여 그들을 보증 또는 추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WIPO, 202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34, chemin des Colombettes, P.O. Box 18  
CH-1211 Geneva 20, Switzerland



저작자표시 3.0 정부간국제기구  
(CC BY 3.0 IGO)

표지: Getty Images / © Moyo Studio

# 목차

|                               |           |
|-------------------------------|-----------|
| <b>머리말</b>                    |           |
| <b>저자 소개</b>                  |           |
| <b>감사의 말</b>                  |           |
| <b>개요</b>                     |           |
| 배경                            | 8         |
| 목표                            | 8         |
|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 8         |
| ADR의 실무 적용: 현황 및 가능성          | 10        |
| <b>제1장</b>                    | <b>13</b> |
| <b>소개</b>                     | <b>13</b> |
| 배경 및 맥락                       | 13        |
| 목표                            | 15        |
| 방법                            | 16        |
| 범위 및 제한점                      | 16        |
| 구성                            | 17        |
| <b>제2장</b>                    | <b>18</b> |
| <b>동향 및 관행에 관한 개요</b>         | <b>18</b> |
| IP 분쟁 해결을 위한 ADR              | 18        |
| ADR 이용과 관련된 핵심 고려사항           | 20        |
| 저작권 관련 법제도 및 ADR의 채택          | 23        |
| <b>제3장</b>                    | <b>34</b> |
| <b>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b>          | <b>34</b> |
| 응답자 프로필                       | 34        |
| 분쟁의 성격                        | 36        |
| 분쟁 결과                         | 40        |
| 사용된 분쟁해결수단의 유형                | 41        |
| 응답자들의 인식 및 우선순위               | 42        |
| 분쟁 해결에 사용된 도구                 | 44        |
|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계약       | 44        |
| 보고된 동향 및 향후 개선점               | 46        |
| <b>제4장</b>                    | <b>48</b> |
| <b>ADR의 실무 적용: 현황 및 가능성</b>   | <b>48</b> |
|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 및 도구의 효과적인 활용     | 48        |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통지 제도의 최근 동향 | 49        |
| 조정된 맞춤형 ADR 절차의 개발            | 50        |
| <b>주석</b>                     | <b>56</b> |
| <b>References</b>             | <b>63</b> |
| <b>부속서: 설문지</b>               | <b>69</b> |

# 머리말

음악에서부터 동영상 공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이르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범세계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처리 방식이 변화되면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작자와 그 밖의 창조산업 행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제도에 의존합니다. 창조산업은 해당 생태계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매우 역동적인 부문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과 기업은 각자의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효과적인 분쟁해결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진화하는 환경에서 법원소송이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문화체육관광부 설문조사 및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용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여러 산업에 걸쳐 이와 같은 주제를 사실에 기반하여 보다 잘 이해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는 그와 같은 분쟁 해결을 위한 ADR 이용 현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내 및 지역의 최신 제도적 동향에 따른 맞춤형 ADR 개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인과 기업이 디지털 시장에서 창의적인 콘텐츠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WIPO의 노력에 주목합니다. 한편, 본 보고서는 모든 규모의 저작권 및 콘텐츠 집약 기업, 온라인 중개자 및 플랫폼, 저작자, 기업가, 집중관리단체, 시내외 변호사, 정부기관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을 다루며, 디지털 저작권 분야와 관련한 국제 정책 입안 과정의 중요한 순간에 발휘될 ADR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ADR 활성화를 위한 신탁기금(FIT-ROK/ADR)을 통해 본 보고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귀중한 지원을 제공해 주신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작자의 권리를 공정하게 인정, 보호 및 보상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ADR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관련하여 보다 폭넓은 논의를 마련하는 데에 WIPO가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마르코 M. 알레만(Marco M. Alemán)  
사무총장보(Assistant Director General)  
지식재산혁신생태계섹터(IP and Innovation Ecosystems Sector)  
세계지식재산기구

기술 개발로 콘텐츠의 창작과 소비가 늘어난 한편,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정보와 흥미를 제공하는 콘텐츠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가 2조 4,000억 달러(USD)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며(PwC, 2019), 제조업, 관광업 등 콘텐츠 중심의 관련 산업들까지 고려하면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수준에 이릅니다.

그와 동시에, 콘텐츠의 양과 질의 발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콘텐츠와 관련된 국가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 속도가 저작권 집행 속도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게임, 영화, 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는 배포 주기가 짧고 유통과 복제가 용이해 기존의 재판절차에만 의존해서는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ADR은 급변하는 콘텐츠 환경 속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ADR은 국경을 넘어서 국제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소송에 비해 경제적이고 신속하며 수월합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에 마련된 WIPO 신탁기금(WIPO Funds-in-Trust)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였고, 2018년부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과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이용에 관한 세계지식재산기구-문화체육관광부 설문조사 및 보고서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하여 이런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한 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분명 이번 설문조사와 보고서는 약 130개국의 ADR 이용 현황을 살펴보는 데 충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따라서 향후에 이와 같은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를 계기로 AD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건설적인 논의가 활발해지며 ADR 제도가 콘텐츠 관련 분쟁에서 보다 널리 활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차관

# 저자 소개

## 데브 강지(Dev Gangjee)

데브 강지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지식재산권법 교수입니다. 주요 관심 연구 분야는 상표, 저작권 및 지리적 표시입니다. 데브 교수는 유럽공동체상표협회(European Communities Trade Marks Association(ECTA))의 회원이며, 국제기구, 정부 및 로펌에서 전문가 또는 컨설턴트로 활동했습니다. 옥스퍼드대학교 지식재산권법 및 실무 과정의 학과장(director)을 역임한 그는 영국의 주요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들과 긴밀히 협업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을 위한 자발적인 저작권 등록시스템에 관한 비교 보고서의 연구책임자였습니다.

## 미미 쯔우(Mimi Zou)

미미 쯔우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심화기술분쟁해결연구소(Deep Tech Dispute Resolution Lab)의 공동설립자이자 연구책임자이며 동 대학교 리젠트 파크 칼리지(Regent's Park College) 법학과 학과장(director)입니다. 그리고 영국 레딩대학교(University of Reading) 법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입니다. 미미 교수는 중국, 사법 및 블록체인 분야 전문가로 세계경제포럼 전문가 네트워크(World Economic Forum Experts Network)의 회원이며, 세계은행(World Bank)의 사법 및 기술 접근권 태스크포스(Access to Justice and Technology Taskforce) 및 국제사법위원회(UNIDROIT)의 디지털 자산 및 사법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s and Private Law)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연구 실적은 여러 국제 수상으로 이어졌고, 세계적인 언론 매체들에서 다루었습니다. 미미 쯔우는 호주 및 영국 잉글랜드 웨일스에서 자격을 갖춘(qualified) 변호사로, 17년 넘게 국제기구, 정부 부처, 및 중국, 유럽, 미국,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술 및 전문 서비스 부문 기업들을 위해 일하고 고문 역할을 했습니다. 옥스퍼드대학교에서(우수한 성적으로) 민법학 학사 및 법학 철학박사 학위, 호주 시드니대학교(University of Sydney) 법경제사회과학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1등급 학위(first-class honors degree)를 각각 취득했습니다.

## 아드리아나 보라(Adriana Bora)

아드리아나 보라는 비영리조직인 미래사회(The Future Society)의 인공지능(AI) 정책 연구원이자 프로젝트 관리자이며, 매사추세츠공과대학 전산법률학 보고서(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Computational Law Report Task Force)의 현대판 노예제도에 관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Modern Slavery)의 구성원이자 더굿에이아이(The Good AI)의 기고자입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특히 현대판 노예제의 근절에 초점을 맞춘 8번 목표(SDG 8)의 세부목표 8.7(Target 8.7)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데이터 과학(data science) 및 AI 응용 프로그램의 활용입니다. 아드리아나는 증강 지능(augmented intelligence)이 어떻게 현대판 노예제 근절을 가속화할 수 있는지를 연구합니다. 영국과 호주에서 현대판 노예방지법(Modern Slavery Act)이 통과된 이후 발간된 기업 보고서들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하는 데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드리아나는 시앙스포대학교 파리 국제관계대학원(Sciences Po Paris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에서 국제공공경영(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중국 홍콩대학교(University of Hong Kong)에서 1년간 수학했으며, 영국 에식스대학교(University of Essex)에서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 및 고급계량방법론(Advanced Quantitative Methods) 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 감사의 말

본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세계지식재산기구-문화체육관광부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는 외부 기여자들과 WIPO 직원들의 공동 노력의 결실로, 다렌 탕(Daren Tang) WIPO 사무총장의 지휘하에 발행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WIPO의 지식재산혁신생태계섹터(마르코 알레만 사무총장보)의 WIPO 중재조정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에릭 빌버르스(Erik Wilbers) 센터장(Senior Director))에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그나시오 데카스트로(Ignacio de Castro) WIPO 센터 IP 분쟁 및 대외관계국(IP Disputes and External Relations Division) 국장(Director)의 지휘하에 제작되었으며, 레안드로 토스카노(Leandro Toscano) WIPO 센터 사업개발부(Business Development Unit) 부장(Head)과 오스카르 수아레스(Oscar Suárez) WIPO 센터 사업개발부 장학 연수생(Fellow)의 주도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의 저자는 데브 강지(옥스퍼드대학교), 미미 쩌우(옥스퍼드대학교) 및 아드리아나 보라(미래사회)입니다. WIPO 센터는 본 보고서 제4장에 등 센터의 사건 관리 및 ADR 절차 개발 경험 관련 내용을 제공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이영열 저작권국장, 최영진 문화통상협력과장, 김선기 사무관 및 이지인 전문관께서 설문조사와 보고서의 모든 단계에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셨습니다.

수많은 저작권청에서 법령 및 해당 관청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정보 등 국가 차원의 경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주었습니다. 본 보고서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주신 129개국의 설문조사 응답자 997명과 인터뷰 참여자 74명에게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WIPO 저작권법국(Copyright Law Division)의 미셸 우즈(Michele Woods) 및 파올로 란테리(Paolo Lanteri), WIPO 저작권관리국(Copyright Management Division)의 브누아 뮐러(Benoît Müller), 아니타 후스에커홀트(Anita Huss- Ekerhult) 및 미유키 몬로이그(Miyuki Monroig)가 본 보고서에 추가로 자료와 의견을 제공하고 설문조사 배포를 지원해주었습니다. WIPO 혁신경제과(Innovation Economy Section)의 훌리오 라포(Julio Raffo)가 설문조사의 설계 및 방법론에 도움을 주었으며, WIPO 센터 직원들의 자료 제공과 검토도 본 설문조사와 보고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 개요

## 배경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의 중재조정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이하 “WIPO 센터”)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Korea, 이하 “MCST”)와 함께 B2B(Business to Business)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분쟁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이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광범위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법제 연구, 추가 분석을 토대로 디지털 저작권 또는 콘텐츠와 관련된 B2B 분쟁에 대한 ADR 제도의 활용가능성을 분석합니다.

디지털 저작권 관련 분쟁들은 실제로 B2B차원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부 분야로는 광고, 애니메이션, 방송, 영화, 데이터베이스 보호, 도서 및 출판(전자책 포함), 모바일 앱, 음악 및 녹음물, 사진, 소프트웨어, TV 포맷, 비디오 게임 등이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서의 쟁점은 크게 (1) 유효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누가 해당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2) 지식재산의 양도와 같은 권리의 거래, (3) 라이선스 비용 설정과 같은 콘텐츠의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전통적인 소송 방식이 부적합한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로 인해 지속적인 사업관계가 저해될 수 있고, 소송의 관할권이 여러 곳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의 경우 분쟁이 요구하는 속도, 비밀유지, 분야별 전문성, 경제적 해결방안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조정, 중재 또는 전문가결정 등을 포함한 ADR이 보다 적합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ADR에서 온라인을 통한 사건처리 및 화상회의와 같은 온라인 분쟁해결제도(online dispute resolution(ODR))의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ADR의 매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P 전문가 단체는 ADR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으며, 각 국의 지식재산(IP) 담당부서들은 소송의

대안으로 ADR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D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Korea Copyright Commission(KCC))와 WIPO 센터의 저작권 관련 ADR 사건 수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online content-sharing service provider(OCSSP))를 포함한 ‘B2B에서의 디지털 저작권 분쟁에의 ADR 적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 목표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관련 사안들에 대한 실증적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B2B 분쟁과 관련하여 제도적/운영적 차원에서 ADR제도 이용 확산에 대해 파악합니다.
- B2B 분쟁이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분야 및 저작물의 종류를 파악합니다(예: 소프트웨어, 음악 및 기타 저작물).
- 이러한 분쟁의 성격(예: 계약상/비계약상)을 유형화하고 주요 특징을 파악합니다.
- 해당 청구들이 가지는 금전적 가치의 범위(즉, 상업적 거래 당사자들에게 어떤 것이 중요한지)와 선호되는 해결방안(예: 손해배상, 로열티, 침해 또는 비침해선언, 삭제(takedown) 등)를 파악합니다.
- 계약상 또는 비계약상 분쟁 시나리오에서 당사자들의 화해(settlement)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합니다.
- 비용, 속도, 결과의 질, 비밀유지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분쟁당사자가 가장 필요로 하고 선호하는 해결 수단과 절차(법원소송, 조정, 중재, 전문가결정 등)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 이러한 분쟁들과 관련한 ADR 수단의 종류별로 기회유인, 위협유인 및 장단점을 분석합니다.

##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 응답자 및 결과

설문조사와 인터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129개 국가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설문조사에 대한 997건의 응답과 주요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터뷰에 대한 74건의 응답을 토대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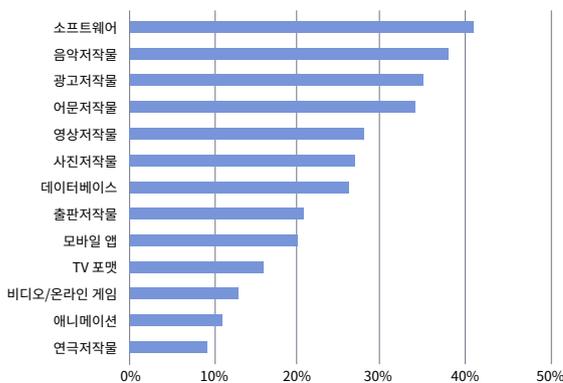
응답자 대부분은 중소기업의 로펌에서 근무하는 법률 전문가들이었으며, 설문조사 참여자에는 조정인과 중재인도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응답자 대다수는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분야에서는 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분쟁

응답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최근 5년간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 연관된 비율은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65%는 신청인이거나 신청인측 대리인 경험이, 45%는 피신청인이거나 피신청인측 대리인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연관되었던 분쟁은 성격상 비계약상 분쟁이고 국내 분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분쟁 대상은 소프트웨어, 음악저작물, 광고 및 어문 등이었습니다. 또한 인터뷰 응답자들이 가장 반복적으로 연관되는 분쟁유형은 침해와 라이선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경험에 따르면 비계약상 분쟁은 주로 허가 받지 않은 제3자에 의한 다양한 유형의 침해와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의 과반수가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이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일부 응답자는 디지털 저작물 이용이 다양한 방법으로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프 0.1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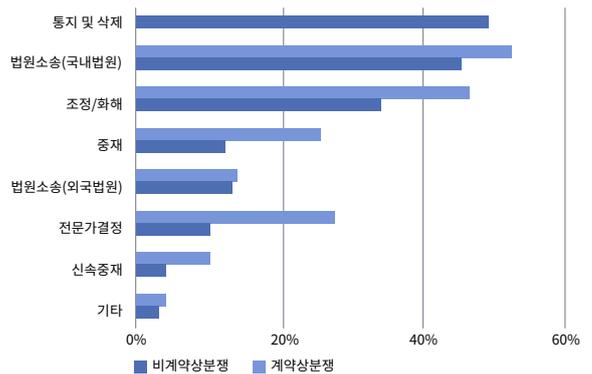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연관되었던 분쟁의 금액대가 다양했는데, 대다수(59%)가 USD 10,000 내지 100,000 구간에 속했습니다. 이와 달리, 금전적 액수와 무관한 분쟁에 연관되었던 응답자의 비율도 상당했습니다(36%).

분쟁 결과와 관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가장 많이 선택한 해결방안은 손해배상이었고, 그 다음이 로열티였습니다. 침해 공표와 계약 재협상 또한 많이 선택되었습니다. 계약상 또는 비계약상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은 흔히 합의를 통해 종료되었습니다.

분쟁해결수단에 있어, 응답자의 국내법원(home jurisdiction)에서의 소송이 계약상/비계약상 분쟁 해결을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응답자들은 ‘통지(notice)와 삭제(takedown)’가 비계약상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수단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추가적으로 드러난 바에 따르면,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전문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단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거나, 이해관계자들이 그러한 수단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집중관리단체만 내부의 분쟁해결수단을 이용하거나 ADR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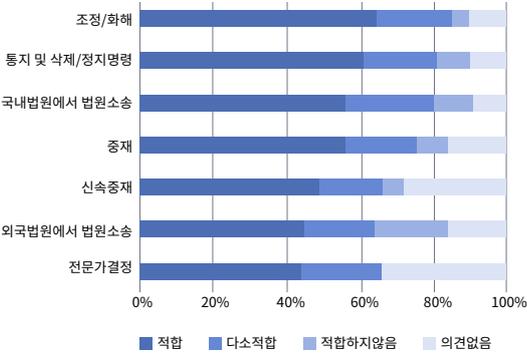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수단은 문서로만 진행되는 절차(64%)였고, 화상회의를 통한 심리(32%)와 전자적 사건 신청 및 관리(29%)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은 응답자의 25%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에서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이나 프로토콜에서 제시하는 사례와 실제 사건 간 차이가 존재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래프 0.2 사용된 분쟁해결수단



전반적으로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 해결에 사용된 다양한 수단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모든 수단에 대해 적합하다는 인식이 우세했습니다. 각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조정, 통지 및 삭제, 중재, 국내법원에서의 법원소송등은 모두 적합한 수단들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프 0.3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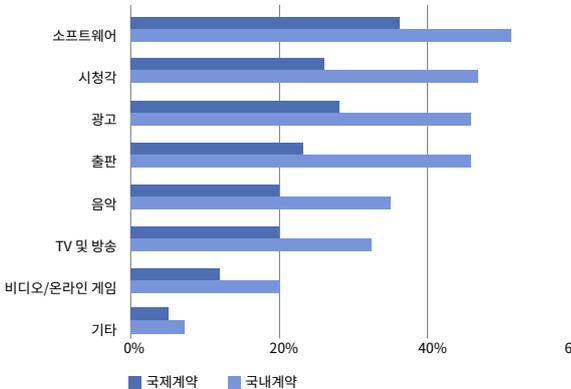


설문조사 응답자들과 인터뷰 대상자들은 국내분쟁인지 국제분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 해결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의 우선순위는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분쟁 해결의 비용과 속도였고, 그 다음은 결과의 질과 이행 가능성이었습니다.

계약

WIPO-MCST 설문조사에서는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계약 관련 경험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 64%가 해당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계약대상으로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계약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시청각, 출판, 광고 계약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또한 응답자들에게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계약에서 분쟁해결 조항과 관련한 내부 규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대다수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대다수는 ADR 수단도 각자의 내부 규율이나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프 0.4 체결된 계약의 분야



보고된 동향 및 필요 개선점

WIPO 센터는 설문조사 응답자들과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어떠한 동향이 관찰되는지 질문했습니다. 일부

응답자는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ADR에 친숙해지고 ADR을 점점 더 많이 신뢰하면서 ADR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들은 신속한 중재 및 전문가결정과 저작권 분쟁에 맞춰진 ADR 절차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IPO 센터가 그간 경험한 바와 마찬가지로, 응답자들은 보다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의 사용 또한 일반화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점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표준적이고 맞춤형 전문적 규칙과 절차, 그리고 관련 분쟁해결 가이드라인 개발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중립적인 분쟁해결을 제공할 수 있는 중립적인 분쟁해결 제공 기관/단체의 설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응답자들은 또한 온라인 분쟁해결(ODR) 과정 및 수단의 이용을 언급하고, 제도적으로 조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DR의 실무 적용: 현황 및 가능성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통지수단의 최근의 변화

최근 규정의 발전은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소송의 대안으로 대체적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8년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US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과 EU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EU Digital Single Market Directive(DSM Directive))에서 ADR과 관련된 일부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은 주문형 비디오(video-on-demand)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시청각 저작물 라이선스 관련 협상과 합의에 있어 ADR, 특히 조정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공정하고 비례적인 보상(fair and proportionate remuneration)을 제공하는 계약 조정이나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하여서도 분쟁 당사자들이 자발적 ADR 절차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은 게시(업로드)되어 있는 저작물 또는 보호받는 대상물에 대한 접근이나 삭제를 둘러싼 분쟁의 경우,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OCCSP)들이 사용자들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complaint and redress mechanism)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지침은 법적 보호와 사법적 구제에 대한 사용자들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소송 외 구제수단(out-of-court redress mechanism)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의 업로드 필터링, 사람의 검토, ADR 및 법원소송과 같이, 보호 콘텐츠 이용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가 필수적입니다.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ISP)) 및 온라인 플랫폼들이 효과적인 통지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분쟁, 특히 상대적으로 간단한 사건을 초기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 중인 다수의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은 저작물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사람이 직접 검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내부 시정 수단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황별 검토가 가능케하는 동시에 예외 또는 제한(exception or limitation)의 적용 여부 결정에 있어 자동 필터링이 가지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보다 복잡한 청구의 경우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의 (사람에 의한)내부적 검토만으로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정된 맞춤형 ADR 절차의 개발

이러한 배경에서 저작권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외 수단이나 사법적 수단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이 필요합니다(예: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제17조9항). 이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ADR제도들이 어떻게 발전해야 이해관계자들(사용자, 권리보유자,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 등)을 도울 수 있는지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한다는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WIPO 센터는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WIPO 전문가결정규칙(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에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의 이용자 업로드 콘텐츠 관련 분쟁 해결에 대한 최선의 국제적 관행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은 각자의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분쟁에 맞춰진 표준 WIPO ADR 조항들을 분쟁에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ADR제도의 발전과 절차의 개선으로 접근성, 비용, 투명성, 중립성 및 공정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의 해결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제1장 소개

## 배경 및 맥락

창조산업이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한편, 저작자들은 창조산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꿈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sup>1</sup> 지난 수십 년 동안, 인터넷은 창의적인 콘텐츠의 생산, 배포 및 소비 방식을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창작물이 널리 유통되어 새로운 소비자에게 도달되는 한편, 디지털 인프라가 새로운 형태의 협업을 용이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 특히 저작권이 그와 같은 저작물의 유통을 규제합니다. 저작자의 권리로도 알려져 있는 저작권은 “창작자가 도서, 음악, 회화, 조각,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광고, 지도, 기술 도면 등 자신의 어문 및 미술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법률 용어”이며,<sup>2</sup> 전통적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표현에도 해당됩니다. 디지털 저작권은 “디지털 형식으로 제시되는 저작물의 제작, 수정, 배포 및 소비 패턴”이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로 인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변화한 상황에 적용됩니다.<sup>3</sup> 저작권법은 이와 같이 달라진 환경에서 콘텐츠의 복사, 수정 및 유통을 규제하는 데 적용되었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당사자들은 규모, 상업적 고도화 및 자원 면에서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 끝에서는 저작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요 다국적 기업들이 분쟁에 연관되어 있습니다.<sup>4</sup> 다른 한쪽 끝에서는 인터넷에서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전문 사진작가나 예술가 개인이 저작권 분쟁에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sup>5</sup> 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저작권 집약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B2B 분쟁에 대한 ADR 활용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국가통계분류의 목적상, 저작권 집약 산업에는 소비용 콘텐츠를 생산하는 산업, 그 콘텐츠를 배포하는 산업 또는 생산과 배포가 모두 이루어지는 산업(예: 신문 또는 영화 제작 및 배포)이 있습니다.

그 주요 산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판 및 문학
- 음악, 연극 및 오페라
- 영화 및 비디오
- 라디오 및 TV
- 사진
-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컴퓨터 게임
- 시각 및 그래픽 예술
- 광고서비스
- 권리보유자를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sup>6</sup>

이와 같은 부문에서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위한 ADR 활용에 관해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는 디지털 저작권 관련 B2B 분쟁이 다음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제3장 분쟁의 성격 참조).

- 광고
- 애니메이션
- 영화 및 영상저작물
- 데이터베이스 보호
- 도서(전자책 포함) 및 기타 어문저작물, 보다 일반적인 출판
- 모바일 앱
- 음악저작물 및 녹음물
- 사진
- 소프트웨어
- TV 포맷
- 비디오 게임

제한적이거나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런 분야의 기업들은 ADR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저작권위원회(Korea Copyright Commission (KCC))의 통계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ADR을 통해 해결된 2,200여 건의 분쟁에 대한 코퍼스(corpus)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저작물의 유형은 어문저작물, 소프트웨어, 사진, 미술저작물 및 음악저작물이었습니다.<sup>7</sup> WIPO 센터는 예술, 방송, 저작권 집중관리, 엔터테인먼트, 영화 및 미디어, 그리고 TV 포맷 분야 당사자들이 동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편, 해당 서비스가 이와 같은 분야의 라이선스 분쟁이나 저작권 침해 주장도 다룬다고 설명합니다.<sup>8</sup>

이런 분쟁들은 그 법적 성격 면에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의 집행가능성, 침해, 귀속(subsistence), 유효성, 소유, 범위, 존속기간(duration) 또는 그 밖의 사항
-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거래에 대한 분쟁
- 지식재산권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보상에 대한 분쟁<sup>9</sup>

그런 분쟁에 대한 ADR 해법은 B2B 상황에서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하데, 이는 진행 중인 사업관계(예를 들어, 보호 콘텐츠의 라이선스 관련 사업관계)에 상업적 당사자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특히 상업적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중요한 우선순위의 경우에 부적합해 보입니다. 그 밖에도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관할권에 속해 있을 수 있고, 문제되는 저작물 이용이 여러 국가에 걸쳐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DR은 특히 국경을 넘어서 분쟁, 특히 다수의 관할권에 걸쳐 발생하는 분쟁에 적절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전통적인 소송 방법 및 국내 절차는 디지털 세상의 콘텐츠 생산자와 사용자가 찾는 신속하고 유연하며 경제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 간에 관계가 시작될 때 분쟁 해결 전략을 계약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B2B 환경에서는 매력적으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분쟁 해결 절차 및 결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런 요소들로 인해 조정, 중재, 전문가결정 등 ADR이 B2B IP 분쟁을 위한 적시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이런 가능성 덕분에 ADR 해법에 대한 IP 전문가 및 사내 변호사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의 지식재산청들이 ADR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MCST 산하의 한국저작권위원회(KCCO)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관련한 조정 절차를 관리하고,<sup>10</sup> 한국콘텐츠진흥원(Korea Creative Content Agency(KOCCA))이 콘텐츠 관련 권리에 대한 조정 절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sup>11</sup>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조정제도의 활용을 더욱 장려하고자 WIPO와 MCST는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국제적 분쟁에 관련된 당사자들을 위해 WIPO 조정 절차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도움이 될 자금지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sup>12</sup>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IPOS))이 강화된 조정활성화제도(Enhanced Mediation Promotion Scheme)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는 지식재산권 청구로 발생하는 분쟁에서 소송의 대안으로 조정제도를 활용하도록 당사자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합니다.<sup>13</sup> 영국 지식재산청(IPO)(자체 조정 서비스 운영) 등 일부 지식재산청에서는 심지어 지식재산권 보유자에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 조치가 언제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sup>14</sup> 기술 거래와 관련하여 2013년에 WIPO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계약상에 포함된 분쟁해결조항으로, 근소한 차이로 중재 및 신속중재

(30%), 그리고 조정(12%)이 법원소송(32%)의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sup>15</sup> 기술, 미디어 및 통신(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TMT))의 경우, 잘 알려진 ADR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가 TMT 분쟁에 중재제도가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는 한편, 82%가 중재제도의 활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중재(43%) 및 조정(40%)은 소송(50%)에 비해 유사한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응답자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기술 라이선스와 관련된 문제로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협력사업을 조직하는 것은 잠재적인 성장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sup>16</sup>

전문가들은 “기밀성이 보장되는 비공개 절차로서 중재제도가 특히 서로 다른 관할권에 속한 당사자들이 관련되어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데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sup>17</sup> 이런 추세는 특히 특허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재제도는 특정 제품이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기존 라이선스에 따라 로열티가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자주 이용됩니다.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를 위한 특허풀(patent pool)에서는 특허가 해당 표준에 정말 “필수적”인지, 그리고 특허 보유자에게 로열티가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전문가결정도 활용됩니다.<sup>18</sup>

이런 추세에 맞춰, 국제 IP 전문가 단체들은 ADR의 잠재적인 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ADR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또는 Associat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AIPPI))는 ADR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ADR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sup>19</sup> 국제상표협회(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INTA))도 전 세계 브랜드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수단으로 ADR을 활성화하기 위해 ADR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sup>20</sup>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의 조정위원회(Mediation Committee)는 “조정제도는 (IP) 분쟁을 해결하고 높은 소송 비용과 시장 내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명예훼손을 피할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sup>21</sup> ADR에 대한 이와 같은 관심은 WIPO-MCST 설문조사에 응한 법률 전문가들과 사내 법률 전문가들의 답변에 나타납니다(제3장).

ADR의 활용 가능성은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서 강조돼 왔습니다. 특허와 달리 저작권 침해 분쟁은 일반적으로, 심지어 비문자적 모방(non-literal copying)의 경우(예를 들어, 어떤 책의 저자가, 영화로 인한 책 줄거리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덜 “기술적인(technical)”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경우들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증거개시(discovery proceedings)나 문서열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sup>22</sup> 예외적인 범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청구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시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집행 개선을 고려하여, 미국지식재산권법협회(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AIPLA))는 “인터넷 기반 저작권 침해 분쟁을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지원” 합니다.<sup>23</sup> 이와 같이 관심이 높아진 주요 요인은 인터넷 플랫폼상의 저작권 분쟁이 급증한 데 있습니다. B2B 환경에서 그런 분쟁은 다음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 i. 저작권 침해(예를 들어, 다른 노래의 단편 또는 본인 저작물 내 이미지의 재사용)로 고발되고, 침해 콘텐츠를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권리보유자의 “삭제(takedown)” 요청에 응하지 않는 전문 저작자
- ii. 일반적으로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청각 미디어와 관련한 해당 플랫폼과 권리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 간의 상업용 라이선스 계약<sup>24</sup>

저작권 분쟁의 ADR 해법에 대한 높아진 관심은 WIPO 센터 통계에 나타납니다. 지난 5년 동안 WIPO 센터의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조정 및 중재 사건, 그리고 Good Offices 서비스 신청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저작권 분쟁 관련 사건이 1998년부터 2015년까지는 4%였으나 2016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기간에는 28%로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분쟁 사건은 전체 WIPO 조정 및 중재 사건의 21%를 차지합니다.<sup>25</sup> WIPO ADR 사건은 대부분 당사자들이 사전에 ADR 수단을 확인하는 계약조항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일부 WIPO ADR 사건은 해당 분쟁이 발생하고 심지어 국내법원에서 소송이 개시되었을 수도 있는 시점 이후에 체결된 사후합의계약(submission agreement)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과 관련한 WIPO ADR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일반적으로 IP 관련 ADR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분명한 지표인데, 본 보고서에서는 세 가지 주요 이유에서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의 ADR 활용 가능성에 특히 주목합니다.

- i. 많은 B2B 디지털 저작권 거래가 다수의 지역을 포괄하며 여러 당사자들 간의 국제적 합의를 포함합니다. 영화, 음악 및 시각저작물(미술저작물, 사진)과 관련된 라이선스 및 그 밖의 계약상 합의들이 이를 잘 보여 줍니다.<sup>26</sup> ADR은 이런 분쟁들을 통합하고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상업적 사용자가 보호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대중적인 온라인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경우에도 적합합니다.<sup>27</sup>
- ii.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당사자들의 특성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개인 창작 전문가나 중소기업(SME)은 전통적인 소송 방식을 활용할 자원이거나 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ADR 해법은 이런 당사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합니다.
- iii. 보다 광범위한 추세의 일부로, 많은 법률 분야에서 ADR의 온라인 분쟁해결(ODR) 도구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sup>28</sup> 일부 전문가들은 온라인 분쟁해결 도구의 개발로 ADR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작용” 하고<sup>29</sup> “ADR의 가능성이 최대한으로 확대되고 달성”<sup>30</sup>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IP 분쟁에서 다양한 온라인 분쟁해결 도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한 기관을 예로 들면, WIPO 센터는 이 분야의 경험을 반영하는 온라인 조정 및 중재 절차 수행을 위한 WIPO 체크리스트(WIPO Checklist for the Online Conduct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Proceedings)를 마련하고 ADR을 위한 온라인 사건 일람표(WIPO eADR)와 화상회의 도구를 분쟁 당사자들과 중립인들(neutrals)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sup>31</sup>

지금까지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의 ADR 해법 활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실증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다음 사항들을 이해함으로써 이와 같은 지식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 i. 저작권 집약 산업의 기존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예: 대상, 유형, 분쟁가액, 부문)
- ii. 그러한 분쟁이 해결되는 방식
- iii.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ADR 제도의 활용 가능성

본 보고서의 핵심은 997건의 유효 응답과 74건의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포함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과 인터뷰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은 그런 분쟁에서 나타나는 각 당사자의 요구, 필요 및 선호, 그리고 부문별 선호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정보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본 보고서의 연구 결과는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위한 적절한 ADR 방법 및 절차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분쟁해결의 이용을 포함한 전문적 ADR 서비스는 가까운 미래에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이런 추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법원의 일상적인 기능에 차질이 생기고 당사자들이 민사 및 상사 분쟁을 원격으로 해결하도록 온라인 분쟁해결 도구를 이용하는 ADR 절차로 전환할 것을 장려하면서 강화되었습니다.

## 목표

본 보고서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반적 IP 분쟁과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서 제도적/운영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ADR 제도 및 절차의 이용 증가 설명
- B2B 분쟁이 발생하는 저작권 집약 분야 및 저작물의 종류 파악(예: 소프트웨어, 음악 및 기타 저작물)
- 분쟁의 성격 유형화(예: 계약상 또는 비계약상) 및

- 침해신고 빈도가 높은 분쟁의 특징 파악
- 분쟁의 금전적 가치(즉, 상업적 거래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와 선호되는 해결방안(예: 손해배상, 로열티, 침해 또는 비침해 선언, 삭제 등) 고려
- 계약상 분쟁 및 비계약상 분쟁 시나리오에서 당사자들의 화해 경향 평가
-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예: 법원소송, 조정, 중재, 전문가결정 등)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필요와 선호(예: 비용, 속도, 결과의 질, 비밀유지) 파악
- 이런 분쟁과 관련된 전문적인 ADR 방법의 기회요인, 위협요인 및 장단점 분석

## 방법

본 보고서에서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실시된 정성적 조사 및 정량적 조사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결과 분석을 위해 (i)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위한 ADR의 적합성에 대한 기존의 법적 입장에 관한 탁상조사(desk research), (ii) 핵심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 74건에 근거한 데이터 분석 및 (iii) 전 대륙 129개국 997명의 응답자가 완료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이 이루어졌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및 인터뷰 참여자에는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기업, 온라인 중개자 및 플랫폼, 사내의 변호사, 저작자, 기업가, 집중관리단체(CMO), 조정인, 중재인, 산업협회, 정부기관 및 기타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 관련 단체들이 포함되었습니다.<sup>32</sup>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가 전 세계 동향을 전부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서 제시되는 실증적 연구는 가치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및 인터뷰 응답은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서의 ADR 활용의 필요, 과제 및 기회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관련해서 유용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에는 여러 관할권으로부터 관련된 다양한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가 취합되어 있습니다. 정보는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덴마크, 에콰도르, 독일, 인도, 일본, 케냐,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라과이, 필리핀, 대한민국, 루마니아, 싱가포르, 스페인, 스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 탄자니아 및 미국의 저작권 이해관계자들(예: 저작권청, 집중관리단체)에게 요청해서 입수했습니다.<sup>33</sup> WIPO 센터는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포함한 몇몇 익명의 조정 및 중재 사건들을 본 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sup>34</sup>

## 범위 및 제한점

국내법 또는 지역법 내 IP 분쟁의 중재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일부 결과들이 보다 광범위한 연관성이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B2B

분쟁에 주목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적인 ADR 제도에 대한 필요 및 선호를 포함해서 이런 분쟁의 당사자들이 채택하는 분쟁 해결 방법 및 절차를 다룹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범위에 B2C(business-to-consumer) 분쟁 또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즉,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인터넷 플랫폼)와 비상업적 사용자 간의 분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련의 관련된 제한점들이 설문조사에 적용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가능한 경우에 보고서 설계 및 잘 정의된 데이터 정제(data cleaning) 프로세스를 통해 해당 제한점들을 통제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된 설문조사는 세 개의 섹션에서 세심하게 고려된 질문을 통해 응답자의 프로필,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과 관련한 응답자의 경험 및 해당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의 계약에서 발생한 핵심 문제들을 파악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설문문항들이 표준화되어 모든 문항이 모든 응답자와 연관성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한계를 해소하고자 설문조사 각 섹션 첫 부분에 특정한 선별 질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선별 질문이 응답자와 관련이 없는 경우, 해당 응답자는 자동으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 질문에 응답하게 됩니다.<sup>35</sup> 온라인 설문조사의 또 다른 공통된 제한점은 설문조사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응답을 입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 설문조사에는 최종 분석에서 관련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고려되도록 하는 선별 질문(3번 문항)<sup>36</sup>이 포함되었습니다.

설문조사 데이터 수집이 완료된 후에는 최선의 관행에 근거하여 데이터 정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 분석에 질 높은 응답들만 포함되도록 했습니다.<sup>37</sup> 최종 데이터에서 특정 설문조사 응답들을 배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에 항상 명백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분석에서는 설문조사의 전반적인 목표와 데이터 규모에 따라 해당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중복 응답이 제거되었으며, 설문조사를 서둘러 마친 응답자, 일관되지 않은 응답을 제공한 응답자(예: 3번 문항에서는 관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7번 또는 21번 문항에서는 무경험을 선택한 응답자) 및 개방형 질문에서 불가해한 피드백을 제공한 응답자의 응답도 배제되었습니다. 그 밖에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수행된 조치로 이상치(outlier)와 비현실적인 응답, 그리고 설문조사를 “한 줄로” 완료한 응답자(예: 질문의 내용과 무관하게 모든 질문에서 첫 번째 답변을 선택한 응답자)의 응답이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과 조치들이 세심하게 고려된 후에는 입수된 1,300여 개의 응답 가운데 129개국의 997개 응답이 최종 데이터로 포함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설문조사의 대상자 범위가 넓기는 하지만,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어려운 부분은 언제나 표본의 대표성입니다. 이는 B2B 저작권 분쟁에 관련되었거나 향후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들의 광범위한 모집단을 어느 정도로 추론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WIPO 센터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정성적 증거를 얻고자 74건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구성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ADR 방법으로 조정, 중재 및 전문가결정을 소개하면서 IP 분쟁의 ADR 이용 증가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비용, 유연성 및 집행가능성 등 ADR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핵심 고려사항들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 ADR을 활성화하는 국내 저작권 제도들을 분석합니다. 여기에는 ADR을 규정하는 국내 저작권법의 특정 조항과,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자 국내 지식재산청 또는 저작권청에서 수립한 이니셔티브들이 포함됩니다.

제3장에서는 설문조사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의 주요 결과를 제시합니다. 이 결과들은 이런 분쟁의 공통적인 성격, 분쟁 결과, 당사자들이 이용하는 분쟁 해결 방법의 유형 및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IP 관련 분쟁 해결을 다루는 구체적 계약 및 정책의 활용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제4장에서는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 대한 최선의 관행과 최신 동향을 확인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자동 콘텐츠 인식 메커니즘 또는 필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용자 콘텐츠에 대한 차단 또는 삭제 요청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플랫폼 사용자가 권리보유자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때, 맞춤형 ADR 해결책들로 기존의 절차들을 유용하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ADR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권고사항도 몇 가지 제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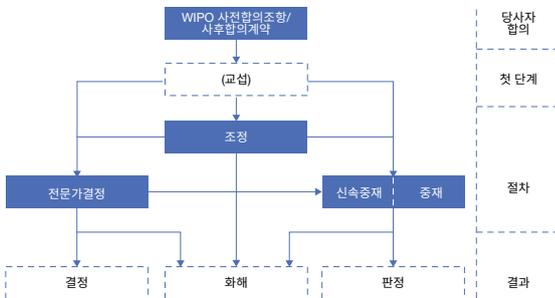
제2장

# 동향 및 관행에 관한 개요

## IP 분쟁 해결을 위한 ADR

현재 IP 분쟁 해결에 이용되는 ADR 제도에는 당사자 간 협상(unassisted negotiation), 알선(conciliation), 조정, 전문가결정, 전문가결정, 조기중립인평가(early neutral evaluation), 분쟁해결위원회(dispute board), 중재 또는 신속중재, 여러 방법이 통합된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sup>38</sup> ADR 제도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한 관련 절차에 참여하는 데 동의하는 자발적인 합의 과정이 포함됩니다. 도2.1에 WIPO 센터에서 제공하는 ADR 제도 및 절차가 나와있는데, 조정, 중재, 신속중재 및 전문가결정이 포함됩니다.<sup>39</sup> 당사자들은 주계약(principal contract)상의 표준 “WIPO 사전합의조항(WIPO Contract Clause)”에 대해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항을 포함시키면 주계약으로 인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WIPO 조정, 중재, 신속중재 또는 전문가결정 규칙(WIPO Mediation, Arbitration, Expedited Arbitration or Expert Determination Rules)에 따라 처리됩니다.<sup>40</sup> 사전합의조항이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이 발생한 이후) 사후합의계약을 통해서도 WIPO 센터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도2.1 WIPO 센터에서 제공하는 ADR 제도 및 절차



### 조정

WIPO 센터는 조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중립적 매개자인 조정인이 당사자들의 개별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분쟁이 화해에

이르도록 돕는 비공식적인 합의 절차입니다. 조정인은 화해결정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화해합의는 계약의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은 공개법정(open court) 또는 합의된 중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sup>41</sup>

하나의 절차로서 조정은 중재나 전문가결정에 비해 덜 공식적입니다. 협상의 보조적인 형태로, 조정인은 당사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최종 결정을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에 이르면, 화해합의는 당사자들 간 계약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들은 중재나 다른 ADR 방법 및 소송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sup>42</sup>

조정 절차는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는 데 대한 당사자들 간 기본합의에 근거합니다. 조정합의는 미래의 계약상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명시할 수 있습니다. 조정합의가 없는 경우, WIPO 조정에 분쟁을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는 WIPO 센터 및 상대방에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WIPO 센터나 WIPO 센터가 선임한 외부 중립인은 당사자들이 해당 요청을 고려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분쟁을 WIPO 조정에 회부하는데 동의해야 합니다.<sup>43</sup> 조정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가 존재하는 WIPO ADR 절차의 경우, WIPO 센터에서 관리하는 사건의 거의 70%가 조정 절차에서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sup>44</sup>

조정은 중재나 소송에 비해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 절차 및 결과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계에 걸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든 이용할 수 있으며, 소요 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으며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는 소송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sup>45</sup>

조정은 덜 대립적인 ADR 유형으로, 분쟁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나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연관되어 있고 분쟁 당사자들이 사업 관계를 지속하거나 발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양 당사자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달성하는 데 매우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다양한 IP 분쟁에 적합합니다.<sup>46</sup> 어떠한 인정, 제안 또는 화해 제안도 조정 절차를 벗어나 이용될 수 없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고 비밀이 유지되는

조정(ADR)의 특성은 당사자들이 보다 솔직하게 협상에 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 및 기타 유형의 지원을 통한 협상(assisted negotiation)은 중재나 소송에 비해 특정한 장점이 있지만 그 효과는 대개 분쟁의 유형, 당사자들의 교섭 지위(bargaining position) 및 화해 합의의 집행가능성(예를 들어, 일방 당사자의 자산이 위치하는 곳에서의 합의 집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조정협약(Singapore Mediation Convention)의 채택은 화해 합의의 국제적 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sup>47</sup> 이 국제협약은 조인국의 법원이 직접 국제적 화해 합의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IP 분쟁이 그 성격상 국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싱가포르조정협약으로 그러한 분쟁에서 당사자들의 조정 이용이 보다 장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sup>48</sup>

## 중재

중재는 소송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 ADR 유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판정(adjudicatory) 방식입니다.<sup>49</sup> 중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개별 권리와 의무에 근거하며 중재법에 따라 국제적으로 집행가능한 구속력 있고 최종적인 결정(판정)을 위해, 당사자들이 단독 또는 복수의 선임된 중재인에게 분쟁을 회부하는 합의 절차. 비공개적인 대안으로서 중재는 보통 법원소송을 배제(foreclose) 한다.”<sup>50</sup>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겠다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의 계약에 포함된 중재 규정 또는 조항은 일반적으로 중재 절차의 핵심 측면들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중재지(장소), 선임될 중재인의 수 및 중재의 절차규칙이 포함됩니다. 중재지의 선정, 선정된 중재지의 법원이 제공하는 지원 수준, 판정의 집행가능성 및 당사자들이 판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는 법제도 내에서 중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와 관련됩니다.

“법원소송과 마찬가지로 중재는 침해 및 유효성 문제를 포함하는 분쟁에 적용 가능한 현지법의 현지화 및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재에서 그러한 법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이 직접 선택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나타나는 어떤 문제도 비교적 쉽게 협상되고 해결될 수 있다.”<sup>51</sup>

그러나 절차규칙은 해당 분쟁의 심리가 열리는 중재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기관의 절차규칙은 일반적으로 중재의 개시,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설립, 절차의 수행, 중재판정 및 기타 결정, 수수료 및 비용 책정,

비밀유지 등 전체 과정을 다룰 것입니다.<sup>52</sup> 중재기관들은 사용자들의 필요와 선호 및 국내외 관련 규제 동향에 따라 정기적으로 규칙을 개정합니다.

대부분의 중재기관들의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은 모든 사실 및 전문가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제출로 사건을 중재판정부에 회부합니다. 일정을 합의하기 위한 심리준비기일(interim hearing)과, 기타 중재절차 중 심리기일(interlocutory hearing)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재는 선정된 중재지(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다른 장소)에서 열리는 심리에서 종결되며 중재판정부가 최종판정을 내립니다. 많은 기관들이 신속한 처리 방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WIPO는 신속중재 절차를 제공하는데, 이는 단축된 기간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재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신속중재 절차를 이용하면 보다 짧은 기간 안에 최종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sup>53</sup>

법원의 사법적 판단과 중재판정 간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에 제3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대세적(erga omnes) 효력이 있는 반면, 후자는 당사자간(inter partes) 효력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와 관련됩니다.

“...중재판정은 관련 중재 절차의 당사자들에게만 해당되며 당사자간 효력만 나타난다. ... 일방 당사자가 예를 들어 잠재적인 지식재산권 침해자를 저지하기 위해 공개 가능한 판결을 얻기를 원한다면 국제 중재는 모든 사건에 적합한 선택은 아닐 수 있다.”<sup>54</sup>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가 중재의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에 중재는 계약 당사자들이 지속적인 상업적 관계와 비밀을 유지하기를 원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 특히 적합합니다.

## 전문가결정

전문가결정은 당사자들이 회부한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나 결정을 제공할 1인 또는 그 이상의 공정한 전문가의 선정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IP 자산 가치평가 또는 로열티 수수료, 관련 라이선스 권리 범위 또는 저작권의 예외사항 및 제한사항의 존재여부 등 특정한 기술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향이 있습니다.<sup>55</sup>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전문가결정의 결과는 구속력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WIPO 센터에 따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가결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당사자들 간의 분쟁 또는 차이점이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1인 또는 그 이상의 전문가에게 회부되는 절차입니다. 결정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이 있습니다.”<sup>56</sup>

영국 지식재산청(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up>57</sup> 및 일본 특허청(Japan Patent Office(JPO))<sup>58</sup> 등 국내 특허청들은 특허의 유효성이나 범위의 다양한 측면에 관해 선임 특허 심사관들이 제공하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인 전문가 견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당사자들이 화해를 협상하거나 아니면 소송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결정의 한 변형이 조기중립인평가로, 여기서는 각 당사자 주장의 강점 및 약점을 평가하도록 전문가(보통 경험이 많은 변호사나 은퇴한 판사)가 선임됩니다.<sup>59</sup>

전문가결정은 다른 ADR 절차들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미래의 쟁점이나 분쟁을 처리할 방법으로 주계약에 전문가결정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분쟁이 이미 발생하였으나 관련 계약에 그러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WIPO 규칙에 따라 당사자들 간의 사후합의계약 후 전문가결정에 분쟁이 회부될 수 있습니다.<sup>60</sup>

전문가결정은 독립적인 절차로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조정, 중재 또는 소송의 일부나 연관된 절차로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 분야의 독립적인 전문가가 조기중립인평가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평가는 일반적으로 해당 쟁점에 대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중립적인 전문가 견해는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결정과 중재 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중재는 당사자들이 사건을 중재판정부에 회부하는 보다 구조적인 판정 절차를 수반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절차가 종결될 때에는 중재판정부에서 최종 중재판정을 내리며 이는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에 따라 국제적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sup>61</sup> 전문가결정은 중재에 비해 덜 공식적이고 대개는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sup>62</sup> 일반적으로 중재가 다루는 분쟁의 범위가 더 넓지만, 특정 쟁점은 당사자들이 전문가결정에 회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역할도 중재인의 역할과 다릅니다. 중재에서 중재인은 (해당 사안에 대한 관련 전문 지식이 있어도) 자신의 견해가 아닌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증거와 서류에 근거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전문가결정에서는 당사자들이 특정한 절차규칙에 합의하지 않는 한 전문가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가 있어도 그와 상관없이 자신의 견해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 법적 보호장치로서 절차적 요건이 전문가결정보다는 중재에서 더욱 중요합니다.<sup>63</sup> 중재판정과 달리 전문가결정에서 나온 결정의 집행은 당사자들 간의 계약상 청구를 토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법정에서 전문가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매우 제한적인 경향이 있습니다.<sup>64</sup>

## ADR 이용과 관련된 핵심 고려사항

광범위한 IP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ADR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에는 ADR 이용의 비용 효율성 및 효과성, 전문 기술 지식을 가진 중립적인 제3자에 대한 요구 등이 있습니다. 본 섹션에서는 IP 분쟁에서의 ADR 이용에 관한 기존 문헌에서 고려된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ADR 절차(특히 조정)는 단단계 분쟁해결체계 또는 소위 멀티도어코트하우스(multi-door courthouse)의 일부인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ADR을 소송의 “대안(alternative)”으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sup>65</sup> 점점 더 많은 관할권의 법원에서 분쟁 당사자들에게 소송이 개시되기 전에 먼저 조정 등의 ADR 수단을 이용하기를 고려하거나 실제 활용해 보는 것을 기대하거나 심지어 요구할 수 있습니다.<sup>66</sup> 최근 수십 년 동안 많은 관할권에서 당사자들의 분쟁 해결 지원을 목적으로 법원 지원형(court-sponsored) 또는 법원 연계형(court-annexed) ADR 절차들이 확산되었는데, 여기에는 법원 내 조정제도<sup>67</sup>와 (보다 드물게) 사법형 조기중립인평가<sup>68</sup>가 있습니다.

## 시간과 비용

디지털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생산자, 사용자 및 인터넷 중개자는 빠르고 역동적인 기술 혁신 및 변화가 특징인 생태계에서 작동합니다.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의 당사자들은, 특히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거나 개인인 경우에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 방법 및 절차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작권 보유자들에게는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즉각적으로 시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상의 디지털 콘텐츠는 수 초만에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전 세계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업적 관계에서는 당사자들이 함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보다 복잡한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의 경우에 조정, 전문가결정 또는 중재 등 ADR은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절차가 간소화되고 항소 빈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입니다.<sup>69</sup> 예를 들어, 중재절차는 (특히 신속중재의 경우) 증거개시(discovery) 및 재판 일정이 단축되고, 또한 화상심리(virtual hearing)가 진행될 수 있는 등, 일반적으로 소송에 비해 형식상의 절차(formalities)가 적습니다.

## 유연성과 선택권

흔히 드는 ADR의 이점은 당사자들이 분쟁을 어떻게,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에 의해 해결할 지를 결정할 자율성이 제공된다는 점입니다.<sup>70</sup>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의 특성은 당사자들이 자신의 특정 이익을 충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분쟁 해결을 위한 보다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ADR 절차 및 방식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소송에서 발견되는 보다 형식적인 절차를 특징짓는 절차적 제약이 제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특히 조정은 형식적인 절차가 비교적 적고 당사자들은 조정 절차의 진행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창의적인 해결방안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성이 필요한 것은 특정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특히 중요한데, 그런 분쟁에서는 저작권 보호 자료 및 콘텐츠의 적법한 사용에 관한 인식이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매우 상이할 수 있고 저작권법의 영향에 대한 일반 사용자들의 이해 및/또는 수용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sup>71</sup> 게다가 당사자들 간에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향후 관계에 미칠 피해를 예방하는 데 대한 상호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ADR이 소송보다 적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은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보다는 동기나 이해관계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당사자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화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의 관점에서 보면, 일부 사건의 경우 ADR 제도의 합의적 성격이 잠재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소송과 달리, 당사자들이 추가되어도 이들이 자동적으로 ADR 절차에 추가되거나 관련 ADR 절차에 통합될 수 없는 것입니다. WIPO 센터를 포함한 일부 중재기관은<sup>72</sup>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소송에 비하면 중재에서 제3자를 포함시키거나 다수의 분쟁을 통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ADR 제도의 비밀유지 특성도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많은 당사자들이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 일부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서, 제3자들이 해당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면 해당 사건에 포함될 수 있는 소송의 이점을 ADR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집행가능성

### 중재

소송은 국내에서의 집행에 있어 분명 가장 “우수한(superior)” 분쟁해결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의 집행 용이성은 일반적으로 중재의 핵심 장점으로 보입니다. 특히, 뉴욕협약은<sup>73</sup> 160여 개국에서의 중재판정의 상호 집행(reciprocal enforcement)을 규정합니다.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자국의 절차규칙에 따라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 따라 어떤 체약국에서든 집행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중재법에 따라서는 중재판정을 집행하는 것이 외국 판결을 집행하는 것보다 간단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재법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할 것입니다. 뉴욕협약에 따라 체약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중재합의의 당사자들이 제한능력자(under some incapacity)인 경우
-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적용한 법에 따라 유효하지 않은 경우
-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한 적절한 통지를 받지 않았거나 그 외에 자신의 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 판정이 중재에 회부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절차가 당사자들의 합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판정이 최종성과 구속력이 없거나 취소된 경우
- 판정 대상이 체약국의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한 화해가 불가능한 경우
- 판정의 집행이 공공 정책에 반하는 경우<sup>74</sup>

### 전문가결정

전문가결정은 중재판정에 비해 계약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의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법원에서는 명백한 오류가 있는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해당 분쟁의 본안(merits)을 재고하지 않고 전문가결정 조항 및 전문가의 결정을 적극 집행해 왔습니다.<sup>75</sup>

### 조정

조정에는 전통적으로 소송이나 중재만큼의 집행 강도(enforcement strength)가 없습니다. 화해합의는 전문가결정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들 간 계약상 합의와 같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2018년에 채택된 싱가포르조정협약은 동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의 법원에서 이루어진 국제적 화해합의가 새로운 절차의 개시 없이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조정협약은 관할 당국(법원 등)이 다음 경우에 집행을 거절할 수 있는 특정 근거를 제시합니다.

- 화해합의의 일방 당사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
- 화해합의가 법에 따라 무효하거나 실효(inoperative)이거나 이행 불가능하거나, 구속력이나 최종성이 없거나, 후회 수정된 경우
- 화해합의상 의무가 이미 이행되었거나 명확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구제 부여가 화해합의의 조건에 반하는 경우

- 조정인 또는 조정에 적용되는 기준을 조정인이 심각하게 위반하였으며 그러한 위반이 없었다면 해당 당사자가 화해합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 조정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을 조정인이 공개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일방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이나 부당한 영향이 초래되었는데, 공개가 되었다면 해당 당사자가 화해합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 집행국의 공공 정책에 반하는 경우<sup>76</sup>
- 분쟁의 대상이 집행국의 법에 따라 조정에 의한 화해가 불가능한 경우

싱가포르조정협약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는 조인국인 자국에서 동 협약을 어떻게 이행하는가에 궁극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동 협약은 조인국인 자국의 절차규칙에 따라 조정의 진행과 성립된 화해의 집행을 결정할 상당한 여지를 남겨 놓습니다.

### 관할권의 중립성

많은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은 국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저작권 이용은 본질적으로 역외적(extra-territorial)입니다. IP 쟁점의 속주주의적 성격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권 보호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준거법은 보통 국가마다 다릅니다. 이는 지역 및 초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지식재산권법, 그리고 국제적 IP 분쟁 해결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에도 여전한 현실입니다.<sup>77</sup>

각 당사자는 자국법원에서 분쟁 해결을 진행할 때 “자국법원의 이점(home-court advantage)”은<sup>78</sup> 알 수 있지만, 여러 관할권(및 한 국가 내 여러 법원)에서 소송을 개시해야 하는 현실은 당사자들의 자원과 시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법정지(forum)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유효성 및 침해와 관련하여, 다른 법정지에서는 계약상의 불일치(contractual disagreement)와 관련하여 병행소송(parallel proceedings)이 진행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드물지 않습니다.<sup>79</sup> 서로 다른 관할권에서의 병행소송은 상충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관할권, 법정지 선택 및 외국 판결의 인정과 관련된 복잡한 법의 저촉(conflict of laws)에 대한 고려에 따른 소송의 장기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합니다.<sup>80</sup>

국제 상거래 당사자들은 그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ADR을 위한 중립적인 법정지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주로 사전에 단일 법정지 및 절차를 선정하고 이에 합의함으로써 소송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된 위험과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을 다룰 중립적인 법정지 외에도 당사자들은 ADR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신들의 관할권과는 다른 관할권의 조정인, 중재인 또는 전문가, 중립적인 준거법, 중립적인 장소 및 중립적인 언어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 기술적 전문화

판정인(adjudicator)의 기술적 전문성은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일 수 있습니다. 일부 이러한 분쟁에서는 판정인이 소프트웨어의 기초 기술이나 창작물의 미묘한 차이를 확실히 이해해야 하는 복잡한 기술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쟁의 당사자들은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판정인(또는 조정인)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 관할권에 전문적인 IP 법원 및 중재판정부가 생겼고, “법원과 법관의 경험 및 전문성 수준이 충분하면 IP 분쟁에서 공정성의 질이 상당히 향상될 수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sup>81</sup> 임시적 구제 및 기타 잠정적 처분 신청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법원의 전문 지식은 IP 분쟁에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적인 법원이 있으면, 비전문적인 법원에서 법관 대신 전문가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데 대한 위험을 피하고, 법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더욱 확립하며, 법정지 쇼핑(forum shopping)의 위험을 피하거나 줄이고, IP 분쟁에 맞춰진 특별한 절차규칙의 채택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sup>8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가 전문적인 IP 법원 및 중재판정부를 설립하고 유지할 자원, 전문성 또는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문적인 법원이 특정 이해집단에 “포획(capture)”되거나 IP 분쟁이 발생한 보다 광범위한 법적, 정책적 제도를 간과하는 “터널 시야(tunnel vision)”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sup>83</sup>

“전통적인 IP 법원소송의 대안으로서의 IP ADR 제도의 이용 가능성과 효율성은 전문적인 IP 법원의 장점 및 필요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sup>84</sup> IP 분쟁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ADR은 전문 지식을 갖춘 조정인, 중재인 및 전문가의 보다 광범위한 인력풀을 당사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쟁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분쟁의 실체가 기술적 불일치(technical disagreement)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여 전문가결정과 같은 적절한 ADR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일 것입니다.<sup>85</sup> 보다 광범위한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의 경우, 적절한 기술 전문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중재인이나 조정인이 있으면 분명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이나 조정인이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사건을 적절히 해결할 것이라는 확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은 중재인이나 조정인에게 엄청난 양의 기술 설명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당한 시간, 노력 및 자원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sup>86</sup>

### 비밀유지

ADR은 법원소송의 공개성에 비해 중재 및 조정이 제공할 수 있는 비공개 및 비밀유지성(confidentiality) 때문에 상업적 당사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영업비밀, 및 소프트웨어 원시 코드 등 독점적이거나 민감한 기타 사업 정보에 관한 것이고 지속적으로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들은 보다 비공개적인

분쟁 해결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은 분쟁 해결 절차의 비밀유지를 추구하는 데 있어 자신의 평판을 보호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밀유지에 대한 요구는 이를 통해 “당사자들이 분쟁 공개의 영향을 우려하지 않고 분쟁의 본안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IP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sup>87</sup>

ADR에서는, 당사자들은 공개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어떤 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분쟁 초기에 중요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심리, 증거 및 공개(disclosure) 등 ADR 절차의 일부나 전부를 비밀로 유지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일부 ADR 기관들은 ADR 절차 및 결과와 관련하여 비밀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상세한 규정을 절차규칙에 마련하고 있습니다.<sup>8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정 및 중재 절차가 본질적으로 비밀유지를 보장한다고 추정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관련 ADR 규칙의 비밀유지 규정이 “세부성과 포괄성의 수준에서 상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sup>89</sup> 특히 WIPO 규칙에는 WIPO ADR 절차의 존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상세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선례적 가치

특정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소송 방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판결의 공개(publicity) 및 선례적 또는 설득력 있는 가치는 소송 당사자들이 유용하게 생각하는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거나, 기업이 유사한 쟁점이나 대상이 연관된 다른 여러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에 연관된 경우에 특히 바람직합니다. 조정 또는 중재의 비밀유지 특성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관련 법제도 및 ADR의 채택

### ADR에 적합한 대상으로서의 저작권 분쟁

최근 들어 지식재산권을 ADR 절차에 적합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를 분석하려면 먼저 필수등록절차를 밟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예: 특허, 상표 또는 특정 디자인 보호 제도)와 그렇지 않은 권리(예: 저작권, 영업비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등록 기반 권리는 특허청과 같은 독립된 국가 당국에서 부여하므로 유효성을 심판하는 것은 국내법제도의 고유 권한이었는데, 공공 정책의 문제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sup>90</sup> 권리의 유효성에 대한 결정이 분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세적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국가 당국만이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와 달리,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해석 등 IP 요소가 있는 계약상 분쟁이나 상사분쟁은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얼마 전부터 인정되어 왔습니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에는 자발적인 등록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등록이 필수는 아니므로,<sup>91</sup> 광범위한 저작권 분쟁은 ADR에 적합한 대상이 됩니다. 제한적인 일부 쟁점들만 해당 관할권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각예술가의 저작인격권(moral rights)이나 추급권(resale rights 또는 droit de suite) 등<sup>92</sup> 저작권의 특정 측면들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personality interests)과 연관되고 따라서 많은 관할권에서 양도될 수 없기 때문에 전부터 ADR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들은 저작재산권(economic rights, 예: 복제 및 배포와 관련)과 함께 양도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의 법제도와 같이 ... 처분 불가능한 권리(non-disposable rights)와 관련된 분쟁의 중재 가능성을 배제하는 법제도와, 독일, 스위스 및 포르투갈의 법제도와 같이 이와 관련하여 청구 또는 걸린 이익의 경제성의 기준을 채택하는 법제도 모두에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관련 분쟁의 중재 회부가 제한” 되었습니다.<sup>93</sup> 그러나 다른 국가에서 채택한 보다 허용적인 접근법에 따르면, 조정이나 중재의 효력이 당사자간으로 국한되는 한 저작인격권 관련 분쟁도 조정이나 중재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sup>94</sup>

등록 기반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도 보다 진보적인 입장이 점차 발전했습니다.<sup>95</sup>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라이선싱 또는 지식재산권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분쟁 등 많은 종류의 계약상 분쟁은 언제나 ADR을 통한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중재판정의 효력이 당사자들에게 제한되면 등록 기반 권리의 유효성도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관할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와 등록의 유효성에 대한 중재판정은, 그와 같은 사안을 피고가 방어방법(means of defense)으로서 제기하는 경우에 부수적인 문제로서만 다룰 수 있으며, 그러한 판정은 당사자간 효력만 갖게 된다. ... 요컨대,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지식재산권의 무효성은 선언할 수 없고 분쟁 당사자들 간 집행불능(non-enforceability, 대항력(inopposabilité)만 선언할 수 있다.”<sup>96</sup>

이런 접근법을 채택한 관할권에는 프랑스, 싱가포르 및 홍콩(중국)이 있습니다.<sup>97</sup> 소수의 국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분쟁과 무관한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중재판정의 대세적 효력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연방 지식재산기관(Swiss Feder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에서는 특허를 무효한 것으로 선언하는 중재판정을 같은 취지의 판결이나 명령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집행합니다.<sup>98</sup>

### 국내 및 지역 저작권 제도에서의 ADR

보다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국가의 법원들은 전통적인 소송 환경에서 개시되는, 저작권 소송을 포함한 민사소송에서 소송 당사자들에게 ADR 해결책을 안내합니다.<sup>99</sup> 일부 응답자들은 그래서 자국 관할권의

전반적인 ADR 제도에 저작권 분쟁도 포함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할권에서는 저작권법이 특정 유형의 분쟁을 ADR 접근법을 이용하여 해결하도록 명시적으로 장려하거나 의무적으로 요구합니다. 일부 인터뷰 응답자들은 그러한 법이 중요한 신호를 보낸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해당 법이 당사자들에게 특히 저작권 분쟁과 관련하여 ADR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익하게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 국내 지식재산청이나 저작권청들이 저작권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ADR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한 동향입니다. 다음 사례들은 ADR 해법이 법으로 규정되거나 국내 지식재산청이 제공하는 다른 제도적 장치에 의해 지원되는 다양한 저작권 분쟁 상황 및 유형을 보여 줍니다. (국가 목록은 영문 알파벳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호주**

1968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sup>100</sup> 등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되는 저작권 자료(copyright material)의 사용에 대해 제공되는 적절한 라이선스 보상과 관련한 분쟁을 고려하도록 호주 연방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 산하의 독립 조직인 호주 저작권재판소(Copyright Tribunal of Australia)에서 운영하는 준사법제도를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교육용 및 정부용) 법정 라이선스(statutory license)와 (일반적으로 “포괄적(blanket)” 레퍼토리 라이선스(repertoire license)를 위한 집중관리단체의) 자발적 라이선스(voluntary license) 및 기타 특정한 상황들이 포함됩니다. 동 재판소는 분쟁 신청 또는 그 일부를 ADR 절차에 회부할 권한이 있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안을 심리하지는 않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에는 회의, 조정, 중립인 평가, 사건 평가(case appraisal) 및 화해(conciliation)가 포함됩니다.

호주에는 일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사용자에게 의해 저작권이 침해될 때 침해 콘텐츠를 삭제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통지에 응하는 등의 요구조건을 수행하면 특정 상황에서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한해주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를 포함하되 콘텐츠 호스팅 플랫폼은 제외한, 통신 서비스 사업자(carriage service provider(CSP))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제도는 적용 범위가 장애인, 교육, 도서관, 기록물 및 문화 영역의 서비스 제공자에게로 확대되었으나,<sup>101</sup> 전자상거래 시장, 소셜미디어, 사용자 그룹 포럼 등 기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세이프 하버” 제도는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처벌은 면제되나 금지명령구제(injunctive relief)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콘텐츠 삭제에 대한 항소를 규제하는 법률 규정은 없으며 이는 ADR 제도로 해소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또한 호주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플랫폼과 자국의 뉴스 기업들 간 협상력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자국의 뉴스미디어

부문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할 수 있는 의무행동강령(mandatory code of conduct)을 시행하고 있습니다.<sup>102</sup>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과 단편들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강령에 따르면 지정된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뉴스 콘텐츠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 강제 중재가 진행됩니다. 소위 야구 중재(baseball arbitration)에서 중재패널은 협상 당사자들이 제시하는 두 가지 최종 제안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브라질**

2013년에 개정된 브라질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Law on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1998년 법률 제9610호)에서는 로열티 지급, 금액 산정 기준 등과 관련하여 집중관리단체와 저작권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합니다. 제100-B조(Article 100-B)에서는 그러한 분쟁이 소송 외에도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위법령(subordinate legislation)에 따라 브라질 문화부(Ministry of Culture)는 저작권 보유자 또는 그 대리 단체와 사용자 간의 조정, 화해(conciliation) 또는 중재를 조성할 권한을 갖습니다.<sup>103</sup> 동 법에 따르면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갖춘 분쟁 해결 전문가 패널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중국**

중국 저작권법(Copyright Law of China, 개정<sup>104</sup>)에서는 ADR 제도를 인정합니다. 동 법 제55조(Article 55)는 저작권 분쟁이 분쟁 당사자들 간의 서면 중재 사후합의계약에 근거하여, 또는 저작권 관련 계약상의 중재 조항에 따라 중재로 해결되거나 조정으로 화해에 이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계약이나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들이 바로 법원소송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ADR(중국에서 “다원화된 분쟁 해결(diversified dispute resolution)” 이라고 부름) 제도를 채택하기 위해 중요한 최고위급 정책 지시가 있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Supreme People’s Court(SPC))은 2016년에 법원에 회부, 심리 및 재판된 건수를 줄이기 위해 다원화된 분쟁 해결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견(Opinion)을 발표하였습니다.<sup>105</sup> 이는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이며 적시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에 상사분쟁을 회부하기 위한 것입니다.<sup>106</sup> 이러한 기관에는 산업협회, 중재위원회, 전문조정협회, 중립인평가제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상기 중국최고인민법원 의견은 해당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후에 법원에 연계된 조정인을 참여시킴으로써 법원 내에서 사건 조정이 보다 잘

이루어지도록 요구합니다. 동 의견은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법부 외부의 힘을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조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법원의 조정합의 집행 절차를 완화하여 법원과 기타 분쟁해결기관의 연계 강화를 요구합니다.<sup>107</sup> 2019년에 중국최고인민법원은 다원적인 “원스톱(one-stop)” 분쟁해결센터 및 “원스톱” 소송센터의 설립에 관한 후속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사건 처리를 위한 소송 서비스 플랫폼 및 영상 연결의 활용 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sup>108</sup>

그 외에도 저작권 조정 서비스를 포함한 IP 분쟁 관련 (비사법적) ADR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몇몇 기관들이 있습니다.<sup>109</sup> 중국의 상사분쟁 해결 환경에서 친중재(pro-arbitration)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이는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의 ADR 제공 방법들 외에도, 중국은 특히 항저우, 베이징 및 광저우에 인터넷 법원을 설립하여 “스마트 법원(Smart Courts)” 체제에서의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투자하고 있습니다.<sup>110</sup> 이 법원들은 처리 속도를 높이고 소송 비용을 줄이며 편의성을 높이도록 고안된 것으로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 조정 및 재판 제도와, (예를 들어, 안전한 블록체인 증거 생성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전자증거 제출과 관련한 기술 혁신도 도입하였습니다.<sup>111</sup> 이러한 인터넷 법원은 다른 중국 법원들과 마찬가지로 사법적으로 관리되는 조정을 점점 더 강조합니다.

## 콜롬비아

### 콜롬비아 국가저작권국(National Directorate of Copyright(DNDA))과 WIPO 센터의 협업

콜롬비아에서는 국가저작권국이 2012년부터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관련 분쟁을 위한 조정(conciliatio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sup>112</sup> 국가저작권국에서 제공하는 조정 서비스는 조정에 관한 콜롬비아 법령에 근거하는 내부 조정 및 중재 규칙(Internal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Rules)에 따라 관리됩니다.

조정신청서는 일방 또는 양 당사자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국가저작권국이 제공하는 조정인 목록에서 자신들의 심리를 진행할 조정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저작권국이 내부 담당자 중 한 명을 조정인으로 선임하거나,<sup>113</sup>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조정인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외부 조정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정인은 콜롬비아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and Law)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sup>114</sup>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 심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정인은 차후 법원소송에 재판 전 조정 의무를 이행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조정안(certificates)을 발급하게 되는데,<sup>115</sup> 이는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한 IP 분쟁 사건에서 요구되는 것입니다.<sup>116</sup> 이 조서는 조정 심리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제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sup>117</sup>

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 화해 조건은 법원 판결로서 집행될 수 있는 조정안에 조정인이 기록하게 됩니다.<sup>118</sup> 화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정인이 조정 결과를 명시하는 조정안을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sup>119</sup> 국가저작권국의 조정중재센터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enter)의 사건은 2018년에 403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약 85%가 국내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었고 15%는 국제적 쟁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판례법에는 소프트웨어 침해 등 저작권 및 콘텐츠 침해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해당 서비스 이용자는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예를 들어, 저작자, 번역가), 집중관리단체 및 대학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35%는 화해(acta de conciliación)에 이르지 못하고 15%는 화해에 이르렀습니다.

WIPO 센터는 국가저작권국과의 협업 양해각서에 따라 콜롬비아의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관련 조정 절차를 권장합니다. 국가저작권국과 WIPO 센터는 분쟁의 WIPO 조정 회부가 용이하도록 서식을 마련하고 그러한 조정 회부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제공합니다.<sup>120</sup>

## 도미니카공화국

### 도미니카공화국 국가저작권청(National Copyright Office(ONDA))과 WIPO 센터의 협업

국가저작권청의 조정알선중재센터(Center for Med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는 ADR 방식을 통한 도미니카공화국의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관련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동 센터의 목적은 법원소송 없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해당 당사자들을 돕는 데 있습니다.<sup>121</sup> WIPO 센터와 국가저작권청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저작권 분쟁을 위한 공동 관리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 에콰도르

지식, 창조 및 혁신의 사회경제에 관한 기본법(Organic Code on the Social Economy of Knowledge, Creativity and Innovation)은<sup>122</sup> 제262조에서 조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공식적으로 설립된 사용자 협회, 조합 또는 대표단체가, 집중관리단체에 대해 정해지고 허가된 사용료율이 동 기본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식재산권 관련 사안에 대해 관할 당국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상기 기본법의 제565조는 지식재산권 위반 주장에 따른 웹 포털 서비스의 중단 및 보호받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공중전달(public communication) 중단 등 임시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중재조정법(Arbitration and Mediation Law)은<sup>123</sup> 제1조 및 제43조에서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를 수 있는 어떤 분쟁도 중재 또는 조정에서 회부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에콰도르 국가지식재산권부(National Service of Intellectual Rights(SENADI))와 WIPO 센터의 협업**

WIPO 센터는 에콰도르의 IP 분쟁을 위한 ADR 활용을 촉진하는 데 국가지식재산권부와 협업합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EU))**

초창기 범유럽 조화 중재를 위한 개입정책(pan-European harmonization interventions)의 일환인 위성 및 케이블 지침(Satellite and Cable Directive)에는<sup>124</sup> EU 전체의 저작권 장벽을 극복하고 라디오 및 TV 콘텐츠의 국제적 배포를 장려하기 위해 저작권의 집중관리를 중심으로 설계된 저작권처리제도(copyright clearing mechanism)가 마련되었습니다. 콘텐츠 라이선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EU 회원국들은 “어느 당사자든지 협상 지원을 제공할 ... 단독 또는 복수의 조정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조정인은 당사자들에게 제안을 할 수도 있” 습니다.<sup>125</sup> 조정이 케이블 프로그램의 재송신 허가가 불합리하게 거절되거나 불합리한 조건으로 제공된 경우를 포함하여 계약 관련 협상을 지원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sup>126</sup> 그러나 회원국들은 이와 같은 의무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의 조정제도나, 잠재적인 조정인 목록 작성 같은 가벼운 접근법(light-touch approach)에 의존해 왔습니다. 실제로 조정 절차가 널리 활용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sup>127</sup>

정보사회지침(Information Society Directive(InfoSoc Directive))은<sup>128</sup> 1990년대 후반에 부상한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및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동 지침은 1996년에 체결된 WIPO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동 지침은 핵심 권리들, 그리고 저작권 적용 예외대상들을 조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개선된 사항 중 하나인, 모든 우회 수단에 대비한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TPM))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후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적 조치 및 특히 디지털 권리의 관리는, 전통적인 저작권 랜드마크(copyright landmark)를 위협하고 사용자의 사생활보호권(rights to privacy)에 영향을 미치며 공유(public domain) 정보 및 자료를 통제하는, 법의 달갑지 않은 사유화로 비난받아왔다. 게다가 사용자와 소비자들은, 그들이 아날로그 시나리오에서 그랬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가시간에 저작물을 향유하고 소비하는 것을 막을 ‘디지털 잠금(digital lock-up)’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sup>129</sup>

따라서 동 지침은, 아날로그에서의 예외사항들과 동등한 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자발적 조치가 권리보유자들에게서 곧 나올 것 같지 않으면, 회원국들은 기술적 보호조치가 그러한 예외사항들을 무효화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자 했습니다.<sup>130</sup> 이 지침은 서문에서 “조정 회부가 사용자 및 권리보유자의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sup>131</sup> 이러한 의무로 인해, 일부 EU 회원국들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사용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조정의 형태로 개입할 수 있는 감시기구(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행정기관)를 설립했습니다.<sup>132</sup>

집중관리지침(Collective Management Directive)은<sup>133</sup> 무엇보다도 자신의 권리를 집중관리단체에 위임하는 권리보유자들이 그 권리의 관리에 대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집중관리단체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권리보유자를 대신하여 하나의 포괄적 라이선스(blanket license)로서 한 번의 정기적 지급(periodic payment)을 위한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sup>134</sup> 일반적으로 한 관할권 내에는 각 분야 (예: 도서 및 기타 간행물, 음악저작물)마다 별도의 집중관리단체가 있습니다. 동 지침은 집중관리단체의 기능과 책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지침은 두 가지 영역의 분쟁 가능성을 예상합니다. 그 하나는 집중관리단체가 (예를 들어) 해당 권리, 회원의 조건 또는 로열티 징수와 배분을 관리할 적절한 권한을 갖는지에 대한 권리보유자 또는 회원과 집중관리단체 간의 분쟁이고, 다른 하나는 라이선스 조건, 라이선스 금액 또는 라이선스 거절과 관련한 집중관리단체와 사용자 또는 라이선시(licensee) 간의 분쟁입니다. 동 지침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회원국들은 본 지침의 적용과 관련한 집중관리단체, 그 회원, 권리보유자 또는 사용자 간의 분쟁이 신속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음악저작물의 온라인상에서의 권리에 대한 다국적 라이선싱(multi-territorial licensing)에 관한 규칙의 효과성은, 집중관리단체와 기타 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다국적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집중관리단체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권리보유자 또는 다른 집중관리단체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접근이 용이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소송 외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재판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지침은 그러한 대체적 분쟁해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구체적 방식을 규정하지 않고, 또한 조직의 독립성, 공정성 및 효율성이 보장되면 어느 조직이 그러한 일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지도 않는다.”<sup>135</sup>

제34조는 회원국들이 집중관리단체들 간, 또는 집중관리단체와 그 회원, 권리보유자 또는 사용자 간에 적용되는 “신속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ADR 제도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동 지침의 제35조는 “특히 기존의, 그리고 제안된 라이선싱 조건이나

계약 위반과 관련한” 집중관리단체와 사용자 간의 분쟁 해결을 다룹니다. 여기서 분쟁 당사자들에게 갈등 해결을 위해 조정이나 중재와 같이 접근이 쉽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소송 외 절차에 대한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이 분쟁해결제도를 선택적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법원소송을 고려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정보사회지침 이후 기술 발전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EU 저작권법을 보다 현대화하고자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Digital Single Market Directive(DSM Directive))이<sup>136</sup> 제정되었습니다. 동 지침의 목표 중 하나는 (인공지능 발전에 필요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및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과 같이 디지털 시대를 위한 관련 예외사항과 교육 및 연구 관련 예외사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접근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발행자, 저작자 및 온라인 플랫폼의 권리와 책임을 재조정함으로써 디지털 저작권 시장의 기능 개선을 요구합니다. 세 부류의 규정이 ADR과 관련이 있습니다.

- i. 당사자들이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의 목적으로 시청각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계약상 라이선스를 협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회원국들은 [그러한] 어려움에 당면한 당사자들이 ... 공정한 단체 또는 조정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원국이 본 조의 목적으로 설립하거나 지정한 공정한 단체, 그리고 조정인은 당사자들에게 교섭 지원을 제공하고 적절한 경우에 제안 등을 통해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야 한다.”

- ii. 일부 규정은 특히 소위 베스트셀링(best-selling) 저작물의 경우에 저작자와 실연자가 양질의 정보와 비례적인 보상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19조는 EU 회원국들이 저작자와 실연자가 “자신의 저작물 및 실연의 이용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관련 정보”를 입수하도록 하는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20조에서는 그와 동일한 결과가 달성되는 단체협약(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이 없는 경우에 저작자와 실연자(또는 그 대리인)가 다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본래 합의된 보상이 해당 저작물 또는 실연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차후의 모든 관련 수익에 비해 불비례하게 낮은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권리 이용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또는 그러한 당사자의 권리 승계인이 제공하는 추가의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

이는 해당 저작물이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입증된 경우, 계약 조정 규정을 도입하여 창작자 비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제19조는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제20조는 저작자와 실연자가 그 정보에 근거하여 계약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9조 및 제20조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제21조는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자발적인 ADR 절차”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의무를 회원국들에 부과합니다.

- iii. 제17조는 복잡한 규정으로,<sup>137</sup> 소셜미디어 또는 시청각 콘텐츠 공유 플랫폼과 같이 충분히 큰 규모로 운영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 의무의 성격은 권리보유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거나 콘텐츠 조정 수단(content-moderating mechanism)을 제공하는 것입니다.<sup>138</sup>
- iv. 콘텐츠 조정은 온라인 플랫폼을 스캔하는 자동 필터를 이용한 알고리즘 실행으로 수행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거짓 양성(false positive) 및 과잉 차단(over-blocking)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이 호스팅 플랫폼에서 제거될 수 있는데 인용 또는 패러디와 같이 인정된 저작권의 예외에 따라 저작권 침해 주장 콘텐츠의 복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sup>139</sup> B2B 환경에서는 소셜미디어에 의존하는 창작자들이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은 (i) 침해신고를 “지체 없이(without undue delay)” 처리하고 (ii) 콘텐츠의 비활성화나 삭제에 사람의 검토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ADR 해법이 제17조제9항에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 있는데,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회원국들은 분쟁 해결을 위해 소송 외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구제수단은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효율적인 사법적 구제조치에 호소할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않고 해당 사용자가 국내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박탈하여서는 안 된다.”

#### 유럽 회원국, 저작권 당국 및 WIPO 센터의 협업

WIPO 센터는 헝가리 지식재산청(Hungar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HIPO)),<sup>140</sup> 리투아니아공화국 문화부(Ministry of Culture of the Republic of Lithuania), 루마니아 저작권청(Romanian Copyright Office(ORDA))<sup>141</sup>, 및 스페인 문화체육부(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와 협업하여 각 관할권에서 저작권 분쟁을 위한 ADR 제도 활용을 촉진합니다.

#### 일본

1970년 일본 저작권법(Copyright Act, 개정)은 제105조 내지 제111조에서 저작권 관련 조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려면 일본 교육체육과학부(Ministry of Education, Sports and Science)의 문화국(Cultural Affairs Bureau)에 신청해야

하고, 그러면 문화국이 적합한 조정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전문적인 IP 중재, 조정 및 중립적인 전문가의 권고적 의견도 일본 지식재산중재센터(Japan Intellectual Property Arbitration Centre(JIPAC))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sup>142</sup> 일본 지식재산중재센터는 본래 특허법에 역점을 두고 1988년에 설립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도메인 이름 관련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분쟁 관련 ADR 신청 건수는 8%입니다.<sup>143</sup> 일본 특허청도 기타 전문 ADR 서비스 제공자들의 목록을 제공합니다.<sup>144</sup>

## 케냐

### 케냐 저작권위원회(Kenya Copyright Board(KECOBO))와 WIPO 센터의 협업

케냐에서는 권리보유자 및 사용자가 사건 해결을 위해 법원소송을 선택하지 않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모색하는 경우에 케냐 저작권위원회가 이들에게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조정 사건에는 음악 및 도서 출판 부문의 여러 권리보유자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케냐 저작권위원회는 시청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도 다룹니다.<sup>145</sup>

## 멕시코

멕시코의 새 산업재산 보호에 관한 연방법(Federal Law on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LFPP))이 2020년 1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동 법에는 침해 선언(infringement declaration, 저작권 포함) 관련 행정 절차 내에 멕시코 산업재산청(Mexican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IMPI Mexico))에서 수행하는 조정(conciliation)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법 제372조 내지 제385조에는 절차규칙이 마련되고 조정 절차의 여러 단계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조정은 분쟁의 본안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행정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모든 당사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기민한 절차(agile procedure)로, 이로 인해 멕시코 산업재산청에서 수행되는 행정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면 행정 절차는 종료되고, 그러한 합의에는 기판력(res judicata) 효력이 있어 최종 결정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 멕시코 당국과 WIPO 센터의 협업

#### 멕시코 산업재산청

WIPO 센터는 멕시코의 산업재산 관련 분쟁을 위한 ADR 제도 활용을 촉진하는 데 멕시코 산업재산청과 협업합니다.<sup>146</sup>

#### 멕시코 국가저작권청(National Institute of Copyright (INDAUTOR))

국가저작권청은 1996년부터 화해절차(Procedimiento de Avenencia)라고 불리는 조정(conciliation) 절차를 수행해 왔는데, 이는 멕시코 연방저작권법(Federal Copyright Law)에 규정되어 있습니다.<sup>147</sup> 이 소송 외 절차에서 국가저작권청은 당사자들이 저작권 분쟁에서 화해에 이르도록 돕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면 해당 합의는 법원 판결의 효력을 가집니다.

상기 절차는 어떤 당사자라도 자신의 저작권 및/또는 저작권접권이 상대방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개시됩니다. 이에 대한 심리는 신청서를 제출한 지 20일 후에 진행됩니다.<sup>148</sup> 심리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해서는 국가저작권청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sup>149</sup>

국가저작권청은 2009년 이후 13,000여 건의 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sup>150</sup> 예를 들어, 2019년에는 집중관리단체(76%)가 가장 많은 신청서를 제출했고, 개인(23%)과 소프트웨어 권리보유자(1%)가 그 뒤를 이었으며, 화해 성립률은 평균 16%였습니다.

WIPO 센터는 멕시코의 저작권 분쟁을 위한 ADR 제도 활용을 촉진하는 데 국가저작권청과 협업합니다. WIPO 센터와 국가저작권청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멕시코의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조정 회의를 마련했습니다.

## 나이지리아

2004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of 2004)은<sup>151</sup> 나이지리아의 저작권 규제 체계를 규정합니다. 동 법의 제3편(Part III)에서는 저작권의 관리에 대해 다루고 나이지리아 저작권위원회(Nigerian Copyright Commission(NCC))에 대해 규정합니다(제34절). 2007년 저작권(집중관리단체)규칙(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Regulations 2007)은 저작권법에 따라 제정된 2차 입법(secondary legislation)으로 분쟁해결패널(Dispute Settlement Panel)을 규정하는데, 이 패널은 나이지리아 저작권위원회가 선임하며 집중관리단체와 그 집중관리단체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고자 하는 저작권 보호 저작물의 사용자 간 라이선스 및 사용료에 대한 협상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고려합니다. 동 규칙은, 당사자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 증인 출석 명령 권한, 그리고 판정의 인정 및 집행과 관련하여, 나이지리아 중재법(Arbitration Act)의 특정 해당 규정을 교차참조(cross-reference)합니다.

### 나이지리아 저작권위원회와 WIPO 센터의 협업

나이지리아 저작권위원회와 WIPO는 2020년부터 나이지리아의 저작권 분쟁을 위한 ADR 제도 활용을 촉진하는 데 협업해 왔습니다.<sup>152</sup>

## 파라과이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법(Law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1998년 법률 제1328호)은 제12편(Title XII)에서 국가지식재산국(National Directorate of Intellectual Property(DINAPI))에 대해 규정합니다. 제147조제5항은 국가지식재산국에게 저작권 분쟁 당사자들을 중재하거나 조정(conciliation) 심리를 소집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국가지식재산국의 설립에 관한 동 법에 대한 명령 제460/2013호(Decree No. 460/2013 Regulating the Law Creating DINAPI)는 제6조에서 국가지식재산국의 조직구조 내 조정국(Directorate of Mediation and Conciliation)에 대해 규정합니다.

### 국가지식재산국과 WIPO 센터의 협업

국가지식재산국과 WIPO는 파라과이의 IP 분쟁을 위한 ADR 제도 활용을 촉진하는 데 협업합니다.

## 필리핀

### 필리핀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IPOPHL))과 WIPO 센터의 협업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2010년부터 IP 분쟁을 위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조정은 지식재산권 침해 및/또는 부정 경쟁(unfair competition)에 대한 행정고발(administrative complaint) 및 공연 또는 저작물의 기타 전달(communication) 방식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포함한 라이선스 조건 관련 분쟁 등 필리핀 지식재산청이 관장하는 IP 분쟁 유형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sup>153</sup>

필리핀 지식재산청에 계류중인 분쟁에 대한 조정 서비스는 해당 분쟁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ADR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sup>154</sup> 일반적으로 분쟁은 조정을 위해 필리핀 지식재산청의 대체적 분쟁해결서비스(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ervices(ADRS))에 회부되어 동 청의 조정규칙(Mediation Rules)에 따라 관리될 수 있습니다.<sup>155</sup>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2011년 이후 40건의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관련 조정을 관장했으며 조정 화해 성립률은 35%입니다.

2015년 4월 이후에는 일방 또는 양 당사자가 필리핀 밖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 분쟁을 WIPO 센터에 회부하여 WIPO 조정규칙에 따라 관리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조정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무 보고를 위해 해당 사건을 필리핀 지식재산청에 회부한 후 WIPO 센터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sup>156</sup> WIPO 조정을 선택한 당사자들을 위해 WIPO 센터는 해당 절차를 관장하고 적절한 조정인의 선임도 지원하게 됩니다.<sup>157</sup> 필리핀 지식재산청과 WIPO 센터는 분쟁의 WIPO 조정 회부가 용이하도록 서식을 마련하고 그러한 조정 회부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제공합니다.<sup>158</sup>

조정을 청구한 당사자가 조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사건은 각하(dismiss)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조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태(default)가 선언될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발생 비용의 최대 3배를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sup>159</sup>

##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1987년 자국 저작권법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Copyright Deliberation and Conciliation Committee)를 도입하여 저작권 분야에서의 ADR 경험이 30년이 넘습니다. 상기 위원회의 역할을 현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 하는 것입니다.<sup>160</sup> 저작권법 제114조 내지 제117조는 조정부에 대해 규정하고 조정부의 구성, 조정절차의 비밀유지를 위한 특정 비공개 요건 및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항소 절차를 명시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도 조정부가 있는 한편, 전문 분야(예: 소프트웨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이 IP 분쟁을 고려하는 한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Electronic Commerce Mediation Committee)가 B2B 소프트웨어 거래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분쟁을 고려합니다.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MCST))와 WIPO 센터의 협업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WIPO의 협업 체계는 2018년에 구축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WIPO 센터는 대한민국의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국제 분쟁의 조정을 촉진하도록 공동 분쟁 해결 절차를 수립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정부기관입니다. 2019년 5월 1일부터 그와 같은 분쟁의 당사자들은 조정제도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조정 지원 사업(Mediation Promotion Scheme)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1988년부터 저작권 분쟁을 위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13년부터 서울지방법원을 통해 법원 연계형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0년 8월 현재 총 2,230건의 조정 신청을 관장했으며 조정 화해 성립률은 34%에 이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조정은 저작권법 및 동 위원회의 조정규칙에 따라 관리됩니다. 2016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어문저작물, 소프트웨어, 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등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과 관련된 436건의 조정을 관장했습니다.

조정신청서는 해당 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제출할 수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 저작권법은 조정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소송 또는 중재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원용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한 당사자가 조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정인은 추후 법원소송에 제출할 수 있는 조정안(certificate)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를 수 있는 경우, 화해 조건은 조정부가 구속력 있고 당사자들에 의해 집행될 수 있는 조정안에 기재하며 법원소송에 의한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WIPO 센터에 분쟁의 조정 회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WIPO 센터는 분쟁의 WIPO 조정 회부가 용이하도록 서식을 마련하고 그러한 조정 회부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제공합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콘텐츠 이용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규정에 따라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조정 절차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시됩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로 이루어진 화해합의는 화해판결(consent judgment)과 동일한 효력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2011년에 출범한 이후 조정 신청 건수가 계속 증가했는데, 2016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비디오 게임, 영상저작물, 데이터 및 기타 콘텐츠 분야와 관련하여 26,171건의 조정신청(941건의 B2B 관련 조정신청서 포함)을 접수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WIPO 센터는 대한민국에서 콘텐츠 분쟁을 위한 ADR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 9월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업 계약에 따라 국제 분쟁의 경우에 당사자들은 분쟁을 WIPO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WIPO 센터는 그러한 조정 회부가 용이하도록 서식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제공합니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는 2019년 지식재산(분쟁해결)법(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Resolution) Act 2019)<sup>161</sup> 이후에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IP 분쟁들이 중재로 해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중재법(Arbitration Act) 및 국제중재법(International Arbitration Act)에 새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입법과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1987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of 1987)에 따라<sup>162</sup> 2009년부터 저작권 보호를 받는 모든 유형의 저작물에 적용되도록 저작권심판소(Copyright Tribunal)의 관할권이 확대되었습니다. 저작권심판소는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는 라이선싱 제도 및 저작권 보유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로열티 확인 등 저작권 라이선싱 관련 분쟁을 해결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sup>163</sup> 회부 건수가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저작권심판소 패널의 구성 및 구성원도 강화되었습니다.

####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IPOS))과 WIPO 센터의 협업

WIPO 센터는 ADR 제도를 통해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도록 싱가포르 지식재산청과 협업합니다. WIPO 조정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여 싱가포르의 모든 저작권 분쟁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집중관리단체와 저작권 라이선스를 요청할 수 있는 개인 간의 라이선싱 분쟁 등 저작권심판소(Copyright Tribunal)에서 진행되는 절차
- 집중관리단체와 그 회원 간의 분쟁 등 저작권심판소의 관할권에 해당되지 않아도 저작권 집중관리와 관련된 분쟁
- 저작물이 이용된 이후에 확인된 저작권 보유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보상 등 고아저작물(orphan work)과 관련된 분쟁
- 싱가포르 법원에 회부된 저작권 분쟁

#### 트리니다드토바고

##### 트리니다드토바고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rinidad and Tobago(TTIPO))과 WIPO 센터의 협업

트리니다드토바고 지식재산청과 WIPO의 협업 체계는 2018년에 양해각서가 체결되면서 구축되었습니다.<sup>164</sup> 트리니다드토바고 지식재산청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저작권 관련 분쟁을 포함한 IP 및 기술 분쟁에 대해 WIPO 센터의 ADR 제도(특히, 조정)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sup>165</sup>

#### 영국

영국의 주요 관련 법률은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입니다. 해당 법령에는 ADR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영국 저작권심판소(Copyright Tribunal)가 규정되어 있습니다.<sup>166</sup> 이 저작권심판소는 “저작권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집중관리단체)과 저작권 자료를 사업에 이용하는 사람들 간의 영국에서의 상업용 라이선싱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sup>167</sup>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심판소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ADR 절차의 활용을 권장하고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sup>168</sup>

또한 소송 진행과 관련한 일부 절차적 제도는 당사자들이 ADR 제도의 활용을 적극 고려하도록 권장합니다. 지식재산기업법원(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IPEC)은 고등법원(High Court of Justice)의 산업

및 재산법원(Business and Property Courts) 부문의 일부인 전문 IP 법원입니다.<sup>169</sup> 이 법원은 보다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개인 소송 당사자들과 중소기업들이 선호합니다. 지식재산기업법원 판사는 소송 초기 단계에서 해당 사건의 진행 관리를 위해 당사자들과 사건관리회의를 가집니다. 당사자들은 이 회의가 있기 전에 ADR 제도의 이용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sup>170</sup> 보다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 분야든) 법적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합당한 사유 없이 조정제에 대해 고려해보기를 거부하면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모든 법적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sup>171</sup>

#### 영국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IPO))과 WIPO 센터의 협업

영국 지식재산청은 상표,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 등 IP 관련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sup>172</sup> WIPO 센터는 영국의 IP 분쟁을 위한 ADR 제도 활용을 촉진하는 데 영국 지식재산청과 협업하며 조정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sup>173</sup>

#### 탄자니아

##### 탄자니아 저작권협회(Copyright Society of Tanzania(COSOTA))와 WIPO 센터의 협업

탄자니아에서는 저작권법(Copyright Act) 제47조제b항 및 제c항에 따라 탄자니아 저작권협회가 저작물, 제작물, 및 저작자, 실연자, 번역자, 녹음물 제작자, 방송사업자 및 발행자 협회의 등록원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저작권협회는 소유자의 권리를 찾아서 확인하고 알리며, 분쟁 또는 침해 발생 시 저작권 및 저작권점권의 소유 증거를 제공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이 때에 탄자니아 저작권협회는 저작권 및 저작권점권 분쟁 해결을 위해 ADR 서비스를 제공합니다.<sup>174</sup> 탄자니아 저작권협회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3건의 분쟁을 관장했습니다.

#### 미국

미국법전(United States Code) 제17편(Title 17)의 1976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of 1976)(개정)에서는 중재 또는 기타 ADR 형태에 대해 크게 적시하지 않습니다.<sup>175</sup> 그러나 미국 법원이 계약상에서 ADR 제도 이용을 선택한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해 왔습니다. 법원은 저작권 분쟁이 의무 중재(mandatory arbitration) 조항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 청구를 각하하고 당사자들이 사전에 합의한 중재 절차에 해당 분쟁을 회부하도록 했습니다.<sup>176</sup>

또한 1980년대 이후 법원에서는 저작권 분쟁이 저작권의 유효성에 관한 경우에도 중재에 적합한 대상이라고 인정해 왔는데, 이는 중재판정이 선례적 가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즉, 당사자간 효력만 있음).<sup>177</sup> 법원에서 촉진하는 ADR도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1998년 대체적 분쟁해결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법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모든 민사 소송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의 ADR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ADR 이용에 동의하고 ADR 절차가 비밀유지가 보장되는 경우, 제소된 분쟁은 화해에 이를 때까지 원래의 판사에게 계류 중인 상태로 남습니다. IP 전문성을 갖춘 민간 ADR 서비스 제공기관들도 있습니다.<sup>178</sup> 엔터테인먼트 관련 제작, 투자 및 배급 계약 관련 분쟁을 위한 독립영화 및 TV 연합(Independent Film and Television Alliance(IFTA))의 중재 서비스와 같이 개별 창작분야를 위한 특정 ADR 서비스 제공기관들도 있습니다.<sup>179</sup>

ADR 제도 활용을 촉진하는 일부 요인들, 즉 높은 효율성, 전문성 및 신속성과 함께 낮은 비용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여 최근에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내에 저작권 청구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가 설립되도록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손해배상액이 30,000달러(USD) 이하인 “소액사건(small claims)”을 다룹니다. 연방 저작권 소송의 대안으로서 이 신규 분쟁해결모델은 2019년 저작권침해 소액사건 대체적 분쟁해결법(Copyright Alternative in Small-Claims Enforcement Act of 2019, CASE 법)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법은 2020년 12월 27일에 시행되었습니다.<sup>180</sup> 이 새로운 “소액사건” 모델은 사진작가 등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된 데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전문가에게 적용됩니다. CASE 법에서는 물리적 증거 또는 기타 비진술증거(non-testimonial evidence)를 위해 대면 심리가 필요하지 않는 한 온라인 분쟁해결(ODR)이 우선시되는데, 출석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분쟁 당사자들은 저작권 청구위원회의 판정을 이용하지 않고 법원과 같이 다른 법정지에서 분쟁 심리를 진행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OSP) 관련 최근 동향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현재의 논쟁은 저작권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말에 수립된 소위 세이프 하버 모델 및 그 변형을 중심으로 규제가 발전했습니다. 상업용 인터넷 초창기에 일부 관할권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이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활동에 대해 책임을 졌습니다. 인터넷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초래되었다는 (인과 중심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이론들이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사용자 행동에 대한 추정적 인식(constructive knowledge)을 가졌다는 점이 성공적인 침해 청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책임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인터넷 발전을 저해했을 것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그 사용자 및 권리보유자의 이해관계 균형을 위해 “세이프 하버”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sup>181</sup> 미국의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998(DMCA))에 따라 수립된 이 모델은 이러한 점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 모델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분명합니다.

“하나는 인터넷 생태계가 사용자들의 활동으로 야기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으로 엄청난 경제적 영향이 초래될 위험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장벽이 낮고 도처에 만연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위협으로부터 저작자와 기타 권리보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입법자들은] 권리보유자들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해결할 신속한 사법외적(extra-judicial) 방법을 제공하는 한편,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에게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신 저작권에 대한 책임을 제한해 줄 수 있는, 소위 “세이프 하버” 시스템을 통해 그러한 이해관계의 균형을 이루었다. 따라서 일부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의 경우에 권리보유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신속하게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삭제하면 면책이 가능하다[즉, 통지 및 삭제(notice-and-takedown) 모델].”<sup>182</sup>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 생태계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은 인터넷 중개자에게 추가적인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그러한 균형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웹(web) 2.0 및 사용자 제작 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UGC)) 웹사이트의 부상, 온라인 스트리밍(online streaming) 웹사이트의 확산 및 대용량 파일의 무료 호스팅 등장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온라인 환경의 수많은 사례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sup>183</sup> 다운로드 속도도 상당히 증가하여 방대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및 미디어 스트리밍(media streaming)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비록 자동 알고리즘을 이용하지만 자신들이 호스팅하는 콘텐츠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이 본래 “세이프 하버” 모델에서 예상되었던 중립적이거나 방임적인(hands-off) 사업자들의 모습과 더 이상 유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부상한 방법이 일부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콘텐츠를 걸러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더 많은 조치를 취하도록 일련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이<sup>184</sup> 이러한 접근법에 해당합니다. 동 지침 제17조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의 주요 목적은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방대한 양의 저작권 보호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을 저장하고 이에 대한 접근권한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조직하고 촉진합니다.”<sup>185</sup> 제17조의 의무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연간 매출액 1,000만 유로 초과, 월평균 EU 국가 고유 방문자 수 500만 명 초과, 서비스 제공 기간 3년 초과 등 추가 기준이 적용됩니다.<sup>186</sup>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OCSSP)의 사용자가 콘텐츠를 무단으로 업로드하는 것은 공중전달권(communication to the public right)의 위반에 의한 해당 서비스 사업자 측의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자를 대신해 호스팅 콘텐츠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서

권한을 부여받거나, 아니면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특정 저작물이 이용되지 못하도록 높은 수준의 산업표준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권리보유자로부터 충분히 입증된 통지(sufficiently substantiated notice)를 받은 후 통지된 저작물을 자사 웹사이트에서 삭제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권한을 비활성화하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저작물의 향후 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sup>187</sup>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요건은 사용자 업로드를 철저히 스캔하여, 권리보유자가 지정한 저작권 보호 저작물이 포함된 콘텐츠를 (업로드 시에) 차단하거나 추후에 삭제하는 필터 또는 자동 콘텐츠 인식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으로 널리 이해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자동 필터링 기술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부정확한 권리 정보에 따른 삭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정당한 이용을 인식하지 못한 데 따른 삭제, 및 저작물을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한 데 따른 삭제”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sup>188</sup> 문제는 과잉 차단으로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가 불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sup>189</sup> 합법적인 콘텐츠가 차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함에 따라, 제17조제9항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자가 자신이 업로드한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의 삭제 또는 접근권한의 비활성화에 대한 분쟁의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신속한 문제제기 및 구제 시스템(effective and expeditious complaint and redress mechanism)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동 조항에서는 “회원국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소송 외 구제수단도 마련하도록” 명시합니다. 이는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이용 가능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ADR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세이프 하버” 제도와 관련해서 여기에도 맞춤형 ADR 해법의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허가 또는 면제하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반론통지(counter-notice)로써 통지 및 삭제 요청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콘텐츠 복구는 현행 법률요건에 따라 10~14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다음을 인정합니다.

“현행 제512조제g항제2호제C목(section 512(g)(2)(C))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반론통지 후에 콘텐츠가 복구되는 데 10 내지 14일이 소요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 모든 측의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소요 기간에 대해 너무 짧거나 너무 길다고 이의를 제기한다.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측은 자신들의 청구에 대한 판정을 받을 방법이 필요할 것인데, 이 방법을 통해 사용자는 삭제통지를 수신한 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권리보유자들은 반론통지에 대응하여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 저작권청이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연방법원에서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지만 연방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며 대개는 진행 속도가

느리다.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는 전체적인 통지 및 삭제 체제에서 온라인 침해 분쟁을 판정할 대체적인 방법을 채택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연방법원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되려면 그러한 대체적 방법은 비용이 저렴하고, 양측이 변호사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단하며, 또한 효율적이어야 한다.”<sup>190</sup>

이는 그러한 온라인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맞춤형 ADR 제도의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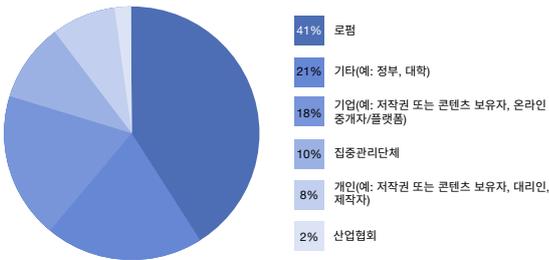
#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본 장은 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다루는 장으로, 전 세계 B2B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WIPO-MCST 설문조사 및 인터뷰의 결과가 종합되어 있습니다.

## 응답자 프로필

설문조사에서는 997건의 유효 응답을 입수했으며 74건의 인터뷰는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 가운데 41%는 로펌 소속이었고, 약 18%는 저작권 또는 콘텐츠 보유 기업, 온라인 중개자 또는 플랫폼 소속이었으며, 약 10%는 집중관리단체 소속이었습니다(도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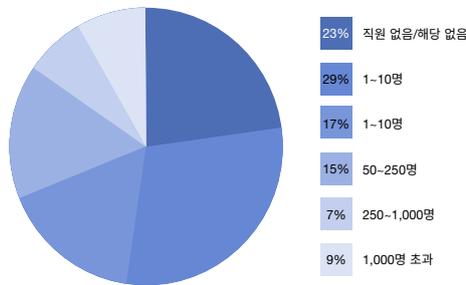
도3.1 응답자의 소속



결과는 전체 응답자 수(997명) 대비 구성 비율로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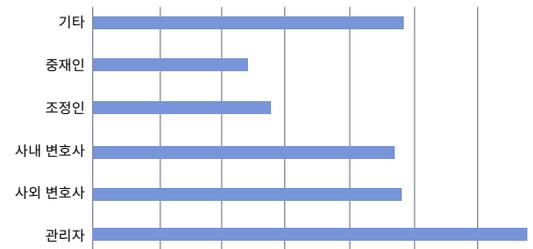
설문조사 응답자의 소속 기업 및 조직 가운데 61%가 중소기업이었습니다(직원 수 1~50명 46%, 직원 수 51~250명 15%). 응답자의 16%가 직원 수가 250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조직 소속이었으며(직원 수 250~1,000명 7%, 직원 수 1,000명 초과 9%), 23%는 직원이 없는 조직 소속이었습니다(23%)(도3.2).

도3.2 직원 수



응답자의 49%가 법률 전문가였습니다(사내외 변호사). 1/3이 넘는 응답자(34%)가 관리행정직에 있었습니다. 조정인과 중재인도 다수 포함되었습니다(응답자의 26%)(도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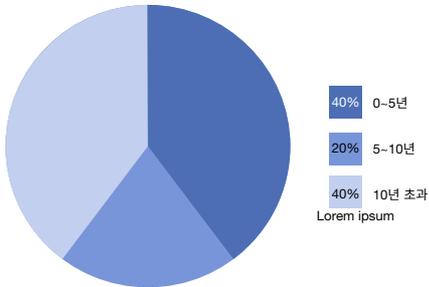
도3.3 응답자의 직위/역할



결과는 전체 응답자 수(997명) 대비 구성 비율로 나타냅니다. 응답자는 복수 응답이 가능했습니다.

경력 수준은 다양했는데, 응답자의 60%가 경력이 5년 이상이었고 40%는 경력이 5년 미만이었습니다(도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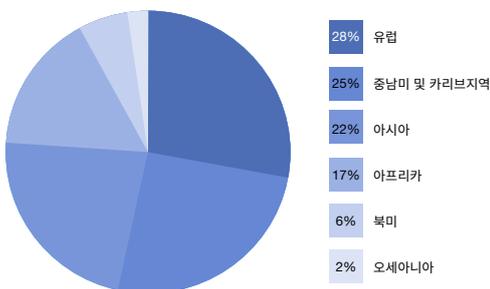
### 도3.4 응답자의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경력



결과는 전체 응답자 수(997명) 대비 구성 비율로 나타냅니다.

설문조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지역의 129개국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도3.5는 응답자가 주로 소재하는 지역과 국가를 나타냅니다. 설문조사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덴마크, 독일, 그리스, 일본, 멕시코, 폴란드, 대한민국, 싱가포르, 스페인, 영국, 미국 및 짐바브웨에 소재하는 응답자들과 이루어진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도3.5 응답자의 주요 소재지



#### 유럽 28%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북마케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연방,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 중남미 및 카리브지역 25%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볼리바르공화국)

#### 아시아 22%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중국, 조지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회교공화국, 이라크,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말레이시아, 미얀마, 네팔,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예멘

#### 아프리카 17%

알제리,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차드,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로코,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토고, 튀니지, 우간다,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 북미 6%

캐나다,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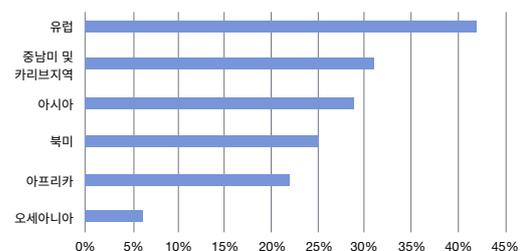
#### 오세아니아 2%

호주, 뉴질랜드, 사모아, 바누아투

지역별 결과는 전체 응답 수(984개) 대비 구성 비율로 나타냅니다. 국가는 해당 대표 지역 대비 구성 비율로 나타냅니다.

응답자의 주요 활동 지역은 도3.6에 나와 있습니다.

### 도3.6 응답자의 주요 활동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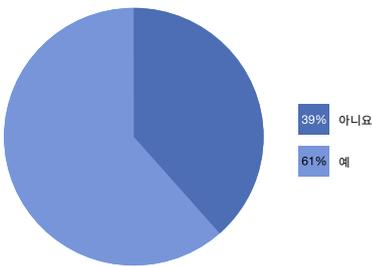


결과는 전체 응답자 수(997명) 대비 구성 비율로 나타냅니다. 응답자는 복수 응답이 가능했습니다.

## 분쟁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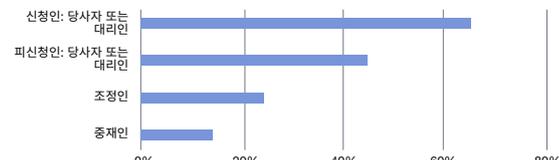
응답자의 약 61%가 최근 5년간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 연관되었습니다(도3.7). 이 중 65%가 넘는 응답자가 신청인이거나 신청인 측 대리인이었으며 45%가 피신청인이거나 피신청인 측 대리인이었습니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조정인(25%) 또는 중재인(15%)으로 이러한 분쟁에 연관되었습니다(도3.8).

### 도3.7 응답자와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의 연관성



결과는 전체 응답자 수(997명) 대비 구성 비율로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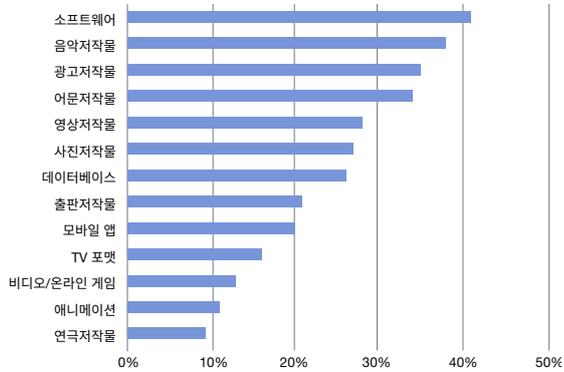
### 도3.8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서 응답자의 역할



결과는 전체 응답자 수(381명) 대비 구성 비율로 나타냅니다. 응답자는 복수 응답이 가능했습니다.

최근 5년간 응답자들이 연관된 분쟁의 대상은 다양했습니다(도3.9). 가장 많은 분쟁 유형들은 소프트웨어(41%), 음악저작물(38%), 광고(35%), 어문저작물(34%), 영상저작물(28%), 사진저작물(27%) 및 데이터베이스(26%)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57%가 비계약상 분쟁이었고 67%가 국내 분쟁이었습니다(도3.10 및 도3.11). 인터뷰 결과는 이러한 분쟁들의 대상과 관련하여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한편(표3.1), 가장 많이 반복되는 유형이 저작권 침해 및 라이선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 도3.9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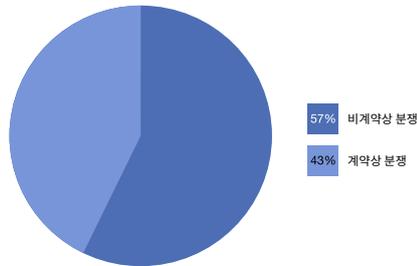


결과는 전체 응답자 수(382명) 대비 구성 비율로 나타냅니다. 응답자는 복수 응답이 가능했습니다.

### 표3.1 응답자의 주요 소재지별 상위 3개 분쟁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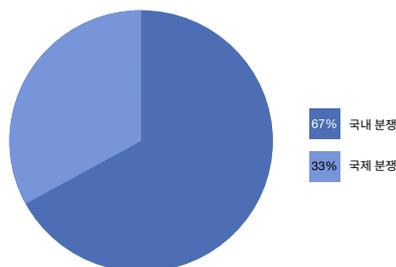
|   | 아프리카  | 아시아   | 유럽    | 중남미 및 카리브지역 | 북미           | 오세아니아        |
|---|-------|-------|-------|-------------|--------------|--------------|
| 1 | 음악저작물 |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 2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음악저작물 | 광고          | 소프트웨어        | 광고           |
| 3 | 광고    | 어문저작물 | 사진저작물 | 어문저작물       | 광고/<br>사진저작물 | 영상/<br>연극저작물 |

### 도3.10 비계약상 및 계약상 분쟁의 대략적인 비율



결과는 평균 비율로 나타냅니다.

### 도3.11 국내 및 국제 분쟁의 대략적인 비율



결과는 평균 비율로 나타냅니다.

### 최근 5년간 비계약상 및 계약상 분쟁 및 국내 및 국제 분쟁의 대략적인 비율에 대한 응답자 유형별 분석

표3.2는 도3.10 및 도3.11에 포함된 응답을 응답자 유형별로 나타냅니다. 이 표에 따르면 집중관리단체와 대기업은 다른 응답자 유형에 비해 특히 비계약상 분쟁과 국내 분쟁에 연관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3.2 응답자 유형별 분석

|        | 비계약상 | 계약상 | 국내  | 국제  |
|--------|------|-----|-----|-----|
| 집중관리단체 | 76%  | 24% | 77% | 23% |
| 대기업    | 70%  | 30% | 60% | 40% |
| 중소기업   | 54%  | 46% | 58% | 42% |
| 개인     | 51%  | 49% | 55% | 45% |

### 분쟁 대상에 대한 인터뷰 분석

당사자들 간에 상업적 관계가 이미 존재하는 계약상 분쟁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분쟁 유형이 확인되었습니다.

- 몇몇 응답자들이 언급한 소프트웨어 분쟁.<sup>191</sup> 이 분쟁은 상업적 관계가 중단되었을 때 발생하는 위탁 프로그래머에 의해 작성된 소프트웨어 코드의 소유자에 대한 문제, 기존의 코드가 상당히 개선되거나 업데이트되었을 때 발생하는 소유권에 대한 문제, 동일한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대해 상충하는 오픈 소스(open source)와 독점 라이선스(proprietary license) 간의 처리 문제,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발생하는 계약상 분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일부 인터뷰 응답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특정 분야인 비디오 게임 개발을 반복되는 분쟁 유형으로 지목했습니다.<sup>192</sup>
- 전자책 및 기타 새로운 디지털 형식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관련된 발행자와 저작자 간의 분쟁. 이러한 분쟁은, 간행물이 새로운 독자들에게 보다 널리 유통되는 새로운 디지털 배포 모델, 또는 인쇄 매체의 백 카탈로그(back catalogue)의 디지털화와 관련되는데, 여기에서 저작자들은 새로운 수익원에 대한 몫을 요구하게 됩니다.<sup>193</sup>
- 사용보고서의 데이터(예: 저작권 보호 저작물의 시청, 청취 또는 다운로드 횟수)의 정확성과 관련된 쟁점.<sup>194</sup>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및 플랫폼은 정확한 사용보고서를 생성하기 위해 콘텐츠의 소비 횟수를 산정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 동영상을 튄 것을 시청 횟수나 시청 시간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sup>195</sup>
- 디지털 상에서 소비되는 콘텐츠의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 이러한 분쟁은 저작권에 공식적인 소유권 등록 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심각합니다. 음악의 전체 카탈로그(entire catalogue)가 양도될 때 라이선시(licensee, 실시권자)는 소유권 변경을 항상 통보받는 것은 아니며 이전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

모두로부터 사용료 지급에 대해 연락받을 수 있습니다.<sup>196</sup> 온라인 플랫폼도 때로는 서로 다른 관할권의 권리보유자들로부터 상충하는 사용료 지급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사용료 지급 대상이 불명확합니다.<sup>197</sup>

- 국내외 및 온라인 상의 이용에 따른 수익을 포함하여, 집중관리단체가 징수하였으나 음악가 등 콘텐츠 저작자에게 적절히 배분되지 않은 라이선싱 수익에 관한 분쟁 등 집중관리단체와 관련된 분쟁.<sup>198</sup> 예상되는 바와 같이, 분쟁은 저작권 보호 저작물의 이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라이선스 사용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sup>199</sup> 음악 또는 녹음물의 권리보유자를 대리하는 집중관리단체와 소셜미디어 플랫폼 간의 콘텐츠 재생 허가를 위한 협상도 언급되었습니다. 특정한 콘텐츠 이용이 기존 라이선스 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분쟁도 거론되었습니다.<sup>200</sup> 끝으로, 미디어에 대한 부과금에서 나온 수익금이 다양한 범주의 권리보유자, 즉 제작자, 작곡가, 영화감독, 작가, 음악 실연자 및 배우에게 배분되어야 하는 경우 등 수익배분과 관련하여 집중관리단체들 간에 일어나는 분쟁이 있었습니다.<sup>201</sup>
- 광범위한 라이선싱 분쟁. 예로는 하나의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위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른 서비스에 그 콘텐츠를 배포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sup>202</sup> 짧은 영상(예: 짧은 스포츠 경기 영상)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고자 하는데 허가받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받는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자,<sup>203</sup> 저작권 보호를 받는 미디어를 비디오 게임에 이용하고자 협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개발자가 있습니다.<sup>204</sup> 분쟁은 예전 계약을 새로운 이용에 맞추어 바꾸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sup>205</sup> 여기에는 디지털 시대 이전에 양도되거나 라이선스를 받은 콘텐츠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로열티 공유 의무의 시효 및 범위에 대한 상충이 포함됩니다. 하위 라이선시(sub-licensee, 하위 실시권자)가 포함된 확장된 계약 사슬(longer contract chain)의 경우는 더욱 복잡합니다.<sup>206</sup>

비계약상 분쟁은 허가받지 않은 제3자에 의해 초래되는 다양한 유형의 권리 침해와 주로 관련이 있었습니다. 저작물의 복제(저작물의 복제물 제작), 공중예외의 배포 또는 전달 및 온라인 이용 제공 등과 관련한 권리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 사례들이 언급되었습니다.

- 웹페이지의 레이아웃 및 콘텐츠를 복제하는 제3자(일부 응답자가 언급)<sup>207</sup>
- 저작권 트롤(copyright troll) 또는 저작권 기회주의자(copyright opportunist). 이들은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상업적으로 개발하려고 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이고 부당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저작권을 집행하는 당사자들입니다.<sup>208</sup> 이들은 갈수록 정교해지는 이미지 또는 멀티미디어 검색 기술에 의존합니다. 이들은 일치대상(match)을 발견하면(예를 들어, 이미지 검색을 통해 블로그 게시물에서 일치하는 사진을

검색하면), 저작권 침해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수수료를 요구하는 편지를 대량으로 발송합니다. 때로는 이들이 실제 관련 콘텐츠의 권리보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불명확합니다.<sup>209</sup>

-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해당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통지 및 삭제” 기능 이용.<sup>210</sup> 저작권 침해 규모, 저작권을 침해한 당사자들의 의명성 및 저작권 침해의 비교적 낮은 가치를 고려할 때, 플랫폼 자체 대응 메커니즘은 (예를 들면) 중재와는 달리 심지어 상업적 침해자에 대해서도 보다 적합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에 대한 현행 “세이프 하버” 모델이 최근 들어 바뀌었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에 따라 플랫폼들이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됩니다.<sup>211</sup>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제17조에 따라 수립된 새로운 제도, 그리고 미국 내 정책토론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이 자동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용 가능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새로운 의무규정이 점점 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sup>212</sup> 현재 일부 대규모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시청각 콘텐츠의 업로드를 자동으로 스캔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도입했지만, 입법은 적어도 대규모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이 필터링 후 사람이 검토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사용자들은 자신의 업로드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청구가 무효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영상이 자동 필터링 기술에 의해 잘못 식별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사람의 검토 및/또는 ADR 제도를 통해 해당 저작권 침해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제17조제9항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중립적인 전문가결정으로 그러한 분쟁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주장 제기 시, 이에 대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 주장. 인터뷰 응답자들은, 장애인을 위해 저작물의 온라인 이용을 제공하는 경우와, 특정한 문화적 이용이 기술적으로는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나 청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예: 아이들이 시청각 플랫폼상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경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용 자료의 온라인 이용이 급증한 경우와 관련하여 저작권 제한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sup>213</sup>

대다수의 인터뷰 응답자들이 최근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이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응답자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 다변화 확대 및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들을 언급했습니다.<sup>214</sup> 일부 응답자들은 새로운 시장에서 이용되는 새로운 디지털 형식 및 여기에서 창조되는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한 것에 주목했는데,<sup>215</sup> 여기에는 전자책,<sup>216</sup> 자가출판(self-published) 또는 자가배포(self-distributed) 음악,<sup>217</sup> 인터넷 라디오<sup>218</sup> 및 웹툰 등이 있습니다.<sup>219</sup>

최근 중국 및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에서 음악, 영화, TV 및 기타 콘텐츠의 포괄적인 디지털화(comprehensive digitalization)로 디지털 저작권 분쟁이 급증했습니다.<sup>220</sup> 또한 이러한 분쟁은 기업들이 제작하고 사용자가 소비하는 디지털 미디어용 새 콘텐츠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자료를 인터넷상에 배포하는 것이 비교적 쉬워지면서 늘어났습니다.<sup>221</sup> 일부 응답자들은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의 가치와 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에 대한 (기업 및 예술가를 포함한) 저작권 보유자들의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sup>222</sup> 이러한 인식 제고로 법원 또는 ADR 제도에 회부되는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sup>223</sup>

한 중국 로펌 대리인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중국의 디지털 저작권 분쟁이 지난 몇 년 동안 급증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인터넷 법원이 세 곳, 즉 베이징, 항저우 및 광저우에 있습니다. 베이징 인터넷 법원(Beijing Internet Court)을 예로 들면, 여기에 등록되는 사건이 매년 10,000건이 넘는데, 그중 과반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 건입니다.”<sup>224</sup>

또한 한 대한민국 기업 대리인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디지털 저작권 관련 분쟁은] ... 분명 증가했습니다. ... ‘오버더톱(over the top(OTT))’ [미디어 콘텐츠의 실시간 스트리밍]과 같은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라인에서 콘텐츠 접근이 보다 쉬워지고 빨라졌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콘텐츠 접근이 쉬워지면서 외국 기업들의 저작권 침해 청구가 늘어났습니다.”<sup>225</sup>

#### WIPO 센터에 회부된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의 사례

##### 시청각저작물

- 애니메이션 영화의 공동 제작을 위한 계약과 관련하여 중남미 제작자와 유럽의 두 디지털 효과 전문 기업 간에 발생한 분쟁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스포츠 대회의 단독 중계를 위한 계약과 관련하여 TV 배급사와 국제스포츠연맹 간에 발생한 분쟁
- TV 리얼리티 쇼의 파일럿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계약과 관련하여 유럽 제작자와 두 아시아 제작자 간에 발생한 분쟁
- 시청각저작물에 대해 지급되어야 하는 로열티 금액과 관련하여 해당 저작물을 제작한 저작자와 다수의 아시아 스트리밍 기업 간에 발생한 분쟁
- 웹사이트상에서 영화와 TV 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화제작자협회와 웹사이트 운영자 간에 발생한 저작권 침해 분쟁

- 스포츠 대회 생중계에 사용될 디지털 효과에 대해 제기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작자와 대회 주최자 간에 발생한 분쟁
- 중남미 제작자들이 자국 관할권에서 개발한 TV 쇼 프로그램에 대해 제기된 복제 주장과 관련하여 두 중남미 제작자와 두 유럽 엔터테인먼트 기업 간에 발생한 분쟁

#### 모바일 앱

- 모바일 앱에 대한 라이선싱 계약과 관련하여 중동 신생기업과 미국 신생기업 간에 발생한 분쟁
- 모바일 앱용 저작권 보호 아이콘의 무단 이용 및 배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 음악저작물

- TV를 통한 음악저작물의 공중전달에 대한 로열티 배분과 관련하여 집중관리단체와 음악출판협회들 간에 발생한 분쟁
- 다국적 엔터테인먼트 기업에서 제작하고 오버더톱(OTT) 플랫폼을 통해 방송된 TV 시리즈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에 대해 해당 저작자에게 미지급된 로열티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 저작권 침해에 따른 음악저작물의 삭제와 관련하여 해당 저작자와 온라인 플랫폼 간에 발생한 분쟁

#### 사진저작물

- 허가 또는 사용료 지급 없이 인터넷상에 공개된 사진과 관련하여 유럽 사진작가와 아시아 미디어 기업 간에 발생한 분쟁
- 웹사이트에서의 사진의 무단 이용에 대한 로열티 지급과 관련하여 유럽 기업과 (유럽 미디어 그룹을 대신해서) 저작권 집행 서비스 제공 기업 간에 발생한 분쟁

#### 소셜미디어 플랫폼 분쟁

-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웹사이트 콘텐츠의 무단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분쟁
- 소셜미디어 계정의 만화 캐릭터를 복제한 데 대한 저작권 침해 분쟁

#### 소프트웨어 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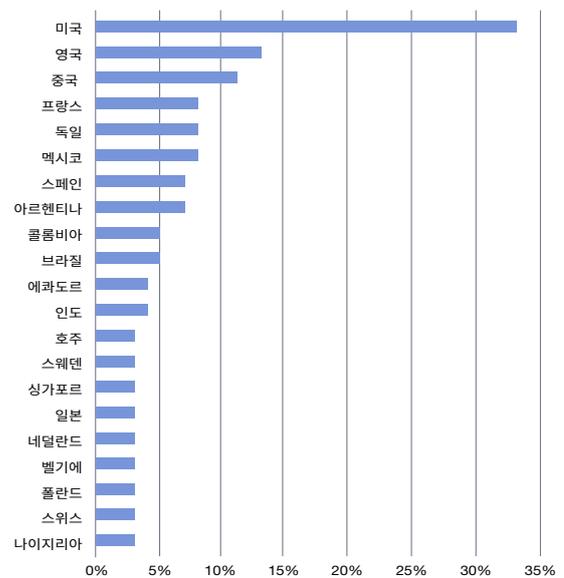
- 아시아 국가에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계약 범위와 관련하여 유럽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아시아 기업 간에 발생한 분쟁
- 보안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라이선싱 계약과 관련하여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유럽 기업 간에 발생한 분쟁

#### 비디오/온라인 게임

- 온라인 플랫폼상에서의 e스포츠(e-sports) 경기에 대한 저작권 침해, 로열티 지급 및 스트리밍 차단과 관련하여 비디오 게임 기업과 개발자 간에 발생한 분쟁
- 컴퓨터 게임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 위반 주장과 관련된 분쟁
- 온라인 시청각저작물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과 관련하여 온라인 게임 캐릭터 저작자와 기타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

설문조사 응답자의 분쟁 대부분이 발생한 국가는 미국, 영국, 중국, 멕시코, 독일, 프랑스, 아르헨티나 및 스페인이었습니다(도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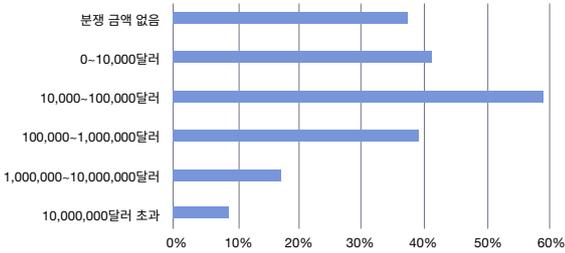
도3.12 응답자의 분쟁이 발생한 상위 20개국



결과는 전체 응답자 수(369명) 대비 구성 비율로 나타냅니다. 응답자는 복수 응답이 가능했습니다.

청구 또는 분쟁의 금액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 연관된 응답자의 59%는 해당 분쟁이 1만~10만 달러(USD)에 해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10만~100만 달러와 같이 금액이 높은 분쟁(39%)과 함께 0~1만 달러 분쟁(41%)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분쟁에 연관된 응답자는 비교적 적었습니다(100만~1,000만 달러 17%, 1,000만 달러 초과 8%). 상당한 비율의 응답자들이 금전적 가치와 무관한 분쟁에 연관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합니다(36%)(도3.13).

도3.13 응답자가 연관된 분쟁의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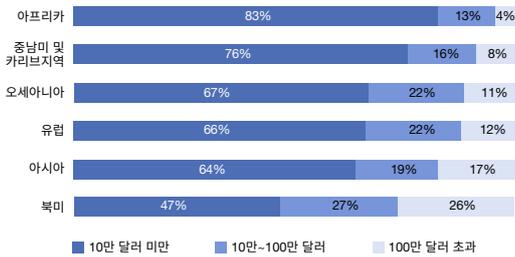


결과는 전체 응답자 수(303명) 대비 구성 비율로 나타냅니다. 응답자는 복수 응답이 가능했습니다.

**응답자의 주요 소재지 및 유형별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의 분쟁 금액**

도3.14는 도3.13의 응답을 응답자의 주요 소재지 별로 나타냅니다. 이 도표에 따르면 비교적 큰 분쟁 금액은 북미, 아시아 및 유럽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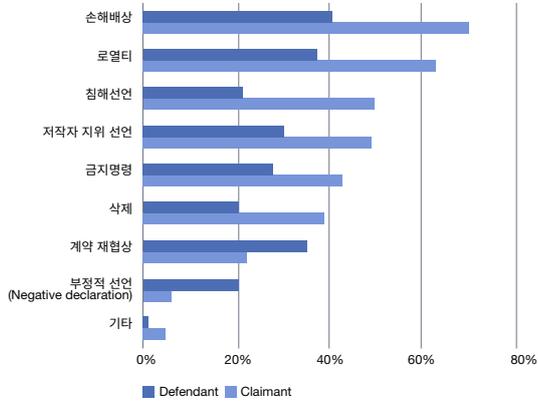
도3.14



또한 WIPO-MCST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연관 분쟁의 41%와 중소기업 연관 분쟁의 40%가 분쟁 금액이 1만 달러(USD) 미만이었습니다. 대기업 연관 분쟁의 15%와 중소기업 연관 분쟁의 10%만 분쟁 금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손해배상은 최근 5년간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 연관된 신청인(70%)과 피신청인(41%)이 가장 많이 청구한 구제 형태였습니다. 로열티도 신청인(63%)과 피신청인(37%) 모두가 많이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인의 약 49%가 침해선언을 청구하고, 피신청인의 35%는 계약 재협상을 청구했습니다(도3.15).

도3.15 분쟁에서 많이 청구된 구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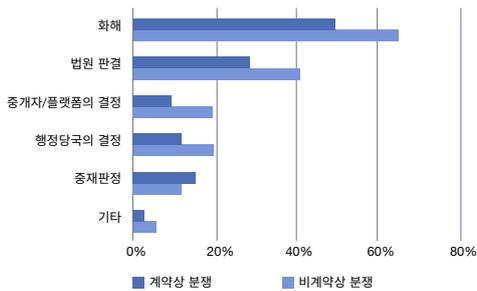


결과는 전체 신청인(361명) 및 피신청인(194명) 응답자 수 대비 구성 비율로 나타냅니다. 응답자는 복수 응답이 가능했습니다.

**분쟁 결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해는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의 결과로 계약상(48%) 및 비계약상(65%) 분쟁 모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도3.16).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결과는 법원 판결이었으며, 이는 계약상 분쟁(27%)보다 비계약상 분쟁(41%)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분쟁 결과로 중재판정은 계약상 분쟁(15%)과 비계약상 분쟁(12%)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도3.16 분쟁에서 많이 나타난 결과



결과는 전체 응답자 수(372명) 대비 구성 비율로 나타냅니다. 응답자는 복수 응답이 가능했습니다.

**WIPO의 조정 및 중재에 따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사건의 화해 성립 사례**

*TV 저작권 로열티 분쟁에 대한 WIPO 조정*

유럽 집중관리단체들과 여러 디지털 케이블 사업자(digital cable operator)들이, 케이블 사업자들이 기존의 공통 사용료(common tariff)에 근거하여 국내외 TV 방송국에 제공한 보상과 관련한 분쟁에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사후합의계약에 서명함으로써 분쟁을 WIPO

조정 에 회부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사후합의계약에서 당사자들은, 사용료 및 국내외 저작권법에 대한 기술적 논의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그들이 원하는 저작권 전문가와 WIPO 조정인을 지명했습니다. 당사자들은 4개월 이내에 화해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TV 포맷 분쟁에 대한 WIPO 조정

한 퀴즈 쇼의 TV 포맷 복제와 관련하여 영국 제작사와 독일 제작사 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TV 포맷을 만들고 개발한 영국 제작사는 자사의 쇼와 독일 제작사의 또 다른 게임 쇼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들은 공방을 벌인 끝에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WIPO 조정규칙(WIPO Mediation Rules for Film and Media)에 따라 분쟁을 조정 에 회부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조정인의 입회 하에 1일 회의를 진행한 후 분쟁을 해결하여, 양 제작사 간의 협업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 소프트웨어 분쟁에 대한 WIPO 중재

한 아시아 기업과 유럽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WIPO 중재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라이선싱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아시아 기업이 WIPO 중재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양 당사자는 중재 과정에서 임시적 처분(interim measures)을 요청했습니다. 중재인의 제안과 당사자들의 동의로, 해당 사건에서 추가 변론을 검토한 중재인은 화해회의(conciliation conference)를 소집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추가 논의 끝에 분쟁 해결에 이르렀습니다. 유럽 개발자는 아시아 기업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는 데 동의했고, 이에 아시아 기업은 유럽 개발자에게 관련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 사용된 분쟁해결수단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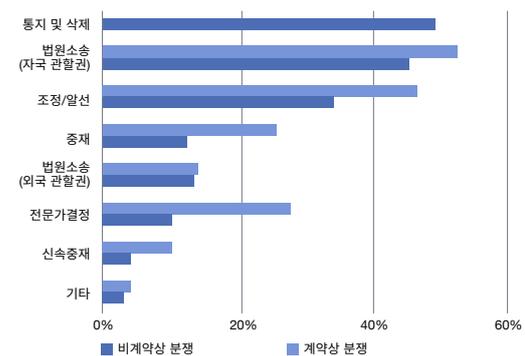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비계약상 분쟁을 해결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된 분쟁해결수단은<sup>226</sup> 통지 및 삭제였습니다(48%).

한 인터뷰 응답자도 인터넷 사업자들이 그들의 서비스 사용자들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very specific)”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감지할 시스템을 설치하며, 그러한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좋은 일(good thing)” 이라고 언급했습니다.<sup>227</sup> 그러나 또 다른 인터뷰 응답자는 플랫폼의 통지 및 삭제 조치가 제대로 규제되지 않으며 “결국 해당 플랫폼의 분별력(good sense)에 의존하게 된다” 고 설명했습니다.<sup>228</sup>

WIPO-MCST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자국 관할권 내 법원소송은 계약상 분쟁(51%)과 비계약상 분쟁(44%)을 해결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된

분쟁해결수단이었습니다. 반면에, 비계약상 분쟁에서는 통지 및 삭제가 가장 많이 사용된 분쟁해결수단이었습니다(48%). 조정 및 알선(conciliation)도 계약상 분쟁(45%)과 비계약상 분쟁(33%)에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중재는 비계약상 분쟁(12%)보다 계약상 분쟁(25%)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도3.17).

#### 도3.17 분쟁 해결에 사용된 분쟁해결수단



결과는 전체 응답자 수(318명) 대비 구성 비율로 나타냅니다. 응답자는 복수 응답이 가능했습니다.

인터뷰에 결과,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수단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거나 이해관계자들이 그러한 수단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sup>229</sup>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중재와 조정의 활용이 기관 및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 보입니다. 집중관리단체는 문제 및 분쟁 해결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 인터뷰 응답자가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저희 집중관리단체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단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정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지는 않지만 중재 서비스는 이용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른 집중관리단체와 직접 협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권리보유자는 저희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법원에 회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사안을 해결하는 데 조정이나 중재를 이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sup>230</sup>

일부 관할권에서는 B2B 저작권 사건에서 소송의 대안으로 중재를 이용한 특정 경험이 있었습니다.

“분쟁은 상업적 맥락에서 발생할 때 수동으로 처리되고 증거에 근거하게 됩니다. 피신청인은 소유권 입증 을 요청한 후에 비용을 지급합니다. 대다수의 사건이 이런 식으로 해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를 이용해 보고 양 당사자가 중재 결과를 받아들일 것을 기대합니다. 영국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많습니다.”<sup>231</sup>

게다가 소송이 당사자의 권리를 집행할 최선의 전략으로 간주되는 보다 변론주의적인(adversarial) 문화에서는 소송이 선호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조정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보다 변론주의적인 절차를 선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들 중 하나가 우위(strong position)에 있지 못해도 상대방이 잠재적인 비용 때문에 화해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sup>232</sup>

**분쟁을 해결하는 데 사용된 응답자 유형별 상위 3개 분쟁해결수단**

표3.3과 표3.4는 조정/알선이 계약상 분쟁과 비계약상 분쟁 모두에서 집중관리단체와 개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쟁해결수단이며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유형의 응답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분쟁해결수단임을 나타냅니다.

통지 및 삭제는 특히 비계약상 분쟁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선호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계약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자국 관할권의 법원소송을 주로 이용합니다.

**표3.3 비계약상 분쟁**

| 집중관리단체        | 대기업           | 중소기업          | 개인      |
|---------------|---------------|---------------|---------|
| 조정/알선         | 통지 및 삭제       | 통지 및 삭제       | 조정/알선   |
| 자국 관할권 내 법원소송 | 외국 관할권 내 법원소송 | 조정/알선         | 통지 및 삭제 |
| 통지 및 삭제       | 자국 관할권 내 법원소송 | 자국 관할권 내 법원소송 | 전문가결정   |

**표3.4 계약상 분쟁**

| 집중관리단체        | 대기업           | 중소기업          | 개인            |
|---------------|---------------|---------------|---------------|
| 조정/알선         | 자국 관할권 내 법원소송 | 자국 관할권 내 법원소송 | 조정/알선         |
| 자국 관할권 내 법원소송 | 조정/알선         | 조정/알선         | 자국 관할권 내 법원소송 |
| 전문가결정         | 중재            | 전문가결정         | 중재/신속중재       |

**중재로 이어지는 WIPO 조정**

WIPO 센터에 회부된 조정, 중재 및 신속중재 사건의 약 30%에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WIPO 조정이 WIPO 중재 또는 신속중재로 이어진다는 내용을 담은 에스컬레이션 조항(escalation clause)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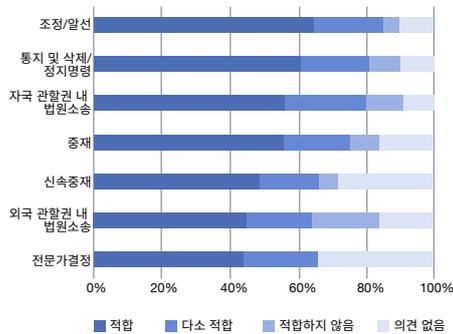
**신속중재로 이어지는 WIPO 조정의 사례**

한 출판사가 새로운 웹 프레젠스(web presence) 개발을 위해 한 소프트웨어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했으며, 여기에는 분쟁이 발생하면 WIPO 조정에 회부하고 60일 이내에 화해에 이를 수 없으면 WIPO 신속중재에 회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출판사는 개발자가 제공한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해 비용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출판사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화해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후 신속중재 절차에서 다루어진 사안들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이 종료된 후에 출판사는 신속중재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당사자들이 동의한 바에 따라, WIPO 센터는 단독 중재인으로 현직 판사를 선임했습니다. 1일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사건 해결 의사를 표명하고 중재인에게 화해제안서(settlement proposal)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중재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중재인에게 화해중재판정(consent award)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응답자들의 인식 및 우선순위**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수단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였는데, 모든 분쟁해결수단들이 주로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각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응답자들의 경험에 따라, 조정, 통지 및 삭제, 중재 및 자국 관할권 내 법원소송이 적합한 분쟁해결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56~64%). 외국 관할권 내 법원소송은 주로 적합한 분쟁해결수단으로 인식된 한편,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다른 분쟁해결수단들에 비해 가장 높았습니다(20%). 전문가결정은 의견 없음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분쟁해결수단이었습니다(35%)(도3.18). 이러한 결과는 (제2장의 ADR 활용에 관한 핵심 고려사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당사자들이 자국 관할권에서 법적 조치를 모색할 때 주로 인식하는 “자국법원의 이점”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점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외국 관할권에서 진행되는 분쟁 소송은 다른 분쟁해결수단에 비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도3.18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



결과는 범주별 전체 응답 수(310~328개) 대비 구성 비율로 나타냈습니다. 응답자는 복수 응답이 가능했습니다.

###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사용된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

대부분의 응답자들(로펌의 80%, 개인의 79%, 집중관리단체의 77% 및 기업의 57%)은 조정/알선이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어도 적합한 것으로 인식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높은 비율의 로펌(58%), 집중관리단체(53%), 기업(41%) 및 개인(21%)이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신속중재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의견 없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는 신속중재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된 것일 수 있습니다.

높은 비율의 응답자들(개인의 64%, 집중관리단체의 57%, 기업의 55% 및 로펌의 53%)이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전문가결정이 적어도 다소 적합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응답자들(로펌의 47%, 기업의 45%, 집중관리단체의 43% 및 개인의 36%)이 전문가결정의 적합성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결과도 해당 ADR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응답자들은 국내 분쟁이든 국제 분쟁이든 상관없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가 중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도3.19). 분쟁 해결의 비용과 속도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최우선 순위였는데, 국제 분쟁의 경우에는 응답의 55~56%, 국내 분쟁의 경우에는 응답의 74%로 나타났습니다. 비용과 속도는 인터뷰에서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강조되었습니다.<sup>23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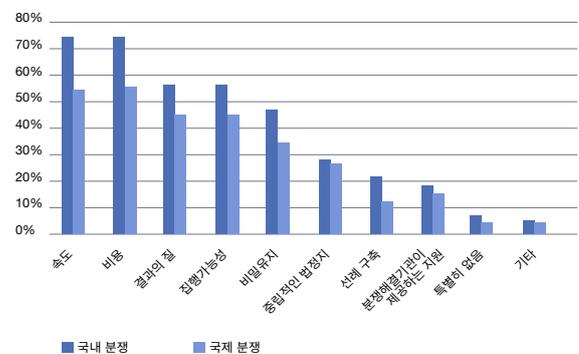
비용과 속도에 이어,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 해결 시의 다음 우선순위는 결과의 질과 집행가능성이었는데, 국제 분쟁과 연관된 응답자의 경우에는 45%, 국내 분쟁과 연관된 응답자의 경우에는 57%로 나타났습니다. 비밀유지도 특히 국내 분쟁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데, 응답자의 47%가 이를 우선순위로 뽑았습니다(국제 분쟁의 경우 34%). 국내 분쟁과 국제 분쟁 간에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러한 분쟁과 연관된 기업의 경우에 자국 내 평판의 훼손 우려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례 구축은 국제 분쟁(12%)보다 국내 분쟁(22%)에서 우선순위로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중립적인 법정지는 국내 분쟁과 국제 분쟁에서 우선순위로 각각 26%와 28%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인터뷰에서 확인된 또 다른 우선순위는 디지털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는 데 요구되는 기술적 전문성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판사들이 기타 상사 사건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결국 법원에 회부되지만 판사들은 이를 다룰 지식이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전문 IP 법원도 이러한 사건의 배경이 되는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해 최신 지식이나 특별한 전문성이 없었습니다. 한 인터뷰 응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법원소송과 비교했을 때 ADR 제도가 갖는 장점은 전문적인 중립인에 있습니다. 전문 IP 법원의 판사들이 IP 분야의 전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 디지털 환경의 새로운 동향에 항상 정통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전문가 증인에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중재나 조정에서 중재인이나 조정인이 디지털 분야의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은 커다란 매력입니다.”<sup>234</sup>

### 도3.19 응답자의 분쟁 해결 시 우선순위



결과는 전체 응답자 수(321명) 대비 구성 비율로 나타냈습니다. 응답자는 복수 응답이 가능했습니다.

###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과 관련된 분쟁의 WIPO 조정 사례

두 유럽 기업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공동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영화 제작이 완료된 후, 계약상 예산 책임과 그에 따른 비용지급 분담과 관련하여 두 기업 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영화 제작 계약에는 분쟁해결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당사자들은 결국 사후합의계약을 통해 WIPO 조정에 분쟁을 회부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들은 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했으며, 영화 제작 협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조정인을 선임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조정이 개시된 지 4주 후에 1일 조정 회의가 열렸으며 당사자들은 조정인의 도움으로 이 회의에서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 분쟁 해결에 사용된 도구

응답자들이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도구는<sup>235</sup> 문서로만 진행되는 절차였으며(64%), 화상회의를 통한 심리(32%)와 전자적 사건 신청 및 관리 도구(29%)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응답자의 25%는 분쟁 해결 시에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을 사용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이나 문서에 나온 최선의 관행들은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맞춤형 분쟁해결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몇 가지 공통된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상사분쟁의 경우에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CISAC))에서 개발한 것과 유사한 모범사례를 구축하는 것과,<sup>236</sup> 국제 분쟁의 경우에 국가 차원의 전문 조정 서비스 및 법원을 설립하고 WIPO의 ADR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sup>237</sup>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차질이 빚어진 것을 고려해서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법원의 설립을 지지했습니다.<sup>238</sup> 온라인 생태계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분쟁해결수단의 균열을 막고 일관성과 통합을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해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sup>239</sup> 그와 동시에, 각 사건에 적합한 실질적, 절차적인 혁신이 가능할 정도로 유연한 ADR 제도를 구축할 것을 권장하는 제안도 있었습니다.<sup>240</sup>

일부 인터뷰 응답자들은 법원소송 전에 전문적 단계(specialized stage)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응답하고,<sup>241</sup> 중재나 조정을 통한 디지털 저작권 분쟁 해결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다음 사례와 같이 현행 ADR 절차의 개선 가능 영역을 언급했습니다.

“중재가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 소기업에게는 문턱이 너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sup>242</sup>

“실제로 확실하게 분쟁을 해결할 분쟁해결수단의 효과성 또는 유용성이 잠재적 사용자들에게는 여러 결정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점에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기를 희망합니다. ... 또한, ADR 절차의 낮은 예측 가능성도 잠재적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선택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중립인 인력풀, 익명으로 처리된 사건의 사례 등 관련 정보의 양과 가시성이 개선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sup>243</sup>

“ADR 절차에 참여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신기술, 보다 구체적으로는 웹캐스팅(web-casting)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ADR 서비스에 참여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력풀이 확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sup>244</sup>

ADR 제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 효율성, 비용, 속도 및 집행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sup>245</sup>

끝으로, 인터뷰 응답자들은 이러한 분쟁에 연관되어 있는 상업적 당사자들의 ADR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업적 당사자들이 ADR 제도를 활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홍보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ADR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인력풀도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저작권 및 콘텐츠 저작자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고 ADR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에 대한 최신 정보를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sup>246</sup>

### 모바일 앱 분쟁의 WIPO 조정 사례

중동 신생기업과 미국 신생기업이 모바일 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WIPO 중재로 이어지는 WIPO 조정에 대해 언급하는 분쟁해결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허가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특히 그러한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유료인지 아니면 무료인지에 대해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조정 세션은 전적으로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조정인의 선임 후 2개월 이내에 조정인의 도움으로 화해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사자들은 협업을 지속하는 데 대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 소프트웨어 분쟁의 WIPO 신속중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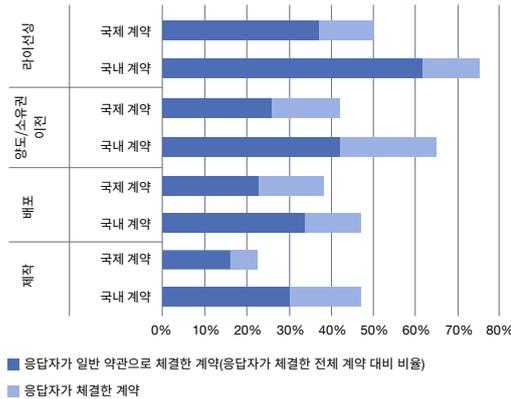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유럽 기업이 미국 개발자의 소프트웨어의 인터넷 배포를 위해 유럽 기업의 보안 소프트웨어 사용을 허가하는 온라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라이선스 계약에는 WIPO 신속중재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지 몇 년 후에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제3자가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유럽 기업의 보안 소프트웨어가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위반에 대한 상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신속중재신청서를 WIPO 센터에 제출했습니다. 당사자들은 WIPO 센터에서 제안한 후보자들 중 한 명을 단독 중재인으로 선정했으며 증인신문을 포함한 심리를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심리 후 진술 후에 중재인은 최종판정을 내렸습니다.

##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계약

설문조사에서는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계약에 대한 응답자들의 경험도 살펴보았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총 64%가 그러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국내 계약(75%)과 국제 계약(50%) 모두에서 주로 라이선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유형은 양도 또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 국내 계약에서는 제작 관련 계약과

배포 관련 계약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으며(각각 47%), 국제 계약에서는 배포 관련 계약(37%)이 제작 관련 계약(22%)보다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5년간 일반 약관으로 체결된 계약에서도 나타났습니다(도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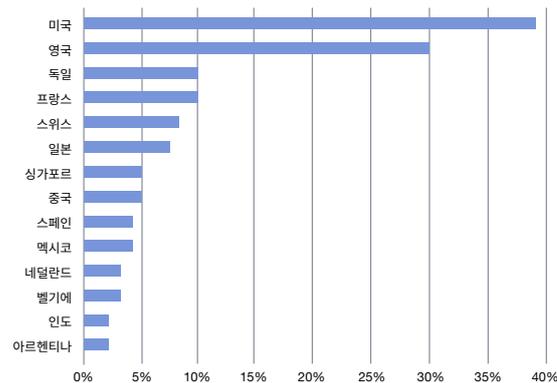
도3.20 일반 약관으로 체결된 계약의 유형 및 비율



결과는 전체 응답자 수(316명) 대비 구성 비율로 나타냅니다. 응답자는 복수 응답이 가능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계약에 인용된 준거법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및 일본의 법령이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도3.21). 미국 내에서는 캘리포니아주(38%), 뉴욕주(36%) 및 델라웨어주(10%)의 법령이 가장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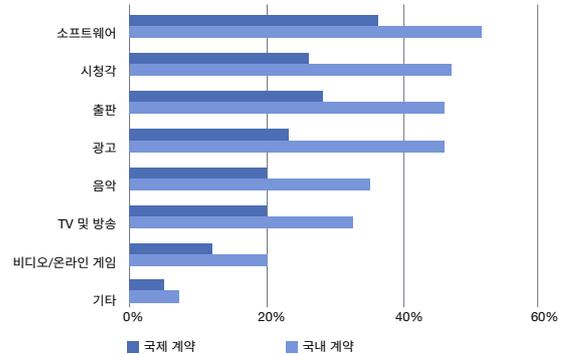
도3.21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계약에서 많이 인용되는 준거법



결과는 전체 응답자 수(314명) 대비 구성 비율로 나타냅니다. 응답자는 복수 응답이 가능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계약에서 다루어진 분야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이 국내 계약(51%)과 국제 계약(36%) 모두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에 계약에서 많이 다루는 분야로는 시청각, 출판 및 광고가 있었습니다(도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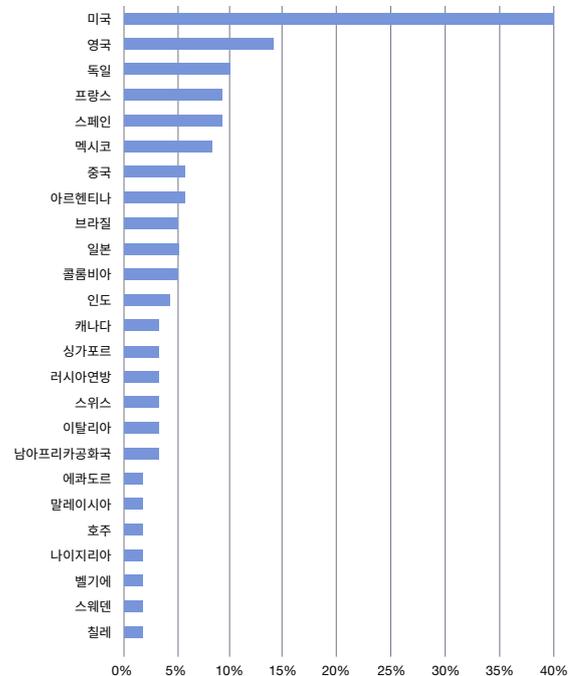
도3.22 체결된 계약의 분야



결과는 전체 응답자 수(316명) 대비 구성 비율로 나타냅니다. 응답자는 복수 응답이 가능했습니다.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계약 상대방의 상위 25개 소재지가 도3.23에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은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멕시코, 아르헨티나 및 중국에 소재했습니다.

도3.23 응답자의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계약 상대방의 상위 25개 소재지



결과는 전체 응답자 수(315명) 대비 구성 비율로 나타냅니다. 응답자는 복수 응답이 가능했습니다.

응답자들은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계약을 위한 분쟁해결조항의 작성에 대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받았습니다. 61%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39%는 그러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응답자 중 69%는 해당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에 ADR 제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인터뷰 응답자는 상대방이 특정한 ADR 제도를 강요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를 들며, 그것이 때로는 다른 이용 가능한 ADR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페인어 영화 제작의 중심지가 되면서 주요 스튜디오와 플랫폼, 특히 미국의 스튜디오와 플랫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들과의 계약 (예: 제작서비스계약(Production Service Contract))에는 일반적으로 변경 불가능한 중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sup>247</sup>

###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계약의 분쟁해결조항 작성을 위한 정책 또는 가이드라인

#### 기업

중소기업의 48%와 대기업의 45%가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계약의 분쟁해결조항 작성을 위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23%와 대기업의 33%의 경우에는 자사의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에 ADR 제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집중관리단체

집중관리단체의 52%가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계약의 분쟁해결조항 작성을 위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집중관리단체의 28%가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에 ADR 제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로펌

로펌의 61%가 고객의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계약을 위한 분쟁해결조항의 작성에 대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로펌의 50%가 고객을 위한 그러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에 ADR 제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B2B 소프트웨어 계약의 일반 약관에 ADR 제도가 포함된 사례

다음의 사례연구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동일 기업 그룹 내 많은 기업들이 WIPO의 선택 가능한 ADR 제도를 이용한 사례를 보여 줍니다. 이 그룹은 모기업이 미국에 소재하지만 전 세계에서 사업을 영위합니다.

상기 그룹의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해 WIPO 센터에 25건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주요 계약 유형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 계약, 그리고 재판대 또는 배포 계약이었습니다.

이 기업들의 분쟁해결정책에 따라 B2B 계약의 약관에는 WIPO 신속중재로 이어지는 WIPO 조정에 대해 규정하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정 단계 기간이 60일로 명시되었습니다.

분쟁의 57%가 WIPO 조정 신청 후에 화해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 화해의 38%는 조정 개시 후 조정인 선임 전에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었습니다.

WIPO 조정 절차 기간은 평균 3개월이었습니다.

### 보고된 동향 및 향후 개선점

WIPO 센터는 설문조사 및 인터뷰 응답자들에게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서 분쟁해결수단 이용과 관련하여 관찰된 동향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일부 설문조사 및 인터뷰 응답자들은 ADR 제도(특히, 알선(conciliation)/조정<sup>248</sup>)에 친숙해지고 이를 신뢰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응답했습니다.<sup>249</sup> 또한 응답자들은 신속중재와 전문가결정의 이용 증가와,<sup>250</sup> 저작권 분쟁을 위한 전문 ADR 제도의 이용도 언급했습니다.<sup>251</sup> 일부 응답자들은 전문 ADR 제도가 이러한 분쟁 유형(대부분 비계약상 분쟁<sup>252</sup> 관련)의 경우에 소송보다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는 여러 관할권이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sup>253</sup>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적합한 ADR 제도는 응답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분야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추세입니다.<sup>254</sup>

WIPO 센터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응답자들은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방법으로 기술이 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예: 온라인 제출, 화상회의).<sup>255</sup>

응답자들은 조정 제도가 법에 포함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sup>256</sup> (예: 음악 분야에서 제작자와 디지털 플랫폼 간의 분쟁).<sup>257</sup> 또한 법원 연계형 ADR 제도가 일부 법에 따라 이용 가능하며, 당사자들은 법원소송 전에 ADR 제도를 이용해 보도록 권장됩니다.<sup>258</sup> 응답자들에 따르면 정부기관(예: 저작권청)이 ADR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고<sup>259</sup> 계약상에 ADR 조항이 포함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납니다.<sup>260</sup>

설문조사 및 인터뷰 응답자들은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제안할 개선점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의 이용,<sup>261</sup> 맞춤형 전문 규칙과 절차의 개발,<sup>262</sup> 및 분쟁해결 가이드라인<sup>263</sup>을 언급했으며, 국제적이고 중립적인 분쟁해결 제공자가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sup>264</sup> 이와 더불어, 응답자들은 분쟁해결절차의 비용과 기간을 줄이기 위해<sup>265</sup> 저비용의 신속하고 집행 가능한 심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sup>266</sup> 다수의 관할권에 걸친 분쟁을

해결할 공동 법정지(common forum)의 개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sup>267</sup> 응답자들은 이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ADR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sup>268</sup> 전문 중립인의 이용 가능성이 개선되어야 하고<sup>269</sup> 판사들을 대상으로 ADR 제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sup>270</sup> 응답자들이 언급한 추가 개선점에는, 여러 표준 ADR 조항들을 조화시키고 그러한 조항들이 계약에 포함되도록 홍보하는 것과,<sup>271</sup> ADR 제도의 이용을 고려하기 위해 문화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sup>272</sup>

## 제4장

# ADR의 실무 적용: 현황 및 가능성

본 마지막 장에서는 보고서에 나온 설문조사 및 분석의 핵심적 결과를 바탕으로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실무 적용 사항들에 대해 논의합니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ADR 규정 및 관련 이니셔티브들을 포함하는 국내 및 지역 저작권법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제공했으며,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지식재산청이나 저작권청에서 수립한 체계의 사례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제3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그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ADR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규정의 발전은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소송의 대안으로 효과적인 대체적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미국 의회에서 진행 중인 법령 갱신 프로젝트 포함)과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에서 ADR과 관련된 일부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시청각 저작물 라이선스 관련 협상과 합의에 있어 ADR, 특히 조정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sup>273</sup> 더불어, 저작자와 실연자에 대한 공정하고 비례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계약 조정이나 정보공개 의무와 관련하여서도 분쟁 당사자들이 자발적 ADR 절차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sup>274</sup>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은 게시(업로드)되어 있는 저작물 또는 보호받는 대상물에 대한 접근이나 삭제에 둘러싼 분쟁의 경우,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이 사용자들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sup>275</sup> 동 지침은 법적 보호와 사법적 구제에 대한 사용자들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소송 외 구제수단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의 업로드 필터링, 사람의 검토, ADR 및 법원소송과 같이, 보호 콘텐츠 이용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가 필수적입니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결과와 현행 규정 및 정책 동향을 고려하여,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실무 적용 사항, 즉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 및 도구의 효과적인

활용,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통지 제도, 그리고 조정된 맞춤형 ADR 절차의 개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 및 도구의 효과적인 활용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은 최근 부흥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전통적인(traditional)” 법원 시스템과 함께 병행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온라인 분쟁해결에 대한 실무적 정의(working definition)로,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의 온라인 분쟁해결 실무작업반(ODR Working Group)에서 “전자통신 및 기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촉진되는 분쟁해결수단”이라고 정의한 것을 채택합니다.<sup>276</sup> 이에 따라,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설계를 위한 접근법은 완전한 전산화 시스템부터 하이브리드형 해결책(hybrid solution)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차질이 생기면서 많은 관할권에서 신속하게 “재래식(brick-and-mortar)” 법정에서 벗어나 다양한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와 도구를 채택할 가능성도 대두되었습니다.

온라인 분쟁해결 방법을 통해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이용에 혁신이 이루어지면 신속성과 편의성이 향상되고 법적 비용이 절감되며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훼손하는 변론주의적 절차를 피함으로써 권리보유자들과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20여년 전부터 이베이(eBay), 페이팔(PayPal), 알리바바(Alibaba) 등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매년 수백만 건의 분쟁을 처리하는 대체적-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EU 내에서는 최근에 C2B(consumer-to-business) 분쟁에서 온라인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European ODR platform)을 개발하고 EU,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노르웨이의 모든 온라인 판매 사업자 및 기업들에게 해당 플랫폼 접속용 링크(link)와 이메일 연락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sup>277</sup>

법원과 재판소에서의 신기술 및 온라인 절차 도입은 민간 부문에서보다 훨씬 느리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 세계 법원들은 “온라인 법원(online court)” 개발을 향한 다양한 디지털화 개혁에 착수했습니다.<sup>278</sup> 제2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중국의 인터넷 법원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1차적 관할권(primary jurisdiction)을 가지며 거의 모든 절차(사건 신청, 사건 관리, 재판 전 조정, 심리 및 판정 교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분쟁해결의 핵심은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고 간소화된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과 시간적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효율성과 더불어, 일부 지지자들은 온라인 분쟁해결제도가 분쟁해결 결과의 질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창조산업의 다양한 권리보유자를 포함하여 가용 자원이 적은 당사자들, 그리고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 및 콘텐츠의 이용자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IP 분쟁의 당사자, 조정인, 중재인 및 전문가들이 ADR 절차에서 온라인 도구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sup>279</sup> 예를 들어, WIPO 센터에서는 동 기관의 규칙에 따라 적시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절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화상회의 도구와, 온라인 조정 및 중재 절차 수행을 위한 체크리스트(Checklist for the Online Conduct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Proceedings)를 마련했습니다.<sup>280</sup> 화상회의 설비와 더불어, WIPO 중재 당사자의 약 30%는 WIPO 센터에서 개발하고 관리하는 시간 및 비용 효율적인 온라인 사건 관리 도구인 WIPO eADR을<sup>281</sup> 이용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 WIPO eADR

WIPO 조정, 중재, 신속중재 또는 전문가결정 규칙에 따른 절차의 당사자들은 WIPO eADR을 이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WIPO eADR을 이용하면, WIPO 사건의 당사자, 조정인, 중재인 및 전문가들은 통지(communication)를 온라인 사건 일람표(online docket)에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WIPO의 온라인 사건 관리 도구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WIPO 센터의 조정 화해 성립률은 78%까지 증가했습니다. WIPO 센터는 온라인 사건 관리 도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의 구체적 유형에 맞추어 이러한 도구들을 조정하고, WIPO 회원국들의 저작권 당국이 WIPO의 온라인 사건 관리 도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의 온라인 특성을 고려할 때,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 및 도구는 그러한 분쟁의 화해를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신기술을 이용하는

보다 진화된 온라인 분쟁해결 도구도 분쟁해결절차의 효율성과 질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챗봇(chatbot), 문서 검토, 실시간 언어 번역 등 다양한 인공지능 도구들이 (조정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쟁해결절차에 사용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온라인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 및 저작권 침해 제기와 관련한 증거의 진위성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sup>282</sup> 지식재산권 및 지식재산권 관리 정보의 등록 절차를 강화하는 데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과 같은 미등록 지식재산권의 경우에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sup>283</sup>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통지 제도의 최근 동향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이 채택한 효과적인 통지 제도가 특히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 분쟁을 발생 시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이러한 단계에서 해결하는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한 절차는 해당 플랫폼에 대한 권리보유자 및 사용자의 신뢰와 확신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은 “세이프 하버” 보호가 가능한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라 통지 및 삭제 프로세스를 도입했습니다. 몇몇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은 권리보유자가 서면 통지나 온라인 서식 작성을 통해 저작권 침해 주장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주장 통지 프로세스를 플랫폼에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다 대중적이고 유명한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은 그러한 통지를 위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단한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비교적 간소화되고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있는 저작권 침해 통지가 되려면 이러한 온라인 서식에 일반적으로 주제, 권리보유자의 개인정보, 청구 내용, 조사 대상(저작권 침해가 주장된 URL 포함), 조사 내용, 소유권 및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는 첨부 문서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수의 대규모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은 자사 플랫폼에 관련 저작권법 정보와, 해당 지역 저작권청이나 WIPO에서 제공하는 추가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일부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은 웹사이트의 공지 섹션 첫 페이지에 “자주 묻는 질문(FAQ)” 목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의 저작권 조항들은 보통 업로드된 콘텐츠의 독자성(originality) 및 플랫폼에 침해를 청구하는 당사자의 성실의무(duty of good faith)를 언급합니다. 그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모범 관행으로, 법률용어의 사용을 제한하고 평이한 언어와 비교적 짧고 복잡하지 않은 문장으로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정보가 독자들이 해당

정보를 보다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방식으로 일반인들에게 제공됩니다.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보유자나 그의 허가를 받은 대리인만이 저작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플랫폼의 경우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관련 정보 및 통지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웹페이지 대신에, 그러한 정보가 비교적 규모가 작거나 유명하지 않은 플랫폼의 서비스 약관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권리보유자가 작성해 지정 대리인에게 보내야 하는 해당 정보를 규정하는 조항이 약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보유자는 통지 및 삭제 신청의 진정성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있으며 해당 저작권 침해 청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권리보유자의 절차상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데 용이한 인공지능 기반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한 플랫폼들도 있습니다.<sup>284</sup> 자동 필터링 도구를 이용하는 것은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에 따라 권장됩니다. 동 지침 제17조제4항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은, 사용자들이 무단으로 업로드하거나 공유한, 다른 사람의 저작권 및/또는 저작권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된 콘텐츠에 대해 다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a)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professional diligence)에 대한 높은 산업표준에 따랐으며,
- (b) 권리보유자가 해당 서비스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관련 정보를 제공한, 특정 저작물 및 기타 대상물이 이용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 (c) 어떤 경우에도 권리보유자로부터 충분히 입증된 통지를 받은 후 통지 대상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을 해당 웹사이트에서 삭제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권한을 비활성화하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b)항에 따라 그들의 향후 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은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선제적 모니터링 및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이 받는 삭제통지에 응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 제17조제9항에 따라, 업로드된 콘텐츠의 삭제 또는 그에 대한 접근권한의 비활성화는 사람의 검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의 설명조항 70(Recital 70)은 문제 제기 및 구제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들이 특히 접근권한이 비활성화되거나 삭제된 업로드에 대한 저작권의 예외 또는 제한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경우, 자신들의 업로드에 대한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명시합니다. 그러한 문제 제기는 부당한 지연(undue delay) 없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권리보유자도 사람의 검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콘텐츠의 삭제 또는 그에 대한 접근권한의 비활성화를 요청할 때 이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duly) 정당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은 문제 제기예에 대해 사람의 검토 단계를 제공하는 내부적 구제 수단을 시행했거나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황별 평가가 가능하고 예외나 제한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동 필터의 단점을 해소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인공지능으로는 아직 패러디를 식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면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내부적 (사람의) 검토 수단으로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의 제17조제9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저작권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택 가능한 다양한 소송 외적 및 사법적 방법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맞춤형 ADR 제도가 이해관계자들(사용자, 권리보유자,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조정된 맞춤형 ADR 절차의 개발

본 설문조사와 보고서는 여러 관할권의 동향을 파악 및 가시화하고, 관련 법령과 기존의 계약상 관행을 고려하여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 적합한 최선의 ADR 제도를 개발하는 데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사용자 업로드 콘텐츠를 위한 WIPO 전문가결정규칙(WIPO Expert Determination Rules for User-Uploaded Content(WIPO EDUUC))

WIPO 센터는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WIPO 전문가결정규칙에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의 이용자 업로드 콘텐츠 관련 분쟁 해결에 대한 최선의 국제적 관행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WIPO 센터는 EU 회원국들이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을 이행해야 하는 2021년에 해당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절차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의 일반 약관에 사용자 업로드 콘텐츠를 위한 WIPO 전문가결정규칙을 인용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계약상 조항이 없는 경우에 사용자와 권리보유자는 기존의 분쟁<sup>285</sup>을 해결하기 위해 동 규칙에 따른 사후합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동 규칙을 이용하는 것은 언제나 권리보유자의 선택사항이며 이로 인해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비침해 콘텐츠는 사용자가 문제의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이용되도록 할 때, 다음의 적용 가능한 예외 또는 제한 중 하나에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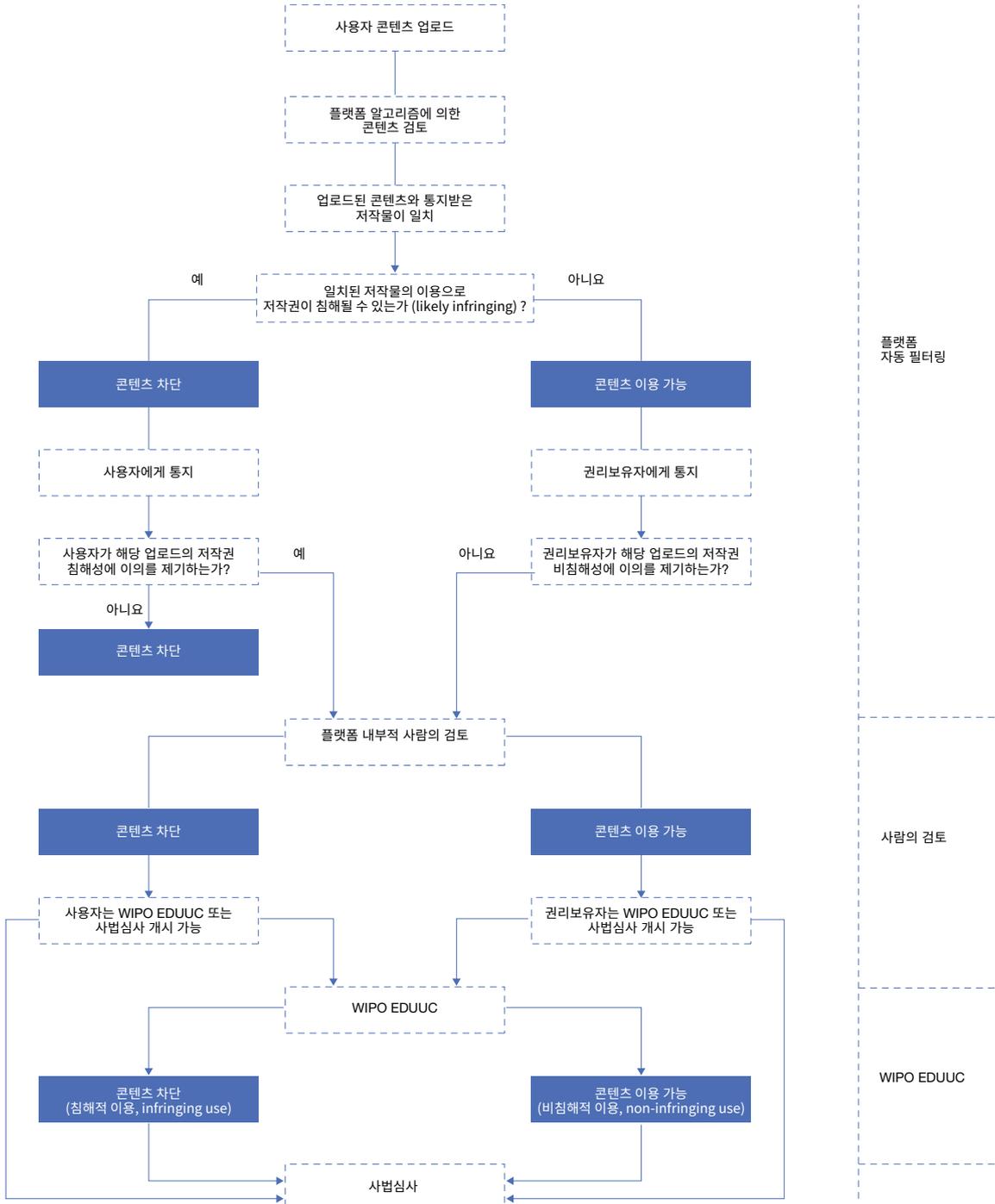
- (a) 인용, 비평, 논평(review)
- (b) 캐리커처(caricature), 패러디 또는 혼성모방(pastiche)을 위한 이용

사용자 업로드 콘텐츠를 위한 WIPO 전문가결정규칙 절차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 방법은, 해당 콘텐츠의 차단/비활성화 및/또는 삭제, 또는 차단/비활성화 및/또는 삭제된 콘텐츠의 복구로 제한됩니다.

####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위한 WIPO 조정 및 중재

WIPO-MCST 설문조사 결과 및 본 보고서를 통해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환경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의 다양성은 본 보고서에 제시된 일부 국내 및 지역 법제도<sup>286</sup> 및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이 언급한 분쟁 유형에 반영됩니다.<sup>287</sup> 일부 국내 및 지역 법제도와 이니셔티브들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제3자(즉, 조정인)의 도움으로 콘텐츠 및 배포 경로에 대한 접근권한을 협상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가 마련되면, 당사자들은 정보공개 의무 및 계약 조정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ADR 제도를 활용하도록 권장됩니다.

도 4.1 사용자 업로드 콘텐츠 관련 분쟁을 위한 전문가결정(EDUUC)



## 분쟁의 유형

당사자들은 다음 분쟁 유형들을 해결하는 데 WIPO 조정 및 중재와 같은 전문 ADR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i. 주문형 비디오 플랫폼상의 콘텐츠 배포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 관련 협상<sup>288</sup>
- ii. 라이선스 조건의 범위에 대한 위반<sup>289</sup>
- iii. 신규 배포 경로가 포함되지 않은 기존의 라이선스 조건<sup>290</sup>
- iv. 저작물의 이용 및 발생한 수익과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권리보유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가 포함된 기존의 라이선스 조건<sup>291</sup>
- v. 온라인 플랫폼이 권리보유자에게 제공하는 보상과 관련한 기존 라이선스 조건의 조정<sup>292</sup>
- vi. 신탁관리단체의 수입/로열티 징수 및 지급<sup>293</sup>
- vii. 집중관리단체와 권리보유자 간의 사용료(tariff) 결정 기준<sup>294</sup>
- viii. 온라인 플랫폼과 권리보유자 간의 합리적인 보상 조건 결정<sup>295</sup>
- ix. 지급되지 않았거나 청구되지 않은 로열티의 소유권에 대한 집중관리단체 또는 온라인 플랫폼의 결정<sup>296</sup>
- x.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상의 소프트웨어의 개선 또는 업데이트에 대한 소유권<sup>297</sup>
- xi. 영화 공동 제작 또는 광고 계약상의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의 제공 및 품질
- xii. 저작권 침해/비침해 이용으로 인한 플랫폼상의 저작물 또는 콘텐츠의 차단/삭제 또는 복구와 관련된 분쟁의 결정<sup>298</sup>

이러한 분쟁의 일부에서는 당사자들이 WIPO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개시하는 데 사후합의계약을 이용했습니다. 추가 도구로서, 조정 조항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분쟁의 당사자는 WIPO 조정규칙 제4조에 따라 일방당사자에 의한 조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sup>299</sup> 그러한 신청서는 분쟁의 WIPO 조정 회부를 고려하도록 상대방에게 송부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 WIPO 조정이 개시되며 해당 사건은 WIPO 센터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또한, 일방 당사자의 요청 시에 WIPO 센터는 당사자들이 분쟁의 WIPO 조정 회부를 고려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외부 중립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b항).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에 외부 중립인은 이후에 조정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 표준 사후합의계약(범위 기술 예시문구 포함)

다음과 같이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위한 WIPO 조정 및 중재의 표준 사후합의계약에는 당사자들이 현재의 분쟁(앞에 나열된 분쟁 유형 포함)을 WIPO 조정 및 중재에 회부하도록 돕는 데 필요한 주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이러한 표준 사후합의계약을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위한 WIPO 조정의 표준 사후합의계약

1.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 분쟁을 WIPO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는 데 합의한다. 분쟁은 다음과 관련된다.

[분쟁 내용이 기술된 다음의 예시문구들은 당사자들이 분쟁의 범위를 정의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1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와/과 관련한 라이선스 조건의 협상/결정([당사자명]이/가 이미 특정 지역에서 해당 레퍼토리 저작물(repertoire work)의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정 포함)
- 1.2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 [또는] [콘텐츠]의 이용이 라이선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1.3.1 라이선스의 범위에 [디지털 배포 경로 기재]을/를 통한 라이선스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 1.3.2 [배포 경로 기재]상의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 이용으로 [당사자명]에게 지급되는 로열티의 금액 및 수준
- 1.4 보상을 위한 사용보고서 내 데이터(복제물 및 복제 시간, 다운로드, 디지털 판매, 지리적 범위 포함)의 정확성
- 1.5 당사자들이 이전에 합의한 보상에 따라 [당사자명 기재]이/가 [당사자명 기재]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한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의 이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 수준
  - 1.6.1 [집중관리단체명 등 기재]이/가 징수한 라이선스 수익 금액 및 [권리보유자명 등 기재]에게 배분된 금액
  - 1.6.2 [집중관리단체명 등 기재] 및 [집중관리단체명, 제작자명, 작곡가명, 영화감독명, 작가명, 음악 실연자명, 배우명 등 기재]에 대한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 수익의 배분
- 1.7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에 대하여 [집중관리단체명 등 기재]이/가 [권리보유자명 등 기재]에게 적용할 사용료의 수준
- 1.8 [플랫폼명 등 기재]이/가 [권리보유자명 등 기재]에게 지급할 합리적인 보상 조건의 수준(과거 및 미래 기간 포함)
- 1.9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지급/미청구 로열티를 [집중관리단체명, 온라인 플랫폼명 등 기재]이/가 제공할 대상자
- 1.10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기재]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개선 또는 업데이트에 대한 소유권
- 1.11 [영화 공동 제작 또는 광고 계약 기재]에 따라 [당사자명 기재]이/가 [당사자명 기재]에게 제공하는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의 적절한 성과 수준
- 1.12 저작권 침해/비침해 이용[및 손해배상의 지급]으로 [플랫폼명 기재]에서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이/가 차단/삭제 또는 복구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2. 조정인의 선임은 WIPO 조정규칙 제7조제a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3. 조정 장소는 [장소 기재](으)로 하고, 조정에서 사용될 언어는 [언어 기재]로 한다.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위한 WIPO (신속)중재의 표준 사후합의계약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에 대해 WIPO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여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한다.

[분쟁 내용이 기술된 다음의 예시문구들은 당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중재판정부는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와/과 관련한 라이선스의 조건에 대한 최종판정([당사자명]이/가 이미 특정 지역에서 레퍼토리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정 포함)(분쟁 대상 조건 및 해당 조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안에 대한 판정을 내림으로써 당사자들이 완전하고 구속력이 있는 라이선스를 체결하도록 하는 것 포함)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추가 기재(선택): 당사자들은 저작권 침해가 중재의 사안으로 제기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고 중재판정부는 저작권의 존속 또는 침해에 관한 사안을 고려하거나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당사자 B는 본 중재의 목적상 [저작물 정의]의 특정 이용 사례들이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포함하는 어떠한 사건도 진행시키지 않는 데 동의한다.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하는 형식으로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그에 기속되는 데 동의한다.]

2. 중재판정부는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 또는 [콘텐츠]의 이용이 라이선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3.1. 중재판정부는 라이선스의 범위에 [디지털 배포 경로 기재]을/를 통한 라이선싱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3.2. 중재판정부는 [배포 경로 기재]상의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 이용으로 [당사자명]에게 지급되는 로열티의 금액 및 수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4. 중재판정부는 사용보고서의 데이터(복제물 및 복제 시간, 다운로드, 디지털 판매, 지리적 범위 포함)가

보상을 위해 정확한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5.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이전에 합의한 보상에 따라 [당사자명 기재]이/가 [당사자명 기재]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한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의 이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 수준에 대해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6.1. 중재판정부는 [집중관리단체명 등 기재]이/가 징수한 라이선싱 수익 금액 및 [권리보유자명 등 기재]에게 배분된 금액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6.2. 중재판정부는 [집중관리단체명 등 기재] 및 [집중관리단체명, 제작자명, 작곡가명, 영화감독명, 작가명, 음악 실연자명, 배우명 등 기재] 간의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 수익의 배분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7. 중재판정부는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에 대하여 [집중관리단체명 등 기재]이/가 [권리보유자명 등 기재]에게 적용할 사용료의 수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8. 중재판정부는 [플랫폼명 등 기재]이/가 [권리보유자명 등 기재]에게 지급할 합리적인 보상 조건의 수준(과거 및 미래 기간 포함)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9. 중재판정부는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지급/미청구 로열티를 [집중관리단체명, 온라인 플랫폼명 등 기재]이/가 제공할 대상자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10. 중재판정부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기재]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개선 또는 업데이트의 소유자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11. 중재판정부는 [영화 공동 제작 또는 광고 계약 기재]에 따라 [당사자명 기재]이/가 [당사자명 기재]에게 제공하는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명시]의 적절한 성과 수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12. 중재판정부는 저작권 침해/비침해 이용[및 손해배상의 지급]으로 [플랫폼명 기재]에서 [저작물 및/또는 콘텐츠 기재]이/가 차단/삭제 또는 복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3인 중재인]으로 구성한다. 중재지는 [장소 기재](으)로 하고,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언어 기재]로 한다. 분쟁은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 결론

종합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DR 제도가 발전하고 절차가 조정되면 접근성, 경제성, 투명성, 중립성 및 공정성이 향상됨으로써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의 해결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앞으로의 조사와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은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데 더욱 기여할 것입니다.

# 주석

1. 예를 들어, UNCTAD and UNDP (2008). Creative Economy Report 2008. The Challenges of Assessing the Creative Economy: Towards Informed Policy Making. UNCTAD/ DITC/2008/2. Geneva: UNCTAD/UNDP; UNCTAD (2018). Creative Economy Outlook: Trends in International Trade in Creative Industries. UNCTAD/ DITC/ TED/2018/3. Geneva: UNCTAD; Ruth Towse (ed.) (2013). Handbook on the Digital Creative Economy. Cheltenham: Edward Elgar 참조.
2. 간략한 내용은 WIPO (n.d.a). Copyright. Geneva: WIPO 참조. [www.wipo.int/copyright/](http://www.wipo.int/copyright/), 2021년 3월 29일 접속.
3. Giuseppe Mazziotti (2008). EU Digital Copyright Law and the End-User. Berlin: Springer, 3. 또한 Jessica D. Litman (2006). Digital Copyright (2<sup>nd</sup> edn). Amherst, NY: Prometheus Books 참조.
4. 실레로 Oracle Am., Inc. v. Google Inc., 886 F.3d 1179 (2018) 참조. 본 보고서 작성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에서 합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5. Elena Cooper and Sheona Burrow (2019). Photographic copyright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in historical perspective. Legal Studies, 39(1), 143. 또한 Matthew Sag (2019). Empirical studies of copyright litigation. In Menell, P. and D. Schwartz (eds.), Research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Vol. II: Analytical Methods. Cheltenham: Edward Elgar, pp. 511-532, at 511, 515 참조(저작권 소송이 “왕들의 스포츠(the sport of kings)” 가 아닌, “주로 소기업 분야(mainly the province of small firms)” 와 연관되는 것을 발견한 미국 연구들을 다룬다).
6. WIPO (2015). Guide on Surveying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the Copyright-Based Industries. Geneva: WIPO, 49-50.
7. 한국저작권위원회(2018). Annual Report.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eng/activities/annual-report/index.do](http://www.copyright.or.kr/eng/activities/annual-report/index.do), 2021년 3월 29일 접속.
8. WIPO (2020b). WIPO Caseload Summary. Geneva: WIPO. [www.wipo.int/amc/en/center/caseload.html](http://www.wipo.int/amc/en/center/caseload.html), 2021년 3월 29일 접속.
9. 싱가포르의 2019년 지식재산(분쟁해결)법 s 2에 정의된 바와 같은데, 이 조항에 따라 동 국가의 2002년 중재법(개정)에는 새 정의 조항인 s 52A가 삽입된다.
10. 한국저작권위원회 (n.d.). ADR Mediation.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eng/service/adr/conciliation.do](http://www.copyright.or.kr/eng/service/adr/conciliation.do), 2021년 3월 29일 접속.
1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n.d.). 국제분쟁해결. 서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참조. [www.kcdrc.kr/guid04.do](http://www.kcdrc.kr/guid04.do), 2021년 3월 29일 접속.
12. WIPO (2020a). MCST-WIPO Collaboration: Mediation for International Copyright and Content-Related Disputes 참조. [www.wipo.int/amc/en/center/specific-sectors/ipoffices/korea/mcst/](http://www.wipo.int/amc/en/center/specific-sectors/ipoffices/korea/mcst/), 2021년 3월 29일 접속.
13. IPOS (n.d.a). Growing Your Business with IP: Funding. Singapore: IPOS. [www.ipos.gov.sg/manage-ip/funding](http://www.ipos.gov.sg/manage-ip/funding), 2021년 3월 29일 접속.
14. UK IPO (2020b). Resolving IP Disputes. IP Health Check 5. London: UK IPO.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55845/Resolving\\_IP\\_Disputes.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55845/Resolving_IP_Disputes.pdf), 2021년 3월 29일 접속. 조정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K IPO (2020a). Intellectual Property Mediation. London: UK IPO 참조. [www.gov.uk/guidance/intellectual-property-mediation](http://www.gov.uk/guidance/intellectual-property-mediation), 2021년 3월 29일 접속.
15. WIPO (2013). International Survey on Dispute Resolution in Technology Transactions. Geneva: WIPO. [www.wipo.int/amc/en/center/survey/](http://www.wipo.int/amc/en/center/survey/), 2021년 3월 29일 접속. (62개국 393명의 응답자가 설문조사를 완료했다. 응답자에는 로펌, 기업, 연구기관, 대학, 정부조직 및 전문직 자영업자가 포함되었다. 한편, 비공개 계약, 양도 계약, 라이선스 계약, 연구개발 계약 등 가장 많이 체결된 계약은 주로 특허성이 있는 기술 및 노하우와 관련이 있었다.)
16.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2016). Pre-empting and Resolving Technology, Media and Telecoms Disputes: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Survey. London: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www.arbitration.qmul.ac.uk/media/arbitration/docs/Fixing\\_Tech\\_report\\_online\\_singles.pdf](http://www.arbitration.qmul.ac.uk/media/arbitration/docs/Fixing_Tech_report_online_singles.pdf), 2021년 3월 29일 접속.
17. Kenneth R. Adamo (2011). Over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context. Global Business Law Review, 2(1), 7, at 8.
18. Trevor Cook (2014). ADR as a Tool for Intellectual Property (IP) Enforcement. WIPO/ACE/9/3. Geneva: WIPO 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19. AIPPI (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Zurich: AIPPI 참조. <https://aippi.org/about-aippi/committees/adr/>, 2021년 3월 29일 접속.
20. INTA (2021).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New York: INTA 참조. [www.inta.org/committees/alternative-dispute-resolution-committee/](http://www.inta.org/committees/alternative-dispute-resolution-committee/), 2021년 3월 29일 접속.
21. IBA Mediation Committee (2015). Mediation as an alternative method to resolv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BA Newsletter, July 29. [www.ibanet.org/Article/Detail.aspx?ArticleUid=09317ae5-7898-4c9a-b8e4-b7122ca59364](http://www.ibanet.org/Article/Detail.aspx?ArticleUid=09317ae5-7898-4c9a-b8e4-b7122ca59364), 2021년 3월 29일 접속.
22. Scott H Blackman and Rebecca M McNeill (1997).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commerci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47, 1709, at 1718-1720; Anita Stork (1988). The use of arbitration in copyright disputes: IBM v. Fujitsu. High Technology Law Journal, 3, 241.
23.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2015). Comments Submitted pursuant to Notice of Inquiry regarding “Copyright Protection for Certain Visual Works” Apr. 24, 2015. Federal Register, 80(23054), July 23. [www.aipla.org/docs/default-source/advocacy/documents/](http://www.aipla.org/docs/default-source/advocacy/documents/).
24. US Copyright Office (2020). Section 512 of Title 17: A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Washington, D.C.: US Copyright Office. (제512조에는 미국 저작권법의 “세이프 하버”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 조항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통지 및 삭제” 를 요구하는 특정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면책된다. 저작권 보호 자료를 창작하고 배포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 및 사업 모델이 변화하면서 본래 1990년대 말에 구상된 면책 규정에 대해 검토가 요구되었다.) 이와 유사한 EU 내 논쟁은 European Commission (2015). Towards a Modern, More European Copyright Framework. COM/2015/0626 final.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참조. 이러한 소스로 마침내 2019년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제2장의 저작권 관련 법제도 및 ADR의 채택 부분에서 간략히 설명된다.
25. WIPO (2020b). WIPO Caseload Summary. Geneva: WIPO 참조. [www.wipo.int/amc/en/center/caseload.html](http://www.wipo.int/amc/en/center/caseload.html), 2021년 3월 29일 접속.
26. 일반적인 내용은, Jacques de Werra (2013b). Research Handbook on Intellectual Property Licensing. Cheltenham: Edward Elgar 참조.
27. Michael L. Rustad, Richard Buckingham, Diane D’ Angelo and Katherine Durlacher (2011). An empirical report of predispute mandatory arbitration clauses in social media terms of service agreements. UALR Law Review, 34, 643.
28. 온라인 분쟁해결(ODR)의 기본 정의는 “당사자들의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이다. Colin Rule (2016). Is ODR ADR? A response to Carrie Menkel-Meadow. International Journal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3(1), 11 참조.
29. Rupert Jackson (2018). Was it all worth it? Lecture to the Cambridge Law Faculty, March 5. [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18/03/speech-lj-jackson-was-it-all-worth-it-mar2018.pdf](http://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18/03/speech-lj-jackson-was-it-all-worth-it-mar2018.pdf), 2021년 3월 29일 접속.
30. Rule (n 28) 11.

31. WIPO (n.d.b). Online Case Administration Tools. Geneva: WIPO. [www.wipo.int/amc/en/eadr/](http://www.wipo.int/amc/en/eadr/), 2021년 3월 29일 접속.
32. 도3.1 참조.
33. 제2장의 저작권 관련 법제도 및 ADR의 채택 부분 참조.
34. 제3장 참조.
35. 예를 들어, 7번 문항 “귀하께서는 최근 5년간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 연관된 적이 있습니까?” (단일 응답) 및 21번 문항 “귀하께서는 최근 5년간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까?” (단일 응답) 참조.
36. 3번 문항 “귀하의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경력” (단일 응답) 참조.
37. Jason W. Osborne (2013). *Best Practices in Data Cleaning: A Complete Guide to Everything You Need to Do Before and After Collecting your Data*. Thousand Oaks, CA: Sage.
38. WIPO (2018a). *Guide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ptions for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and Courts*. Geneva: WIPO 참조. [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342&plang=EN](http://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342&plang=EN), 2021년 3월 29일 접속.
39. WIPO (n.d.c). *WIPO ADR Procedures*. Geneva: WIPO. [www.wipo.int/amc/en/center/wipo-adr.html](http://www.wipo.int/amc/en/center/wipo-adr.html), 2021년 3월 29일 접속.
40. WIPO (2020c). *WIPO Mediation, Arbitration, Expedited Arbitration and Expert Determination Rules and Clauses*. Geneva: WIPO.
41. WIPO (n.d.c). *WIPO ADR Procedures*. Geneva: WIPO. [www.wipo.int/amc/en/center/wipo-adr.html](http://www.wipo.int/amc/en/center/wipo-adr.html), 2021년 3월 29일 접속.
42. Matthew H. Ormsbee (2011). *Music to everyone’s ears: Binding mediation in music rights disputes*. *Cardozo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3, 225 참조. 저자는 음악 분야의 저작권 침해 분쟁을 적절히 조정하는 데 요구되는 공감능력과 전문성을 모두 강조하고, (i) 신의성실에 따른 조정과 (ii) 첫 단계가 실패할 경우 구속력 있는 중재로 구성되는 2단계 절차를 제안한다.
43. WIPO (2020d). *WIPO Mediation Rules*. Geneva: WIPO. [www.wipo.int/amc/en/mediation/rules/](http://www.wipo.int/amc/en/mediation/rules/), 2021년 3월 29일 접속, Rule 4.
44. WIPO (2018b). *Guide to Mediation*. Geneva: WIPO, at 19.
45. Mary Vitoria (2006). *Medi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1, 398.
46. Asako Wechs Hatanaka (2018). *Optimising medi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law: Perspectives from EU, French and UK law*. *IIC International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Law*, 49, 384.
47.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유엔 협약(“싱가포르조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Singapore Mediation Convention”)), 2019년 8월 7일 체결.
48. WIPO는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른 개선사항, 즉 집행국의 법원에 화해합의서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WIPO 조정규칙을 갱신했다(2020년 1월 1일 시행).
49. Trevor Cook and Alejandro Garcia (2010).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rbitration*. Alphen aan den Rijn: Wolters Kluwer.
50. WIPO (n.d.c). *WIPO ADR Procedures*. Geneva: WIPO. [www.wipo.int/amc/en/center/wipo-adr.html](http://www.wipo.int/amc/en/center/wipo-adr.html), 2021년 3월 29일 접속.
51. Eun-Joo Min and Johannes Christian Wichard (2018). *Cross-border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In Dreyfuss, R. and J. Pila (eds.), *The Oxford Handbook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687–719, at 719; 또한 Kap-You Kim and Umaer Khalil (2016). *The procedural benefits of arbitrating patent disputes*.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26, 50 참조. 예를 들어, WIPO (2020<sup>c</sup>). *WIPO Arbitration Rules*. Geneva: WIPO 참조. [www.wipo.int/amc/en/arbitration/rules/index.html](http://www.wipo.int/amc/en/arbitration/rules/index.html), 2021년 3월 29일 접속.
52. 예를 들어, WIPO (2020<sup>e</sup>). *WIPO Arbitration Rules*. Geneva: WIPO 참조. [www.wipo.int/amc/en/arbitration/rules/index.html](http://www.wipo.int/amc/en/arbitration/rules/index.html), 2021년 3월 29일 접속.
53. WIPO (n.d.d). *What Is WIPO Expedited Arbitration?* Geneva: WIPO 추가 참조. [www.wipo.int/amc/en/arbitration/what-is-exp-arb.html](http://www.wipo.int/amc/en/arbitration/what-is-exp-arb.html), 2021년 3월 29일 접속.
54. Cook and Garcia (n 49), at 35.
55. WIPO (n.d.e). *Why Expert Determination in Intellectual Property?* Geneva: WIPO. [www.wipo.int/amc/en/expert-determination/why-is-exp.html](http://www.wipo.int/amc/en/expert-determination/why-is-exp.html), 2021년 3월 29일 접속.
56. WIPO (n.d.f). *What Is WIPO Expert Determination?* Geneva: WIPO. [www.wipo.int/amc/en/expert-determination/what-is-exp.html](http://www.wipo.int/amc/en/expert-determination/what-is-exp.html), 2021년 3월 29일 접속.
57. UK IPO (2014a). *Opinions: Resolving Patent Disputes*. London: UK IPO 참조. [www.gov.uk/guidance/opinions-resolving-patent-disputes](http://www.gov.uk/guidance/opinions-resolving-patent-disputes), 2021년 3월 29일 접속.
58. JPO (1998). *HANTEI (Advisory Opinion on the technical scope of a patented invention)*. Tokyo: JPO 참조. [www.jpo.go.jp/e/system/trial\\_appeal/shubetu-hantei/](http://www.jpo.go.jp/e/system/trial_appeal/shubetu-hantei/), 2021년 3월 29일 접속.
59. Roderick Thompson and Michael Sacksteder (1998). *Judicial strategies for resolving intellectual property cases without trial: Early neutral evaluation*. *Journal of World Intellectual Property*, 1(4), 643.
60. WIPO (n.d.f). *What Is WIPO Expert Determination?* Geneva: WIPO. [www.wipo.int/amc/en/expert-determination/what-is-exp.html](http://www.wipo.int/amc/en/expert-determination/what-is-exp.html), 2021년 3월 29일 접속.
61.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1958)* (“New York Convention”). [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conventions/foreign\\_arbitral\\_awards](http://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conventions/foreign_arbitral_awards), 2021년 3월 29일 접속.
62. Adham Kotb (2017).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 remains a better final and binding alternative than expert determination*. *Queen Mary Law Journal*, 8, 125.
63. Filip De Ly and Paul-A Gélinas (eds.) (2017). *Dispute Prevention and Settlement through Expert Determination and Dispute Boards*. Paris: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64. Ibid.
65. Frank E. A. Sander (1976). *Varieties of dispute resolution. 사법 운영에 대한 대중의 불만 원인을 논의하는 전국 회의(National Conference on the Causes of Popular Dissatisfaction with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에서의 연설*. *Federal Rules Decisions*, 79, 70.
66. 아르헨티나, 캐나다, 중국, 그리스, 인도, 이탈리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튀르키예, 미국 등 일부 관할권에서는 특정 유형의 민사분쟁(대개는 가사사건이나 고용사건이지만 상사사건도 발생)에 대해 의무적(mandatory) 또는 준의무적(quasi-mandatory) 조정을 시행한다. 영국 등 그 외 관할권에서는 과실이 있는 당사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ADR 진행을 거부하면 상대방의 법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67. 예를 들어, 호주,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및 미국의 법원에서는 법원 연계형 또는 사법형 ADR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68.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Seals & Anor v Williams* [2015] EWHC 1829 (Ch) 및 *Lomax v Lomax* [2019] EWCA Civ 1467 사건으로 사법형 조기중립인평가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두 판결은 상소 분쟁에 관한 것으로, 사건 관리에 대한 법원의 일반적인 권한으로 용이하게 이루어졌다.
69. Peter Jabaly (2010). *IP litigation or ADR: Costing out the decision*.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5(10), 730; Jesse Bennett (2010). *Saving time and money by us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WIPO to the rescue*. *Revista Jurídica UPR*, 79, 389.
70. Blackman and McNeil (n 22).
71. 예를 들어, 리믹스 아티스트(remix artist) 또는 ‘팬 비디오 창작자(vidder)’의 커뮤니티에 대한 Katharina Freund (2014). *Fair use is legal use: Copyright negotiations and strategies in the fan-negotiating community*. *New Media & Society*, 1347, 18 참조.

72. WIPO (2020e). WIPO Arbitration Rules. Geneva: WIPO.  
www.wipo.int/amc/en/arbitration/rules/index.html, 2021년 3월 29일 접속, 규칙 46 및 47.
73.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1958) (“New York Convention”).  
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conventions/foreign\_arbitral\_awards, 2021년 3월 29일 접속.
74. 뉴욕협약, 제5조(Article V).
75. Richard Pike (2003). Dispute resolution: Is expert determination the answer? *New Law Journal*, 153, 1746.
76.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New York, 2018)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제5조(Article 5).  
https://uncitral.un.org/sites/uncitral.un.org/files/media-documents/EN/Texts/JUNCITRAL/Arbitration/mediation\_convention\_v1900316\_eng.pdf.
77. Toshiyuki Kono (2021).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in matters of intellectual property. In Brown, K.B. and D.V. Snyder (eds.), *General Reports of the XVIII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Academy of Comparative Law/ Rapports Généraux du XVIIIème Congrès de l’ Académi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é*. New York: Springer, 393-422.
78. Utpal Bhattacharya, Neal Galpin and Bruce Haslem (2007). The home court advantage in international corporate litigation. *The Journal of Law & Economics*, 50(4), 625.
79. Annet Van Hooff (2016). Brexit and the fu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and arbit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33(7), 541.
80. Gary Born and Peter Rutledge (2018).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in United States Courts* (6<sup>th</sup> edition). Alphen aan den Rijn: Wolters Kluwer, ch. 6; Louise Ellen Teitz (2004). Both sides of the coin: A decade of parallel proceedings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ements in transnational litigation. *Roger Williams University Law Review*, 10(1), 233.
81. Jacques de Werra (2016). Specialised intellectual property court issues and challenges. In de Werra, J. (ed.), *Specialised Intellectual Property Courts: Issues and Challenges*. Strasbourg: CEIPI-ICTSD, 16-41, at 17.
82. *Ibid.*, at 24-26.
83. *Ibid.*, at 26-31.
84. *Ibid.*, at 23.
85. Cook and Garcia (n 49), at 3.
86. Blackman and McNeil (n 22), at 1716-1717.
87. Ignacio de Castro and Andrzej Gadkowski (2020). Confidentiality and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intellectual property mediation and arbitration. In Zeiler, G. and A. Zojer (eds.), *Trade Secrets: Procedural and Substantive Issues*. Vienna: NWV Verlag, pp. 79-90, at 80.
88. WIPO (2020d). WIPO Mediation Rules. Geneva: WIPO.  
www.wipo.int/amc/en/mediation/rules/, 2021년 3월 29일 접속, 규칙 12, 13, 15, 16-18; WIPO (2020<sup>o</sup>). WIPO Arbitration Rules. Geneva: WIPO.  
www.wipo.int/amc/en/arbitration/rules/index.html, 2021년 3월 29일 접속, 규칙 54, 57, 75-78; WIPO (2020f). WIPO Expedited Arbitration Rules. Geneva: WIPO.  
www.wipo.int/amc/en/arbitration/expedited-rules/, 2021년 3월 29일 접속, 규칙 48, 51, 68-71 참조.
89. de Castro and Gadkowski (n 87).
90. 역사적인 제한적 입장은,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1998). Final report on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nd arbitration.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Bulletin, 9(1), 37; William Grantham (1996). The arbitrability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4, 173; Anna P Mantakou (2009). Arbitrabil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n Mistelis, L. and S. Brekoulakis (eds.), *Arbitrability: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Alphen aan den Rijn, Netherlands: Kluwer Law International, at 263 참조.
91. Stef van Gompel (2011). Formalities in Copyright Law: An Analysis of Their History, Rationales and Possible Future. Alphen aan den Rijn, Netherlands: Wolters Kluwer(영국, 유럽 대륙 및 미국의 형식상 절차(formalities)에 대한 역사 참조); 또한 Dev Gangjee, Graeme Dinwoodie, Alexandra Mogyoros and Baao Zhaao (2017). Study on voluntary copyright registration and deposit systems: United States and China. EUIPO Observatory Research Study. Alicante: EUIPO 참조.
92. 저작인격권은 개별 저작자에 대해 인정되며, 여기에는 (저작물의 저작자로 표시될) 성명표시권(right of attribution) 및 (저작물의 왜곡 또는 변경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동일성유지권(right of integrity)이 포함된다. WIPO (2016). *Understanding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Geneva: WIPO, at 14 참조. 추급권은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미술가가 로열티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 로열티는 일반적으로 특정 최저가를 상회하며 특히 미술품 매매업자, 미술관 또는 미술품 경매를 포함한 판매를 대상으로 한다. Nathalie Moureau (2019). Droit de suite. In Marciano, A. and G.B. Ramello (eds.), *Encyclopedia of Law and Economics*. New York: Springer 참조.
93. Dário Moura Vicente (2015). Arbitrability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 comparative survey. *Arbitration International*, 31(1), 151, 159(내부 인용 생략).
94. Hatanaka (n 46), at 405.
95. Jacques De Werra (2013a). Arbitrating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Time to think beyond the issue of (non-) arbitrability. *International Business Law Journal*, 3, 299; Patrick Rohn and Philipp Groz (2012). Drafting arbitration clauses for IP agreements.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Practice*, 7(9652), 652, at 653.
96. Vicente (n 93), at 155-156. 또한 Cook and Garcia (n 49), ch. 4 참조.
97. Intellectual Property Code (France), art. L331-1 (“Les dispositions qui précèdent ne font pas obstacle au recours à l’ arbitrag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x articles 2059 et 2060 du code civil” [전술한 조항은 민법 제2059조 및 제2060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중재회부를 배제하지 않는다]); 합의된 입장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으로, Arbitration Ordinance 2011 (Hong Kong), Pt 11A;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Resolution) Act 2019 (Singapore), s 2 각각 참조.
98. Communication of the Feder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 15 December 1975 (1976) *Swiss Review of Industrial Property and Copyright* 36.
99. 예를 들어, Michael Williams, Rebecca Dunn and Rebecca Smith (n.d.). Australia: Copyright; Neville Cordell and Beverley Potts (n.d.). UK (England and Wales): Copyright; Linh Thi Mai Nguyen and Loc Xuan Le, Vietnam: Copyright: all in Thomson Reuters UK Practical Law, Global Guides: Country Q&A Comparison Tool. London: Thomson Reuters Practical Law.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QACompare/Builder/Country, 2021년 3월 29일 접속, 참조.
100. Copyright Act 1968 (호주).  
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9C00042, 2021년 3월 29일 접속.
101. 본래의 제도는 호주의 1968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 Pt V, s 2AA에 포함되어 있으며, 후주의 2017년 저작권개정(서비스제공자)법(Copyright Amendment (Service Providers) Act 2017)을 통해 확대되었다.
102. Treasury Laws Amendment (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 Bill 2021 (호주).
103.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Decree No. 8469 of June 22, 2015 (브라질), art. 25.
104. 1990년에 처음 제정된 중국 저작권법은 2001년과 2010년에 갱신되었다. 본 보고서 작성 시점에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National People’s Congress)에서 추가 개정이 진행 중이다.
105. Opinion of the People’s Courts on more deeply reforming the diversifie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Diversified Dispute Resolution Opinion, No. 14, SPC, 2016).  
www.court.gov.cn/fabu-xiangqing-22742.html, 2021년 3월 29일 접속.
106. *Ibid.*, arts. 9-10.

107. Ibid., Pts II & IV.
108. Opinion on the Construction of One-Stop Diversifie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nd One-Stop Litigation Service Centers (PKU Law, August 1, 2019). [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chl&Gid=334602](http://www.pkulaw.cn/fulltext_form.aspx?Db=chl&Gid=334602), 2021년 3월 29일 접속.
109. 그러한 서비스는 중국인터넷협회(Internet Society of China, ISC) 및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Hangzhou Intermediate People's Court)에서 제공한다. ISC (2012). People's Mediation Committee of ISC Inaugurated, April 27. [www.isc.org.cn/english/Events&News/ISC\\_Events/listinfo-31549.html](http://www.isc.org.cn/english/Events&News/ISC_Events/listinfo-31549.html), 2021년 3월 29일 접속; CCPIT Hangzhou (2020). Hangzhou launches online mediation platform for IPR, commercial disputes, July 2. [www.ccpithz.org/en/article/8649.html](http://www.ccpithz.org/en/article/8649.html), 2021년 3월 29일 접속.
110. Mimi Zou (2020). Virtual justice in the time of COVID-19. Oxford Business Law Blog, March 16. [www.law.ox.ac.uk/business-law-blog/blog/2020/03/virtual-justice-time-covid-19](http://www.law.ox.ac.uk/business-law-blog/blog/2020/03/virtual-justice-time-covid-19), 2021년 3월 29일 접속.
111. World Forum on Rule of Law in Internet (2019). Chinese Courts and the Internet Judiciary. [http://wfl.court.gov.cn/upload/file/2019/12/03/11/40/20191203114024\\_87277.pdf](http://wfl.court.gov.cn/upload/file/2019/12/03/11/40/20191203114024_87277.pdf), 2021년 3월 29일 접속.
112. DNDA (n.d.) Historia. Buenos Aires: DNDA. <http://derechodeautor.gov.co/historia-centro-de-conciliacion>, 2021년 3월 29일 접속.
113. 콜롬비아 국가저작권국에서는 교대 시스템을 통해 내부 담당자가 조정인으로 선임된다. 콜롬비아 국가저작권국의 조정인 목록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sicaac.gov.co/Reportes/Directorios/Centros](http://www.sicaac.gov.co/Reportes/Directorios/Centros), 2021년 3월 29일 접속.
114. Law 640 of 2001 (콜롬비아), art. 7.
115. Law 640 of 2001 (콜롬비아), art. 35.
116. General Procedural Code (콜롬비아), arts. 589 및 590 (특히 590(1)).
117. Law 640 of 2001 (콜롬비아), art. 35(1).
118. Law 446 of 1998 (콜롬비아), art. 66.
119. 콜롬비아 국가저작권국 2019년 9월 13일에 제공한 정보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사건에 기초한다.
120. WIPO (2014). Mediación OMPI para Controversias en Materia de Derechos de Autor Presentadas ante la Dirección Nacional de Derecho de Autor (DNDA) de Colombia. Geneva: WIPO. [www.wipo.int/amc/es/center/specific-sectors/dnda/](http://www.wipo.int/amc/es/center/specific-sectors/dnda/), 2021년 3월 29일 접속.
121. ONDA (n.d.). Mediación de Conflictos (Conciliación, Mediación y Arbitraje) 참조. <http://onda.gob.do/index.php/servicios/mediacion-de-conflictos>, 2021년 3월 29일 접속.
122. WIPO (2020g). WIPO Lex: Ecuador. Geneva: WIPO. <https://wipo.lex.wipo.int/en/text/439750>, 2021년 3월 29일 접속.
123. Ley de Arbitraje y Mediación de 2006 (에콰도르). <https://ccq.ec/wp-content/uploads/2019/01/Ley-de-Arbitraje-y-Mediacion%CC%81n.pdf>, 2021년 3월 29일 접속.
124. Council Directive 93/83/EEC of 27 September 1993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rules concerning copyright and rights related to copyright applicable to satellite broadcasting and cable retransmission [1993] OJ L 248/15 ( "Satellite and Cable Directive" ).
125. 위성 및 케이블지침, 제11조(Article 11).
126. 위성 및 케이블지침, 설명조항(Recital) 30 및 31.
127. European Commission (2016). Evaluation of the Council Directive 93/83/EEC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Rules Concerning Copyright and Rights Related to Copyright Applicable to Satellite Broadcasting and Cable Retransmission. SWD (2016) 308 final.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부속서(Annex) 2 참조.
128.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2001] OJ L 167/10 ( "InfoSoc Directive" ).
129. Brigitte Lindner (2008).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 remedy for soothing tensions between technological measures and exceptions? In Torremans, P. (ed.), Copyright Law: A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Cheltenham: Edward Elgar, 426-428, at 427.
130. 정보사회지침, 제6조제4항(Article 6(4)).
131. 정보사회지침, 설명조항(Recital) 46.
132. Lucie Guibault, Guido Westkamp and Thomas Rieber-Mohn (2012). Study on the implementation and effect in Member States' Laws of Directive 2001/29/EC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Institute for Information Law Research Paper, 23, 124.
133. Directive 2014/2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rights in musical works for online use in the internal market [2014] OJ L 84/72 ( "CM Directive" ).
134. Daniel Gervais (ed.) (2015).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3<sup>rd</sup> edn). Alphen aan den Rijn: Wolters Kluwer, at Pt II 참조.
135. 집중관리지침, 설명조항(Recital) 49.
136.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2019] OJ L 130/92.
137. Axel Metzger et al. (2020). Selected Aspects of Implementing Article 17 of the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into National Law: Comment of the European Copyright Society. Rochester, NY: SSRN. <https://ssrn.com/abstract=3589323>, 2021년 3월 29일 접속.
138. 이러한 균형은 해당 제도의 남용을 억제해야 하는 이유도 설명한다. Daphne Keller (2020). Testimony and follow-up responses,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 Sub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Hearing on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at 22: How other countries are handling online piracy. Rochester, NY: SSRN. <https://ssrn.com/abstract=3578026> 또는 <http://dx.doi.org/10.2139/ssrn.3578026>, 2021년 3월 29일 접속, at 2-3.
139. João Pedro Quintais et al. (2020). Safeguarding user freedoms in implementing Article 17 of the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Directive: Recommendations from European academics.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Technology and E-Commerce Law, 10, 277, at para 1.
140. HIPO (2020). IP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Budapest: HIPO. [www.sztnh.gov.hu/en/ip-alternative-dispute-resolution](http://www.sztnh.gov.hu/en/ip-alternative-dispute-resolution), 2021년 3월 29일 접속; WIPO (n.d.g).
141. Mediation and Arbitration for Copyright Disputes in Romania. Geneva: WIPO. [www.wipo.int/amc/en/center/specific-sectors/ipoffices/romania/ora.html](http://www.wipo.int/amc/en/center/specific-sectors/ipoffices/romania/ora.html), 2021년 3월 29일 접속.
142. Japan Intellectual Property Arbitration Center (n.d.). Case Statistics. Tokyo: Japan Intellectual Property Arbitration Center 참조. [www.ip-adr.gr.jp/eng/case-ctistics/](http://www.ip-adr.gr.jp/eng/case-ctistics/), 2021년 3월 29일 접속.
143. Ibid. 참조.
144. JPO (n.d.). Intellectual Property Arbitration Portal Site. Tokyo: JPO 참조. [www.jpo.go.jp/e/support/general/chizai\\_chusai\\_portal/index.html](http://www.jpo.go.jp/e/support/general/chizai_chusai_portal/index.html), 2021년 3월 29일 접속.
145. KECOBO (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Nairobi: KECOBO 참조. [www.copyright.go.ke/about-us/csr/12-copyright/23-mediation.html](http://www.copyright.go.ke/about-us/csr/12-copyright/23-mediation.html), 2021년 3월 29일 접속.
146. IMPI Mexico (n.d.). Mediación OMPI para Controversias de Propiedad Intelectual y TICs en México. Geneva: WIPO 참조. [www.gob.mx/cms/uploads/](http://www.gob.mx/cms/uploads/)

- attachment/file/137298/Colaboracion\_IMPI\_Mexico-OMPI\_final.pdf, 2021년 3월 29일 접속.
147. 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 de 1996 (멕시코), art. 217.
148. Ibid., art. 218.
149. Ibid.
150. INDAUTOR (2021) Solicitudes de Procedimientos de Avenencia por año. Mexico City: INDAUTOR 참조. [www.indautor.gob.mx/documentos/informacion-oficial/Graficasavenencias.pdf](http://www.indautor.gob.mx/documentos/informacion-oficial/Graficasavenencias.pdf), 2021년 3월 29일 접속.
151. Laws of the Federation Nigeria 2004 (나이지리아), Ch. C28.
152. WIPO (2020h) Mediation and Arbitration for Copyright Disputes in Nigeria. [www.wipo.int/amc/en/center/specific-sectors/ipoffices/nigeria/index.html](http://www.wipo.int/amc/en/center/specific-sectors/ipoffices/nigeria/index.html), 2021년 3월 29일 접속.
153. IPOPHIL Office Order No. 154. [www.ipophil.gov.ph/ip-mediation/](http://www.ipophil.gov.ph/ip-mediation/), 2021년 3월 29일 접속.
154. IPOPHIL Supplemental Guidelines to Office Order No. 154, s. 2010. <https://drive.google.com/file/d/1R9utP7uohEiWKVLN3v4bR5dS1goAumqa/view>, 2021년 3월 29일 접속.
155. IPOPHIL (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ww.ipophil.gov.ph/ip-mediation/](http://www.ipophil.gov.ph/ip-mediation/), 2021년 3월 29일 접속.
156. WIPO (n.d.h). Agreement and Request for WIPO Mediation in IPOPHIL Proceedings. Geneva: WIPO 참조. [www.wipo.int/export/sites/www/amc/en/docs/ipophl\\_agreementrequest.doc](http://www.wipo.int/export/sites/www/amc/en/docs/ipophl_agreementrequest.doc), 2021년 3월 29일 접속.
157. 조정인에 대한 예시 목록은, WIPO (n.d.i). WIPO Mediation Proceedings Instituted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 (IPOPHIL). Geneva: WIPO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wipo.int/amc/en/center/specific-sectors/ipophil/](http://www.wipo.int/amc/en/center/specific-sectors/ipophil/), 2021년 3월 29일 접속.
158. Ibid.
159. IPOPHIL (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ww.ipophil.gov.ph/ip-mediation/](http://www.ipophil.gov.ph/ip-mediation/), 2021년 3월 29일 접속.
160. 1957년 저작권법 (대한민국), art. 112.
161.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Resolution) Act 2019 (싱가포르) 참조. <https://sso.agc.gov.sg/Acts-Supp/23-2019/>
162. Copyright Act 1987 (싱가포르) 참조. <https://sso.agc.gov.sg/Act/CA1987>, 2021년 3월 29일 접속.
163. IPOS (n.d.b). Copyright. Singapore: IPOS 참조. [www.ipos.gov.sg/understanding-innovation-ip/copyright](http://www.ipos.gov.sg/understanding-innovation-ip/copyright), 2021년 3월 29일 접속.
164. WIPO (n.d.j).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ervices for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n Trinidad and Tobago. Geneva: WIPO 참조. [www.wipo.int/amc/en/center/specific-sectors/ipoffices/trinidadtobago/](http://www.wipo.int/amc/en/center/specific-sectors/ipoffices/trinidadtobago/), 2021년 3월 29일 접속.
165. TTIPO (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ort of Spain: TTIPO 참조. <http://ipo.gov.tt/ipo-news/alternative-dispute-resolution/>, 2021년 3월 29일 접속.
166.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영국), ss 145-152.
167. UK IPO (2019). Copyright Tribunal. London: UK IPO. [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copyright-tribunal](http://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copyright-tribunal), 2021년 3월 29일 접속.
168. Copyright Tribunal Rules 2010, SI 791/2010 (영국), 규칙 19(2).
169. UK IPO (n.d.a). 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London: UK IPO 참조. [www.gov.uk/courts-tribunals/intellectual-property-enterprise-court](http://www.gov.uk/courts-tribunals/intellectual-property-enterprise-court), 2021년 3월 29일 접속.
170. HM Courts & Tribunals Service (2019). 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Guide. London: HMSO.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23201/intellectual-property-enterprise-guide.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23201/intellectual-property-enterprise-guide.pdf), 2021년 3월 29일 접속, 제4.6조제1항(section 4.6(f)) 및 제4.11조(section 4.11). 법원소송에서 ADR 해법을 장려하는 보다 일반적인 내용은 Civil Procedure Practice Direction on Pre-Action Conduct and Protocols, paras 3(d), 8-11 참조. [www.justice.gov.uk/courts/procedure-rules/civil/rules/pd\\_pre-action\\_conduct](http://www.justice.gov.uk/courts/procedure-rules/civil/rules/pd_pre-action_conduct), 2021년 3월 29일 접속.
171. Halsey v Milton Keynes General NHS Trust [2004] EWCA Civ 573; PGF II SA v OMFS Co. [2013] EWCA Civ 1288.
172. UK IPO (2014b). Guidance: Intellectual Property Mediation. London: UK IPO 참조. [www.gov.uk/guidance/intellectual-property-mediation](http://www.gov.uk/guidance/intellectual-property-mediation), 2021년 3월 29일 접속.
173. UK IPO (n.d.b). Mediation Providers. London: UK IPO 참조.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87216/mediation-providers.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87216/mediation-providers.pdf), 2021년 3월 29일 접속.
174. COSOTA (2016). Legal and Dispute Resolution. Dar es Salaam: COSOTA 참조. [www.cosota.go.tz/index.php/2016/05/27/legal-and-dispute-resolution-2/](http://www.cosota.go.tz/index.php/2016/05/27/legal-and-dispute-resolution-2/), 2021년 3월 29일 접속.
175. 의무 중재의 한 형태가 저작권사용료위원회(Copyright Royalty Board(CRB)), (구)저작권사용료중재패널(Copyright Arbitration Royalty Panel(CARP))의 맥락에서 언급된다. 저작권사용료위원회는 법정 라이선스를 감독하고 로열티 요율을 정하는 한편, 법정 라이선스에 적용되는 조건도 정한다.
176. William F Patry (2020). Patry on Copyright. Eagan, MN: Thomson West, at § 17:194.
177. 주요 사건 중 하나가, Saturday Evening Post Co. v. Rumbleseat Press, Inc. 816 F.2d 1191 (7<sup>th</sup> Cir., 1987)이다. 또한, Howard B. Abrams and Tyler T. Ochoa (2019). Law of Copyright. Eagan, MN: Thomson West, at § 13:49 참조.
178. JAMS (n.d.). Intellectual Property (IP) Dispute Resolution: JAMS Intellectual Property Mediation, Arbitration and ADR Services. Washington, D.C.: JAMS. [www.jamsadr.com/intellectual-property](http://www.jamsadr.com/intellectual-property), 2021년 3월 29일 접속;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2021). Practice Areas: The Expertise to Address a World of Disputes. Washington, D.C.: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www.adr.org/commercial](http://www.adr.org/commercial), 2021년 3월 29일 접속, 참조.
179. IFTA (2021). IFTA Arbitration. Los Angeles, CA: IFTA. <https://ifta-online.org/ifta-arbitration/>, 2021년 3월 29일 접속.
180. 해당 법의 본문은 미국의 2021년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21)에 나와 있다. <https://rules.house.gov/sites/democrats.rules.house.gov/files/BILLS-116HR133SA-RCP-116-68.pdf>, 2021년 3월 29일 접속. 배경에 관한 내용은 US Copyright Office (2013). Copyright Small Claims: US Copyright Office Report. Washington, D.C.: US Copyright Office 참조.
181. 배경에 관한 내용은 Lillian Edwards (2010). Role and Responsibility of Internet Intermediaries in the Field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Geneva: WIPO 참조. 국가적 방안에 관한 간략한 내용은 Graeme Dinwoodie (ed.) (2010). Secondary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New York: Springer 참조.
182. US Copyright Office (n 24), at 1.
183. WIPO (n.d.k). Internet Intermediaries and Creative Content. Geneva: WIPO 참조. [www.wipo.int/copyright/en/internet\\_intermediaries/index.html](http://www.wipo.int/copyright/en/internet_intermediaries/index.html), 2021년 3월 29일 접속.
184. 제2장의 유럽연합 섹션, 28쪽 참조.
185.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제2조제6항.
186.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제17조제6항 및 설명조항(Recital) 62 및 66.
187. US Copyright Office (n 24), at 62-63.
188. Paul Keller (2020). How Filters Fail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DSM Directive). Washington, D.C.: InfoJustice. <http://infojustice.org/archives/42401>, 2021년 3월 29일 접속. 대규모의 부정확한 식별 사례는 Jennifer M. Urban, Joe Karaganis, Brianna Schofield (2017). Notice and takedown in everyday

- practice. Ver. 2. UC Berkeley Public Law Research Paper No. 2755628.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참조.
189. Christina Angelopoulos et al. (2015). Study of Fundamental Rights Limitations for Online Enforcement through Self-regulation. Amsterdam: Institute for Information Law (IViR).
190. US Copyright Office (n 24), at 181-182 (내부 인용 생략).
191. 브라질 로펌, 콜롬비아 로펌, 싱가포르 로펌, 스페인 로펌.
192. 중국 로펌, 스페인 로펌.
193. 아르헨티나 집중관리단체.
194. 브라질 컨설팅 기업.
195. 중국 동영상 호스팅 웹사이트.
196. 영국 로펌.
197. 미국 기업.
198. 루마니아 컨설팅 기업.
199. 스페인 집중관리단체, 멕시코 로펌.
200. 일본 집중관리단체, 대한민국 로펌.
201. 그리스 집중관리단체.
202. 아르헨티나 로펌.
203. 아르헨티나 로펌, 중국 동영상 호스팅 웹사이트.
204. 싱가포르 로펌.
205. 영국 로펌.
206. 스위스 기타 응답자.
207. 중국 기술 기업.
208. Shyamkrishna Balganes (2013). The uneasy case against copyright trolls.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86, 723; Jeanne C Fromer (2020). The new copyright opportunist. Journal of the Copyright Society of the USA, 67, 1.
209. 일본 기타 응답자, 파라과이 로펌, 대한민국 기타 응답자, 미국 로펌.
210. 브라질 로펌, 멕시코 로펌, 파라과이 로펌.
211. 덴마크 로펌, 일본 집중관리단체, 스페인 로펌, 스위스 기타 응답자, 영국 로펌.
212.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은 제2장(Chapter 2)에서 저작권 관련 법제도 및 ADR의 채택 부분의 28쪽 내용 참조. 미국의 논쟁은 US Copyright Office (n 24); US Senate Hearings, Sub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Copyright Act at 22: What Is It, Why Was It Enacted, and Where Are We Now? US Senate Hearings, February 11 참조. [www.judiciary.senate.gov/meetings/the-digital-millennium-copyright-act-at-22-what-is-it-why-it-was-enacted-and-where-are-we-now](http://www.judiciary.senate.gov/meetings/the-digital-millennium-copyright-act-at-22-what-is-it-why-it-was-enacted-and-where-are-we-now), 2021년 3월 29일 접속.
213. 브라질 로펌, 대한민국 로펌, 토고 개인.
214. 대한민국 로펌, 중국 동영상 호스팅 웹사이트.
215. 그리스 집중관리단체.
216. 아르헨티나 집중관리단체.
217. 영국 로펌.
218.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교수/법률 컨설턴트.
219. 대한민국 기업.
220. 중국 대학 연구원, 대한민국 로펌.
221. 스페인 로펌, 싱가포르 로펌.
222. 덴마크 로펌.
223. 덴마크 로펌, 중국 로펌.
224. 중국 로펌.
225. 대한민국 기업.
226. 해당 문항의 응답자들은 복수 응답이 가능했다.
227. 필리핀 작곡가협회.
228. 브라질 로펌.
229. 그리스 집중관리단체, 온두라스 로펌, 루마니아 컨설팅 기업, 콜롬비아 로펌.
230. 독일 집중관리단체.
231. 영국 로펌.
232. 미국 컨설팅 기업.
233. 중국 로펌.
234. 중국 대학 연구원.
235. 해당 문항의 응답자들은 복수 응답이 가능했다.
236. 영국 로펌.
237. 아르헨티나 로펌.
238. 콜롬비아 로펌.
239. 스위스 인터넷.
240. 미국 로펌.
241. 아르헨티나 집중관리단체.
242. 독일 집중관리단체.
243. 일본 집중관리단체.
244. 대한민국 기업.
245. 중국 동영상 호스팅 기업, 대한민국 집중관리단체, 대한민국 로펌, 루마니아 컨설팅 기업, 싱가포르 로펌, 짐바브웨 집중관리단체.
246. 독일 기업, 온두라스 로펌, 대한민국 기업, 스페인 로펌.
247. 스페인 로펌.
248. 아르헨티나 집중관리단체, 중국 대기업, 벨기에 로펌, 크로아티아 로펌, 싱가포르 로펌, 스위스 로펌.
249. 아르헨티나 개인, 콜롬비아 개인, 멕시코 개인, 니카라과 개인, 아르헨티나 로펌, 콜롬비아 로펌, 에콰도르 로펌, 인도 로펌, 이탈리아 로펌, 멕시코 로펌, 나이지리아 로펌, 폴란드 로펌, 페루 로펌, 싱가포르 로펌, 남아프리카공화국 로펌, 스페인 로펌, 튀르키예 로펌, 우간다 로펌.
250. 이탈리아 로펌, 파라과이 로펌.
251. 에콰도르 로펌, 콜롬비아 로펌.
252. 잠비아 집중관리단체.
253. 캄보디아 개인.
254. 아르헨티나 집중관리단체, 불가리아 집중관리단체, 아르헨티나 로펌.
255. 아르헨티나 로펌, 브라질 로펌, 중국 로펌, 멕시코 로펌, 페루 로펌, 스페인 로펌.
256. 스페인 집중관리단체, 인도네시아 산업협회.
257. 프랑스 집중관리단체.
258. 벨기에 로펌, 케냐 로펌, 르완다 로펌.
259. 필리핀 기타 응답자.
260. 독일 기타 응답자, 말레이시아 기타 응답자, 트리니다드토바고 기타 응답자, 스페인 중소기업.
261. 짐바브웨 집중관리단체, 아르헨티나 로펌, 벨기에 로펌, 브라질 로펌, 에콰도르 로펌, 인도 로펌, 이탈리아 로펌, 멕시코 로펌, 페루 로펌, 브라질 기타 응답자, 칠레 기타 응답자, 엘살바도르 기타 응답자, 페루 기타 응답자.
262. 아르헨티나 집중관리단체, 중국 대기업, 벨기에 로펌, 캐나다 로펌, 콜롬비아 로펌, 중국 로펌, 에콰도르 로펌, 말레이시아 로펌, 멕시코 로펌, 부탄 기타 응답자, 인도 기타 응답자, 일본 기타 응답자, 쿠웨이트 기타 응답자, 멕시코 기타 응답자, 나이지리아 기타 응답자, 폴란드 기타 응답자, 스리랑카 기타 응답자.
263. 칠레 학자, 인도 개인.
264. 중국 대기업, 인도 대기업, 아르헨티나 로펌.
265. 가나 집중관리단체, 파라과이 집중관리단체, 페루 집중관리단체, 스페인 집중관리단체, 스웨덴 집중관리단체, 보츠와나 중소기업, 브라질 중소기업, 쿠바 중소기업, 프랑스 중소기업, 독일 중소기업, 일본 중소기업.
266. 브라질 로펌, 쿠바 로펌, 멕시코 로펌, 파키스탄 로펌, 페루 로펌, 남아프리카공화국 로펌, 스페인 로펌, 베트남 로펌.
267. 호주 로펌.
268. 케냐 집중관리단체, 짐바브웨 집중관리단체, 콜롬비아 개인, 멕시코 개인, 니카라과 개인, 스페인 개인, 토고 개인, 짐바브웨 개인, 브라질 중소기업, 카메룬 중소기업, 방글라데시 기타 응답자, 베냉 기타 응답자, 보츠와나 기타 응답자, 브라질 기타 응답자, 부르키나파소 기타 응답자, 부룬디 기타 응답자, 카메룬 기타 응답자, 가봉 기타 응답자, 멕시코 기타 응답자, 페루 기타 응답자, 르완다 기타 응답자, 사모아 기타 응답자, 스페인 기타 응답자, 튀니지 기타 응답자, 튀르키예 기타 응답자, 우즈베키스탄 기타 응답자, 바누아투 기타 응답자.
269. 잠비아 집중관리단체, 아르헨티나 로펌, 부르키나파소 로펌, 콜롬비아 로펌, 크로아티아 로펌, 쿠바 로펌, 에콰도르 로펌, 나이지리아 로펌, 파라과이 로펌, 페루 로펌, 스페인 로펌, 트리니다드토바고 로펌, 우간다 로펌, 쿠바 중소기업, 독일 중소기업.
270. 크로아티아 로펌, 온두라스 로펌, 이탈리아 로펌, 르완다 로펌, 남아프리카공화국 로펌.
271. 멕시코 로펌, 폴란드 로펌.
272. 스위스 로펌.
273.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제13조에 따라 회원국들은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을 도와줄 공정한 조정인 단체를 설립하거나 지정해야 하며, 이러한 조정인 단체는 적절한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제안을 할 수도 있다.
274.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제21조.
275.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제17조제9항.
276. UNCITRAL (2017). UNCITRAL Technical Note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Vienna: UNCITRAL, at vii.
277. Regulation (EU) No. 524/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May 2013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for consumer

- disputes and amending Regulation (EC) No 2006/2004 and Directive 2009/22/EC [2013] OJ L 165/1 (“Consumer ODR Regulation”).
278. Richard Susskind (2004). *Online Courts and the Future of Jus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추가 참조.
279. WIPO (n.d.b). *Online Case Administration Tools*. Geneva: WIPO. [www.wipo.int/amc/en/eadr/](http://www.wipo.int/amc/en/eadr/), 2021년 3월 29일 접속.
280. WIPO (n.d.l). *WIPO Checklist for the Online Conduct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Proceedings*. Geneva: WIPO. [www.wipo.int/amc/en/eadr/checklist](http://www.wipo.int/amc/en/eadr/checklist), 2021년 3월 29일 접속.
281. WIPO (n.d.m). *WIPO eADR*. Geneva: WIPO. [www.wipo.int/amc/en/eadr/wipoeadr/](http://www.wipo.int/amc/en/eadr/wipoeadr/), 2021년 3월 29일 접속.
282. XinhuaNet (2018). Hangzhou Internet court adopts blockchain to protect copyright of online literature, December 8. [www.xinhuanet.com/english/2018-12/08/c\\_137658750.htm](http://www.xinhuanet.com/english/2018-12/08/c_137658750.htm), 2021년 3월 29일 접속.
283. Anne Rose (2020). *Blockchain: Transforming the registration of IP rights and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unregistered IP rights*. WIPO Magazine, July. [www.wipo.int/wipo\\_magazine\\_digital/en/2020/article\\_0002.html](http://www.wipo.int/wipo_magazine_digital/en/2020/article_0002.html), 2021년 3월 29일 접속; Michele Finck and Valentina Moscon (2019). *Copyright law on blockchains: Between new forms of rights administration and digital rights management 2.0*. IIC International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Law, 50, 77.
284. Giancarlo Frosio (2020). *Algorithmic enforcement online*. In Torremans, P. (ed.),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4<sup>th</sup> edition). Alphen aan den Rijn: Kluwer Law International, at 709.
285. 제4장의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위한 WIPO 조정 및 중재 부분에서 분쟁의 유형 12번 참조.
286. 제2장의 저작권 관련 법제도 및 ADR의 채택 부분 참조.
287. 제3장의 분쟁의 성격 및 분쟁 결과 부분, pp. 38-44 참조.
288. 제2장의 저작권 관련 법제도 및 ADR의 채택 부분 참조.
289. 제3장의 분쟁의 성격 부분 참조.
290. 제3장의 분쟁의 성격 부분 참조.
291.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제19조제1항에서는 “회원국들이 저작자와 실연자가 자신의 저작물 및 실연의 이용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관련 정보, 특히 이용 방식, 총 발생 수익 및 보상액과 관련한 정보를, 그들이 라이선스를 제공했거나 권리를 양도한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권리 승계인으로부터, 각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적어도 1년에 한 번 입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규정한다.
292.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제20조제1항은 “본래 합의된 보상이 해당 저작물 또는 실연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차후의 모든 관련 수익에 비해 불비례하게 낮은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에 적용된다.
293. 제3장의 분쟁의 성격 부분 참조.
294. 제3장의 분쟁 결과 부분 참조.
295. 제3장의 분쟁 결과 부분 참조.
296. 영국 로펌과의 인터뷰.
297. 제3장의 분쟁의 성격 부분 참조.
298. 제4장의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 및 도구의 효과적인 활용 부분 참조.
299. 제2장의 IP 분쟁 해결을 위한 ADR 부분 참조.

# References

- Abrams, H.B. and T.T. Ochoa (2019). *Law of Copyright*. Eagan, MN: Thomson West.
- Adamo, K.R. (2011). Over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context. *Global Business Law Review*, 2(1), 7.
- AIPPI (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Zurich: AIPPI. Available at: <https://aippi.org/about-aippi/committees/adr/>, accessed March 29, 2021.
-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2021). *Practice Areas: The Expertise to Address a World of Disputes*. Washington, D.C.: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vailable at: [www.adr.org/commercial](http://www.adr.org/commercial), accessed March 29, 2021.
-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2015). Comments Submitted pursuant to Notice of Inquiry regarding “Copyright Protection for Certain Visual Works” Apr. 24, 2015. *Federal Register*, 80(23054), July 23. Available at: [www.aipla.org/docs/default-source/advocacy/documents/aiplacommentstocopyrightofficeonvisualworks.pdf](http://www.aipla.org/docs/default-source/advocacy/documents/aiplacommentstocopyrightofficeonvisualworks.pdf), accessed March 29, 2021.
- Angelopoulos, C., A. Brody, W. Hins, B. Hugenholtz, P. Leerssen, T. Margoni, T. McGonagle, O. van Daalen and J. van Hoboken (2015). *Study of Fundamental Rights Limitations for Online Enforcement through Self-regulation*. Amsterdam: Institute for Information Law (IVIR).
- Balganesh, S. (2013). The uneasy case against copyright trolls.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86, 723.
- Bennett, J. (2010). Saving time and money by us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WIPO to the rescue. *Revista Jurídica UPR*, 79, 389.
- Bhattacharya, U., N. Galpin and B. Haslem (2007). The home court advantage in international corporate litigation. *The Journal of Law & Economics*, 50(4), 625.
- Blackman, S.H. and R.M. McNeill (1997).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commerci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merican University Law Review*, 47, 1709.
- Born, G. and P. Rutledge (2018).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in United States Courts* (6th edition). Alphen aan den Rijn: Wolters Kluwer.
-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Hangzhou Committee (CCPIT Hangzhou) (2020). Hangzhou launches online mediation platform for IPR, commercial disputes, July 2. Available at: [www.ccpithz.org/en/article/8649.html](http://www.ccpithz.org/en/article/8649.html), accessed March 29, 2021.
- Cook, T. (2014). *ADR as a Tool for Intellectual Property (IP) Enforcement*. WIPO/ACE/9/3. Geneva: WIPO 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 Cook, T. and A. Garcia (2010).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rbitration*. Alphen aan den Rijn: Wolters Kluwer.
- Cooper, E. and S. Burrow (2019). Photographic copyright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in historical perspective. *Legal Studies*, 39(1), 143.
- Copyright Society of Tanzania (COSOTA) (2016). *Legal and Dispute Resolution*. Dar es Salaam: COSOTA. Available at: [www.cosota.go.tz/index.php/2016/05/27/legal-and-dispute-resolution-2/](http://www.cosota.go.tz/index.php/2016/05/27/legal-and-dispute-resolution-2/), accessed March 29, 2021.
- Cordell, N. and B. Potts (n.d.). UK (England and Wales): Copyright. In Thomson Reuters UK Practical Law, *Global Guides: Country Q&A Comparison Tool*. London: Thomson Reuters Practical Law. Available at: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QACompare/Builder/Country>, accessed March 29, 2021.
- de Castro, I. and A.J. Gadkowski (2020). Confidentiality and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intellectual property mediation and arbitration. In Zeiler, G. and A. Zojer (eds.), *Trade Secrets: Procedural and Substantive Issues*. Vienna: NWV Verlag, 79–90.
- De Ly, F. and P.A. Gélinas (eds.) (2017). *Dispute Prevention and Settlement through Expert Determination and Dispute Boards*. Paris: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de Werra, J. (2013a). Arbitrating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Time to think beyond the issue of (non-)arbitrability. *International Business Law Journal*, 3, 299.
- de Werra, J. (2013b). *Research Handbook on Intellectual Property Licensing*. Cheltenham: Edward Elgar.
- de Werra, J. (2016). Specialised intellectual property court issues and challenges. In de Werra, J. (ed.), *Specialised Intellectual Property Courts: Issues and Challenges*. Strasbourg: CEIPI–ICTSD, 16–41.
- Dinwoodie, G. (ed.) (2010). *Secondary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New York: Springer.
- Dirección Nacional de Derecho de Autor (DNDA) (n.d.) *Historia*. Buenos Aires: DNDA. Available at: <http://derechodeautor.gov.co/historia-centro-de-conciliacion>, accessed March 29, 2021.
- Edwards, L. (2010). *Role and Responsibility of Internet Intermediaries in the Field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Geneva: WIPO.
- European Commission (2015). *Towards a Modern, More European Copyright Framework*. COM/2015/0626 final.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Commission (2016). Evaluation of the Council Directive 93/83/EEC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Rules Concerning Copyright and Rights Related to Copyright Applicable to Satellite Broadcasting and Cable Retransmission. SWD (2016) 308 final.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Finck, M. and V. Moscon (2019). Copyright law on blockchains: Between new forms of rights administration and digital rights management 2.0. *IIC International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Law*, 50, 77.
- Freund, K. (2014). Fair use is legal use: Copyright negotiations and strategies in the fan-vidding community. *New Media & Society*, 1347, 18.
- Fromer, J.C. (2020). The new copyright opportunist. *Journal of the Copyright Society of the USA*, 67, 1.
- Frosio, G. (2020). Algorithmic enforcement online. In Torremans, P. (ed.),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4th edition). Alphen aan den Rijn: Kluwer Law International.
- Gangjee, D., G. Dinwoodie, A. Mogyoros and B. Zhaao (2017). Study on voluntary copyright registration and deposit systems: United States and China. EUIPO Observatory Research Study. Alicante: EUIPO.
- Gervais, D. (ed.) (2015).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3rd edn). Alphen aan den Rijn: Wolters Kluwer.
- Grantham, W. (1996). The arbitrability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4, 173.
- Guibault, L., G. Westkamp and T. Rieber-Mohn (2012). Study on the implementation and effect in Member States' Laws of Directive 2001/29/EC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Institute for Information Law Research Paper, 23, 124.
- Hatanaka, A.W. (2018). Optimising medi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law: Perspectives from EU, French and UK law. *IIC International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on Law*, 49, 384.
- HM Courts & Tribunals Service (2019). *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Guide*. London: HMSO. Available at: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23201/intellectual-property-enterprise-guide.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23201/intellectual-property-enterprise-guide.pdf), accessed March 29, 2021.
- Hungar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IPO) (2020). *IP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Budapest: HIPO. Available at: [www.sztnh.gov.hu/en/ip-alternative-dispute-resolution](http://www.sztnh.gov.hu/en/ip-alternative-dispute-resolution), accessed March 29, 2021.
- Independent Film and Television Alliance (IFTA) (2021). *IFTA Arbitration*. Los Angeles, CA: IFTA. Available at: <https://ifta-online.org/ifta-arbitration/>, accessed March 29, 2021.
- 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 (IMPI Mexico) (n.d.). *Mediación OMPI para Controversias de Propiedad Intelectual y TICs en México*. Geneva: WIPO. Available at: [www.gob.mx/cms/uploads/attachment/file/137298/Colaboracion\\_IMPI\\_Mexico-OMPI\\_final.pdf](http://www.gob.mx/cms/uploads/attachment/file/137298/Colaboracion_IMPI_Mexico-OMPI_final.pdf), accessed March 29, 2021.
- Instituto Nacional del Derecho de Autor (INDAUTOR) (2021) *Solicitudes de Procedimientos de Avenencia por año*. Mexico City: INDAUTOR. Available at: [www.indautor.gob.mx/documentos/informacion-oficial/Graficasavenencias.pdf](http://www.indautor.gob.mx/documentos/informacion-oficial/Graficasavenencias.pdf), accessed March 29, 2021.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 (n.d.a). *Growing your Business with IP: Funding*. Singapore: IPOS. Available at: [www.ipos.gov.sg/manage-ip/funding](http://www.ipos.gov.sg/manage-ip/funding), accessed March 29, 2021.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 (n.d.b). *Copyright*. Singapore: IPOS. Available at: [www.ipos.gov.sg/understanding-innovation-ip/copyright](http://www.ipos.gov.sg/understanding-innovation-ip/copyright), accessed March 29, 2021.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 (IPOPIL) (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vailable at: [www.ipophil.gov.ph/ip-mediation/](http://www.ipophil.gov.ph/ip-mediation/), accessed March 29, 2021.
-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Mediation Committee (2015). *Mediation as an alternative method to resolv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BA Newsletter, July 29. Available at: [www.ibanet.org/Article/Detail.aspx?ArticleUid=09317ae5-7898-4c9a-b8e4-b7122ca59364](http://www.ibanet.org/Article/Detail.aspx?ArticleUid=09317ae5-7898-4c9a-b8e4-b7122ca59364), accessed March 29, 2021.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1998). *Final report on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nd arbitration*.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Bulletin, 9(1), 37.
-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INTA) (2021).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New York: INTA. Available at: [www.inta.org/committees/alternative-dispute-resolution-committee/](http://www.inta.org/committees/alternative-dispute-resolution-committee/), accessed March 29, 2021.
- Internet Society of China (ISC) (2012). *People's Mediation Committee of ISC Inaugurated*, 27 April. Available at: [www.isc.org.cn/english/Events&News/ISC\\_Events/listinfo-31549.html](http://www.isc.org.cn/english/Events&News/ISC_Events/listinfo-31549.html), accessed March 29, 2021.
- Jabaly, P. (2010). IP litigation or ADR: Costing out the decision.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5(10), 730.
- Jackson, R. (2018). *Was it all worth it? Lecture to the Cambridge Law Faculty*, March 5. Available at: [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18/03/speech-jackson-was-it-all-worth-it-mar2018.pdf](http://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2018/03/speech-jackson-was-it-all-worth-it-mar2018.pdf), accessed March 29, 2021.

- JAMS (n.d.). Intellectual Property (IP) Dispute Resolution: JAMS Intellectual Property Mediation, Arbitration and ADR Services. Washington, D.C.: JAMS. Available at: [www.jamsadr.com/intellectual-property](http://www.jamsadr.com/intellectual-property), accessed March 29, 2021.
- Japan Intellectual Property Arbitration Center (n.d.). Case Statistics. Tokyo: Japan Intellectual Property Arbitration Center. Available at: [www.ip-adr.gr.jp/eng/case-statistics/](http://www.ip-adr.gr.jp/eng/case-statistics/), accessed March 29, 2021.
- Japan Patent Office (JPO) (1998). HANTEI (Advisory Opinion on the technical scope of a patented invention). Tokyo: JPO. Available at: [www.jpo.go.jp/e/system/trial\\_appeal/shubetu-hantei/](http://www.jpo.go.jp/e/system/trial_appeal/shubetu-hantei/), accessed March 29, 2021.
- Japan Patent Office (JPO) (n.d.). Intellectual Property Arbitration Portal Site. Tokyo: JPO. Available at: [www.jpo.go.jp/e/support/general/chizai\\_chusai\\_portal/index.html](http://www.jpo.go.jp/e/support/general/chizai_chusai_portal/index.html), accessed March 29, 2021.
- Keller, D. (2020). Testimony and follow-up responses,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 Sub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Hearing on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at 22: How other countries are handling online piracy. Rochester, NY: SSRN. Available at: <https://ssrn.com/abstract=3578026> or <http://dx.doi.org/10.2139/ssrn.3578026>, accessed March 29, 2021.
- Keller, P. (2020). How Filters Fail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DSM Directive). Washington, D.C.: InfoJustice. Available at: <http://infojustice.org/archives/42401>, accessed March 29, 2021.
- Kenya Copyright Board (KECOBO) (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Nairobi: KECOBO. Available at: [www.copyright.go.ke/about-us/csr/12-copyright/23-mediation.html](http://www.copyright.go.ke/about-us/csr/12-copyright/23-mediation.html), accessed March 29, 2021.
- Kim, K.-Y. and U. Khalil (2016). The procedural benefits of arbitrating patent disputes.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26, 50.
- Kono, T. (2021).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in matters of intellectual property. In Brown, K.B. and D.V. Snyder (eds.), *General Reports of the XVIII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Academy of Comparative Law/ Rapports Généraux du XVIIIème Congrès de l'Académi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é*. New York: Springer, pp. 393–422.
- Korea Copyright Commission (2018). Annual Report. Seoul: Korea Copyright Commission. Available at: [www.copyright.or.kr/eng/activities/annual-report/index.do](http://www.copyright.or.kr/eng/activities/annual-report/index.do), accessed March 29, 2021.
- Korea Copyright Commission (n.d.). ADR Mediation. Seoul: Korea Copyright Commission. Available at: [www.copyright.or.kr/eng/service/adr/conciliation.do](http://www.copyright.or.kr/eng/service/adr/conciliation.do), accessed March 29, 2021.
- Korean Content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KCDRC) (n.d.). 콘텐츠분야 국제분쟁해결을 위.한콘텐츠분. Seoul: KCDRC. Available at: [www.kcdrc.kr/guid04.do](http://www.kcdrc.kr/guid04.do), accessed March 29, 2021.
- Kotb, A. (2017).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 remains a better final and binding alternative than expert determination. *Queen Mary Law Journal*, 8, 125.
- Lindner, B. (2008).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 remedy for soothing tensions between technological measures and exceptions? In Torremans, P. (ed.), *Copyright Law: A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Cheltenham: Edward Elgar, 426–428.
- Litman, J.D. (2006). *Digital Copyright* (2nd edn). Amherst, NY: Prometheus Books.
- Mantakou, A.P. (2009). Arbitrability and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n Mistelis, L. and S. Brekoulakis (eds.), *Arbitrability: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Alphen aan den Rijn, Netherlands: Kluwer Law International.
- Mazziotti, G. (2008). *EU Digital Copyright Law and the End-User*. Berlin: Springer.
- Metzger, A., M. Senftleben, E. Derclaye, T. Dreier, C. Geiger, J. Griffiths, R. Hilty, P.B. Hugenholtz, T. Riis, O.A. Rogstad, A.M. Strowel, T. Synodinou and R. Xalabarder (2020). Selected Aspects of Implementing Article 17 of the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into National Law: Comment of the European Copyright Society. Rochester, NY: SSRN. Available at <https://ssrn.com/abstract=3589323>, accessed March 29, 2021.
- Min, E.-J. and J.C. Wichard (2018). Cross-border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In Dreyfuss, R. and J. Pila (eds), *The Oxford Handbook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687–719.
- Moureau, N. (2019). Droit de suite. In Marciano, A. and G.B. Ramello (eds.), *Encyclopedia of Law and Economics*. New York: Springer.
- Nguyen, L.T.M. and Xuan Le, L. (n.d.). Vietnam: Copyright UK (England and Wales): Copyright. In Thomson Reuters UK Practical Law, *Global Guides: Country Q&A Comparison Tool*. London: Thomson Reuters Practical Law. Available at: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QACompare/Builder/Country>, accessed March 29, 2021.
- Oficina Nacional de Derecho de Autor (ONDA) (n.d.). Mediación de Conflictos (Conciliación, Mediación y Arbitraje). Available at: <http://onda.gob.do/index.php/servicios/mediacion-de-conflictos>, accessed March 29, 2021.

- Ormsbee, M.H. (2011). Music to everyone's ears: Binding mediation in music rights disputes. *Cardozo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3, 225.
- Osborne, J.W. (2013). *Best Practices in Data Cleaning: A Complete Guide to Everything You Need to Do Before and After Collecting your Data*. Thousand Oaks, CA: Sage.
- Patry, W.F. (2020). *Patry on Copyright*. Eagan, MN: Thomson West.
- Pike, R. (2003). Dispute resolution: Is expert determination the answer? *New Law Journal*, 153, 1746.
-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2016). *Pre-empting and Resolving Technology, Media and Telecoms Disputes: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Survey*. London: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Available at: [www.arbitration.qmul.ac.uk/media/arbitration/docs/Fixing\\_Tech\\_report\\_online\\_singles.pdf](http://www.arbitration.qmul.ac.uk/media/arbitration/docs/Fixing_Tech_report_online_singles.pdf), accessed March 29, 2021.
- Quintais, J.P., G. Frosio, S. Van Gompel, P. Bernt Hugenholtz, M. Husovec, B.J. Jütte and M. Senftleben (2020). Safeguarding user freedoms in implementing Article 17 of the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Directive: Recommendations from European academics.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Technology and E-Commerce Law*, 10, 277.
- Rohn, P. and P. Groz (2012). Drafting arbitration clauses for IP agreements.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Practice*, 7(9652), 652.
- Rose, A. (2020). Blockchain: Transforming the registration of IP rights and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unregistered IP rights. *WIPO Magazine*, July. Available at: [www.wipo.int/wipo\\_magazine\\_digital/en/2020/article\\_0002.html](http://www.wipo.int/wipo_magazine_digital/en/2020/article_0002.html), accessed March 29, 2021.
- Rule, C. (2016). Is ODR ADR? A response to Carrie Menkel-Meadow. *International Journal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3(1), 11.
- Rustad, M.L., R. Buckingham, D. D'Angelo and K. Durlacher (2011). An empirical report of predispute mandatory arbitration clauses in social media terms of service agreements. *UALR Law Review*, 34, 643.
- Sag, M. (2019). Empirical studies of copyright litigation. In Menell, P. and D. Schwartz (eds.), *Research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Vol. II: Analytical Methods. Cheltenham: Edward Elgar, 511–532.
- Sander, F.E.A. (1976). Varieties of dispute resolution. Address delivered at the National Conference on the Causes of Popular Dissatisfaction with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Federal Rules Decisions*, 79, 70.
- Stork, A. (1988). The use of arbitration in copyright disputes: *IBM v. Fujitsu*. *High Technology Law Journal*, 3, 241.
- Susskind, R. (2004). *Online Courts and the Future of Jus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echnology Transfer an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TIPO) (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ort of Spain: TTIPO. Available at: <http://ipo.gov.tt/ipo-news/alternative-dispute-resolution/>, accessed March 29, 2021.
- Teitz, L.E. (2004). Both sides of the coin: A decade of parallel proceedings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ements in transnational litigation. *Roger Williams University Law Review*, 10(1), 233.
- Thompson, R. and M. Sacksteder (1998). Judicial strategies for resolving intellectual property cases without trial: Early neutral evaluation. *Journal of World Intellectual Property*, 1(4), 643.
- Thomson Reuters UK Practical Law (n.d.). *Global Guides: Country Q&A Comparison Tool*. London: Thomson Reuters Practical Law. Available at: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QACompare/Builder/Country>, accessed March 29, 2021.
- Towse, R. (ed.) (2013). *Handbook on the Digital Creative Economy*. Cheltenham: Edward Elgar.
-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 (2014a). *Opinions: Resolving Patent Disputes*. London: UK IPO. Available at: [www.gov.uk/guidance/opinions-resolving-patent-disputes](http://www.gov.uk/guidance/opinions-resolving-patent-disputes), accessed March 29, 2021.
-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 (2014b). *Guidance: Intellectual Property Mediation*. London: UK IPO. Available at: [www.gov.uk/guidance/intellectual-property-mediation](http://www.gov.uk/guidance/intellectual-property-mediation), accessed March 29, 2021.
-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 (2019). *Copyright Tribunal*. London: UK IPO. Available at: [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copyright-tribunal](http://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copyright-tribunal), accessed March 29, 2021.
-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 (2020a). *Intellectual Property Mediation*. London: UK IPO. Available at: [www.gov.uk/guidance/intellectual-property-mediation](http://www.gov.uk/guidance/intellectual-property-mediation), accessed March 29, 2021.
-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 (2020b). *Resolving IP Disputes. IP Health Check 5*. London: UK IPO. Available at: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55845/Resolving\\_IP\\_Disputes.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55845/Resolving_IP_Disputes.pdf), accessed March 29, 2021.
-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 (n.d.a). *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London: UK IPO. Available at: [www.gov.uk/courts-tribunals/intellectual-property-enterprise-court](http://www.gov.uk/courts-tribunals/intellectual-property-enterprise-court), accessed March 29, 2021.

-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 (n.d.b). Mediation Providers. London: UK IPO. Available at: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87216/mediation-providers.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87216/mediation-providers.pdf), accessed March 29, 2021.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2017). UNCITRAL Technical Note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Vienna: UNICITRAL.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2018). Creative Economy Outlook: Trends in International Trade in Creative Industries. UNCTAD/DITC/TED/2018/3. Geneva: UNCTAD.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a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08). Creative Economy Report 2008. The Challenges of Assessing the Creative Economy: Towards Informed Policy Making. UNCTAD/DITC/2008/2. Geneva: UNCTAD/UNDP.
- Urban, J.M., J. Karaganis and B. Schofield (2017). Notice and takedown in everyday practice. Ver. 2. UC Berkeley Public Law Research Paper No. 2755628.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 US Copyright Office (2013). Copyright Small Claims: US Copyright Office Report. Washington, D.C.: US Copyright Office.
- US Copyright Office (2015a). Section 512 of Title 17: A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Washington, D.C.: US Copyright Office.
- US Copyright Office (2015b). Copyright and the Music Marketplace. Washington, D.C.: US Copyright Office.
- US Senate Hearings, Sub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2020).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at 22: What Is It, Why Was It Enacted, and Where Are We Now? US Senate Hearings, February 11. Available at: [www.judiciary.senate.gov/meetings/the-digital-millennium-copyright-act-at-22-what-is-it-why-it-was-enacted-and-where-are-we-now](http://www.judiciary.senate.gov/meetings/the-digital-millennium-copyright-act-at-22-what-is-it-why-it-was-enacted-and-where-are-we-now), accessed March 29, 2021.
- van Gompel, S. (2011). Formalities in Copyright Law: An Analysis of Their History, Rationales and Possible Future. Alphen aan den Rijn, Netherlands: Wolters Kluwer.
- Van Hoof, A. (2016). Brexit and the fu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and arbit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33(7), 541.
- Vicente, D.M. (2015). Arbitrability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 comparative survey. *Arbitration International*, 31(1), 151.
- Vitoria, M. (2006). Medi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Practice*, 1, 398.
- Williams, M., R. Dunn and R. Smith (n.d.). Australia: Copyright. In Thomson Reuters UK Practical Law, Global Guides: Country Q&A Comparison Tool. London: Thomson Reuters Practical Law. Available at: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QACompare/Builder/Country>, accessed March 29, 2021.
- WIPO (2013). International Survey on Dispute Resolution in Technology Transactions. Geneva: WIPO. Available at: [www.wipo.int/amc/en/center/survey/](http://www.wipo.int/amc/en/center/survey/), accessed March 29, 2021.
- WIPO (2014). Mediación OMPI para Controversias en Materia de Derechos de Autor Presentadas ante la Dirección Nacional de Derecho de Autor (DNDA) de Colombia. Geneva: WIPO. Available at: [www.wipo.int/amc/es/center/specific-sectors/dnda/](http://www.wipo.int/amc/es/center/specific-sectors/dnda/), accessed March 29, 2021.
- WIPO (2015). Guide on Surveying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the Copyright-Based Industries. Geneva: WIPO.
- WIPO (2016). Understanding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Geneva: WIPO.
- WIPO (2018a). Guide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ptions for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and Courts. Geneva: WIPO. Available at: [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342&plang=EN](http://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342&plang=EN), accessed March 29, 2021.
- WIPO (2018b). Guide to Mediation. Geneva: WIPO.
- WIPO (2020a). MCST–WIPO Collaboration: Mediation for International Copyright and Content-Related Disputes. Available at: [www.wipo.int/amc/en/center/specific-sectors/ipoffices/korea/mcst/](http://www.wipo.int/amc/en/center/specific-sectors/ipoffices/korea/mcst/), accessed March 29, 2021.
- WIPO (2020b). WIPO Caseload Summary. Geneva: WIPO. Available at: [www.wipo.int/amc/en/center/caseload.html](http://www.wipo.int/amc/en/center/caseload.html), accessed March 29, 2021.
- WIPO (2020c). WIPO Mediation, Arbitration, Expedited Arbitration and Expert Determination Rules and Clauses. Geneva: WIPO.
- WIPO (2020d). WIPO Mediation Rules. Geneva: WIPO. Available at: [www.wipo.int/amc/en/mediation/rules/](http://www.wipo.int/amc/en/mediation/rules/), accessed March 29, 2021.
- WIPO (2020e). WIPO Arbitration Rules. Geneva: WIPO. Available at: [www.wipo.int/amc/en/arbitration/rules/index.html](http://www.wipo.int/amc/en/arbitration/rules/index.html), accessed March 29, 2021.
- WIPO (2020f). WIPO Expedited Arbitration Rules. Geneva: WIPO. Available at: [www.wipo.int/amc/en/arbitration/expedited-rules/](http://www.wipo.int/amc/en/arbitration/expedited-rules/), accessed March 29, 2021.
- WIPO (2020g). WIPO Lex: Ecuador. Geneva: WIPO. Available at: <https://wipolex.wipo.int/en/text/439750>, accessed March 29, 2021.

WIPO (2020h) Mediation and Arbitration for Copyright Disputes in Nigeria. Available at: [www.wipo.int/amc/en/center/specific-sectors/ipoffices/nigeria/index.html](http://www.wipo.int/amc/en/center/specific-sectors/ipoffices/nigeria/index.html), accessed March 29, 2021.

WIPO (n.d.a). Copyright. Geneva: WIPO. Available at: [www.wipo.int/copyright/](http://www.wipo.int/copyright/), accessed March 29, 2021.

WIPO (n.d.b). Online Case Administration Tools. Geneva: WIPO. Available at: [www.wipo.int/amc/en/eadr/](http://www.wipo.int/amc/en/eadr/), accessed March 29, 2021.

WIPO (n.d.c). WIPO ADR Procedures. Geneva: WIPO. Available at: [www.wipo.int/amc/en/center/wipo-adr.html](http://www.wipo.int/amc/en/center/wipo-adr.html), accessed March 29, 2021.

WIPO (n.d.d). What Is WIPO Expedited Arbitration? Geneva: WIPO. Available at: [www.wipo.int/amc/en/arbitration/what-is-exp-arb.html](http://www.wipo.int/amc/en/arbitration/what-is-exp-arb.html), accessed March 29, 2021.

WIPO (n.d.e). Why Expert Determination in Intellectual Property? Geneva: WIPO. Available at: [www.wipo.int/amc/en/expert-determination/why-is-exp.html](http://www.wipo.int/amc/en/expert-determination/why-is-exp.html), accessed March 29, 2021.

WIPO (n.d.f). What Is WIPO Expert Determination? Geneva: WIPO. Available at: [www.wipo.int/amc/en/expert-determination/what-is-exp.html](http://www.wipo.int/amc/en/expert-determination/what-is-exp.html), accessed March 29, 2021.

WIPO (n.d.g). Mediation and Arbitration for Copyright Disputes in Romania. Geneva: WIPO. Available at: [www.wipo.int/amc/en/center/specific-sectors/ipoffices/romania/orda.html](http://www.wipo.int/amc/en/center/specific-sectors/ipoffices/romania/orda.html), accessed March 29, 2021.

WIPO (n.d.h). Agreement and Request for WIPO Mediation in IPOP HL Proceedings. Geneva: WIPO. Available at: [www.wipo.int/export/sites/www/amc/en/docs/ipo-phl\\_agreementrequest.doc](http://www.wipo.int/export/sites/www/amc/en/docs/ipo-phl_agreementrequest.doc), accessed March 29, 2021.

WIPO (n.d.i). WIPO Mediation Proceedings Instituted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 (IPOP HL). Geneva: WIPO. Available at: [www.wipo.int/amc/en/center/specific-sectors/ipophl/](http://www.wipo.int/amc/en/center/specific-sectors/ipophl/), accessed March 29, 2021.

WIPO (n.d.j).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ervices for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n Trinidad and Tobago. Geneva: WIPO. Available at: [www.wipo.int/amc/en/center/specific-sectors/ipoffices/trinidadtobago/](http://www.wipo.int/amc/en/center/specific-sectors/ipoffices/trinidadtobago/), accessed March 29, 2021.

WIPO (n.d.k). Internet Intermediaries and Creative Content. Geneva: WIPO. Available at: [www.wipo.int/copyright/en/internet\\_intermediaries/index.html](http://www.wipo.int/copyright/en/internet_intermediaries/index.html), accessed March 29, 2021.

WIPO (n.d.l). WIPO Checklist for the Online Conduct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Proceedings. Geneva: WIPO. Available at: [www.wipo.int/amc/en/eadr/checklist](http://www.wipo.int/amc/en/eadr/checklist), accessed March 29, 2021.

WIPO (n.d.m). WIPO eADR. Geneva: WIPO. Available at: [www.wipo.int/amc/en/eadr/wipoeadr/](http://www.wipo.int/amc/en/eadr/wipoeadr/), accessed March 29, 2021.

World Forum on Rule of Law in Internet (2019). Chinese Courts and the Internet Judiciary. Available at: [http://wlf.court.gov.cn/upload/file/2019/12/03/11/40/20191203114024\\_87277.pdf](http://wlf.court.gov.cn/upload/file/2019/12/03/11/40/20191203114024_87277.pdf), accessed March 29, 2021.

XinhuaNet (2018). Hangzhou Internet court adopts blockchain to protect copyright of online literature, December 8. Available at: [www.xinhuanet.com/english/2018-12/08/c\\_137658750.htm](http://www.xinhuanet.com/english/2018-12/08/c_137658750.htm), accessed March 29, 2021.

Zou, M. (2020). Virtual justice in the time of COVID-19. Oxford Business Law Blog, March 16. Available at: [www.law.ox.ac.uk/business-law-blog/blog/2020/03/virtual-justice-time-covid-19](http://www.law.ox.ac.uk/business-law-blog/blog/2020/03/virtual-justice-time-covid-19), accessed March 29, 2021.

# 부속서: 설문지

## 1. 귀하의 소속

- 기업(예: 저작권 또는 콘텐츠 보유자, 온라인 중개자/플랫폼)
- 개인(예: 저작권 또는 콘텐츠 보유자, 대리인, 제작자)
- 로펌
- 집중관리단체
- 산업협회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_\_\_\_\_

## 2. 귀하의 직위/역할(복수 응답 가능)

- 관리자
- 사내 변호사
- 사외 변호사
- 조정인
- 중재인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_\_\_\_\_

## 3. 귀하의 B2B(business-to-business)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경력

비고: 본 설문조사에서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는 디지털 환경(예: 디지털 시장, 모바일 앱 스토어, 오버더톱(OTT) 서비스, 소셜미디어, 스트리밍)에서 배포될 수 있고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제품, 서비스 또는 정보(예: 시청각저작물, 데이터, 전자책, 음악, 소프트웨어, 비디오 게임)를 말합니다. “B2B 거래”는 기업과 소비자 간에 아닌, 기업과 기업 간의 제품, 서비스 또는 정보의 교환을 말합니다.

- 경험 없음
- 0~5년
- 5~10년
- 10년 초과

4. 직원 수

- 직원 없음/해당 없음
- 1~10명
- 10~50명
- 50~250명
- 250~1,000명
- 1,000명 초과

5. 귀하의 주요 소재지

국가를 선택하십시오.

6. 귀하의 주요 활동 지역(복수 응답 가능)

- 아프리카
- 아시아
- 유럽
- 중남미 및 카리브지역
- 북미
- 오세아니아

7. 귀하께서는 최근 5년간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 연관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8. 이러한 분쟁에서 귀하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복수 응답 가능)

- 신청인(당사자 또는 대리인)
- 피신청인(당사자 또는 대리인)
- 조정인
- 중재인
- 해당 없음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_\_\_\_\_

9. 최근 5년간 귀하가 연관된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의 대상(복수 응답 가능)

- 광고
- 애니메이션
- 영상저작물
- 데이터베이스
- 연극저작물
- 어문저작물
- 모바일 앱
- 음악저작물
- 사진저작물
- 출판
- 소프트웨어
- TV 포맷
- 비디오/온라인 게임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_\_\_\_\_

10. 최근 5년간 귀하가 연관된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비계약상 분쟁과 계약상 분쟁의 대략적인 비율  
(응답한 수의 합은 100이어야 합니다.)

비계약상 \_\_\_\_\_ %

계약상 \_\_\_\_\_ %

11. 최근 5년간 귀하가 연관된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국내 분쟁과 국제 분쟁의 대략적인 비율  
(응답한 수의 합은 100이어야 합니다.)

국내(모든 당사자의 관할권이 동일) \_\_\_\_\_ %

국제 \_\_\_\_\_ %

12. 귀하께서는 최근 5년간 다음 중 어떤 분쟁 금액에 해당하는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 연관된 적이 있습니까?(복수 응답이 가능하며, 분쟁 금액은 누적 합계를 구하지 않습니다.)

- 분쟁 금액 없음
- 0~10,000달러
- 10,000~100,000달러
- 100,000~1,000,000달러
- 1,000,000~10,000,000달러
- 10,000,000달러 초과

13. 최근 5년간 귀하가 연관된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이 발생한 상위 3개국(드롭다운 목록마다 단일 응답이 가능하며, 3개의 드롭다운 목록에 모두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14. 최근 5년간 귀하가 연관된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청구한 구제 형태(복수 응답 가능)

|                              | 신청인                   | 피신청인                  |
|------------------------------|-----------------------|-----------------------|
| 로열티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손해배상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저작자 지위 선언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침해선언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금지명령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부정적 선언(Negative declaration)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계약 재협상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삭제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15. 최근 5년간 귀하가 연관된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의 결과(복수 응답 가능)

비고: 본 문항에서 '화해'는 모든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을 포함합니다(당사자들 간에 직접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조정, 법원소송, 중재 또는 기타 분쟁해결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불문합니다).

|                    | 비계약상                  | 계약상                   |
|--------------------|-----------------------|-----------------------|
| 화해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법원 판결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중재판정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행정당국의 결정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중개자/플랫폼의 결정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16. 최근 5년간 귀하가 연관된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의 대략적인 화해 성립률(100이하의 수로만 응답 가능)**

비고: 본 문항에서 '화해'는 모든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을 포함합니다(당사자들 간에 직접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조정, 법원소송, 중재 또는 기타 분쟁해결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불문합니다).

비계약상 \_\_\_\_\_ %

계약상 \_\_\_\_\_ %

**17. 최근 5년간 귀하가 연관된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사용된 분쟁해결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복수 응답 가능)**

|                    | 비계약상                  | 계약상                   |
|--------------------|-----------------------|-----------------------|
| 통지 및 삭제/정지명령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자국 관할권 내 법원소송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외국 관할권 내 법원소송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조정/알선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중재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신속중재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전문가결정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18. 귀하의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5가지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해당 5개 응답의 순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 국내 분쟁                 | 국제 분쟁                 |
|---------------------|-----------------------|-----------------------|
| 비용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속도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비밀유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결과의 질(결정권자의 전문화 포함)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집행가능성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중립적인 법정지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선례 구축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분쟁해결기관이 제공하는 지원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특별히 없음(표준 내부 관행)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19. 최근 5년간 귀하가 연관된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사용된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귀하의 인식은 어떻습니까?(행마다 단일 응답 가능)

|                    | 적합                    | 다소 적합                 | 적합하지 않음               | 의견 없음                 |
|--------------------|-----------------------|-----------------------|-----------------------|-----------------------|
| 통지 및 삭제/정지명령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자국 관할권 내 법원소송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외국 관할권 내 법원소송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조정/알선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중재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신속중재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전문가결정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20. 귀하께서는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분쟁해결도구를 이용했습니까?(복수 응답 가능)

- 전자적 사건 신청 및 관리 도구(예: WIPO eADR)
-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예: 중개자가 제공)
- 화상회의나 그와 유사한 도구를 통한 심리
- 문서로만 진행되는 절차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21. 귀하께서는 최근 5년간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22. 최근 5년간 귀하께서 체결한 계약은 다음 중 어떤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야와 연관이 있습니까?(복수 응답 가능)

|                    | 국내                    | 국제                    |
|--------------------|-----------------------|-----------------------|
| 광고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시청각 제작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출판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소프트웨어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TV 및 방송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비디오/온라인 게임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음악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23. 최근 5년간 귀하께서 체결한 계약의 유형은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                    | 국내                    | 국제                    |
|--------------------|-----------------------|-----------------------|
| 양도/소유권 이전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배포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라이선싱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제작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24. 최근 5년간 앞의 질문에서 응답한 계약 중 일반 약관으로 체결된 것은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                    | 국내                    | 국제                    |
|--------------------|-----------------------|-----------------------|
| 양도/소유권 이전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배포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라이선싱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제작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기타(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25. 최근 5년간 귀하의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계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상대방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드롭다운 목록마다 단일 응답이 가능하며, 3개의 드롭다운 목록에 모두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재지를 선택하십시오.

26. 최근 5년간 귀하의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계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준거법은 무엇입니까?(드롭다운 목록마다 단일 응답이 가능하며, 3개의 드롭다운 목록에 모두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을 선택하십시오.

미국을 선택한 경우, 주(州)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기타 준거법(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27. 귀하께서는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계약의 분쟁해결조항 작성을 위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해당 없음

28. 이러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에 ADR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예” 라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29. 귀하께서는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서 분쟁해결수단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찰하신 동향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30. 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 어떤 개선점을 제안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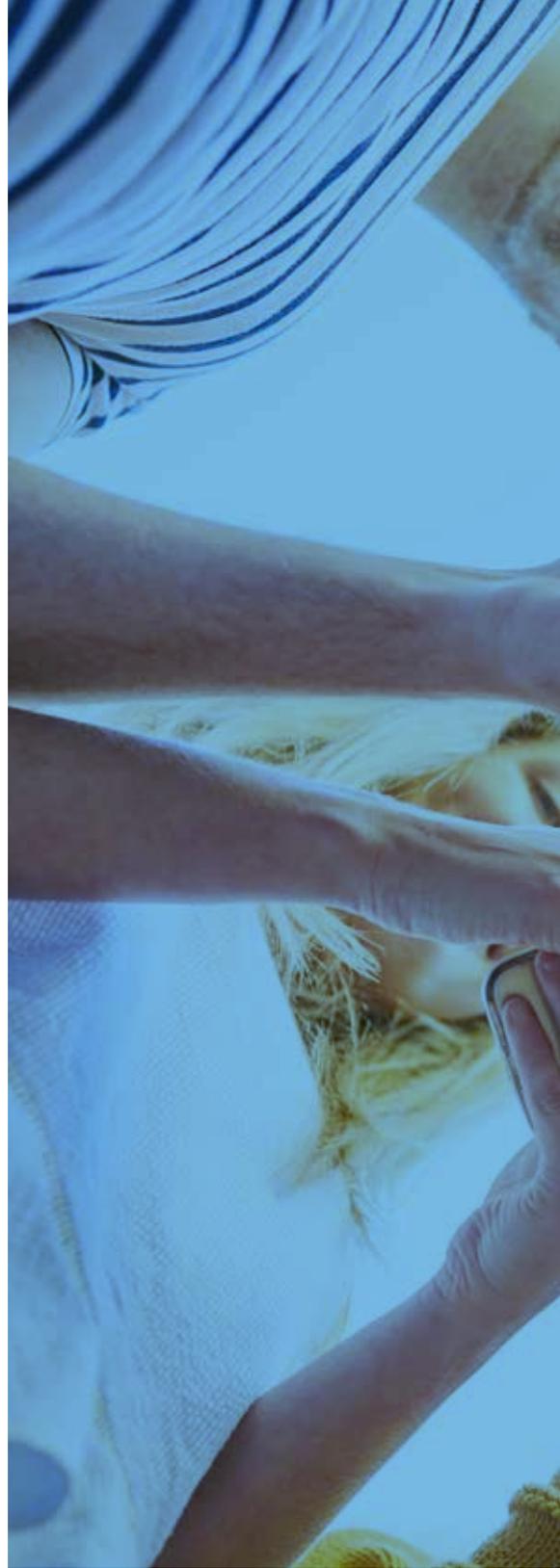
31. 짧은 후속 인터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32. 인터뷰에 참여할 의사가 있거나 WIPO ADR 서비스 및 행사에 관한 이메일을 수신하기를 원하시면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주십시오.

---

개인정보처리방침 ([www.wipo.int/tools/en/disclaim.html#privacy\\_policy](http://www.wipo.int/tools/en/disclaim.html#privacy_policy)): WIPO는 제3자에게 귀하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전달하지 않습니다.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34, chemin des Colombettes  
P.O. Box 18  
CH-1211 Geneva 20  
Switzerland

Tel: + 41 22 338 91 11  
Fax: + 41 22 733 54 28

WIPO 지역사무소의 연락처 정보는 다음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about-wipo/en/offices](http://www.wipo.int/about-wipo/en/offices)